



#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2021. 5.



## 일러두기

-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들과 연구윤리 관련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2015)〉,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2014)〉, 〈연구윤리 질의 응답집(2016)〉 등의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그런데 연구현장에서 이들 보고서를 통합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기존 연구윤리 실무 가이드를 통합하고 연구윤리 관련 최신 이슈와 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본 책자를 발간하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개별 연구부정 의혹사건을 조사·검증하는 데 참고할 수는 있으나, 개별 의혹사건의 연구부정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님을 밝힙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견해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b>활용상의 유의점</b> .....	<b>1</b>
<b>I. 연구윤리 관련 법규 해설</b> .....	<b>3</b>
1. 교육부 「학술진흥법」 .....	5
2.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8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9
<b>II. 연구윤리 주제별 Q&amp;A</b> .....	<b>15</b>
1. 위조와 변조 .....	17
2. 표절 .....	22
3. 부당한 저자표시 .....	33
4. 중복게재(이중게재, 부당한 중복게재) 및 출판윤리 .....	47
5. 연구노트, 데이터 관리 .....	58
6. IRB, IACUC .....	62
7. 책임 있는 연구수행(RCR), 이해상충(COI),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	97
8. 연구부정행위 검증 .....	111
<b>III.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를 위한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b> .....	<b>125</b>
1.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	127
2. 연구부정행위 검증 표준 절차 .....	136
<b>[부록] 판례에 나타난 연구윤리의 이슈</b> .....	<b>165</b>

# 연구윤리 주제별 Q&A 세부 목차

## 1. 위조와 변조

- 질문 1. 특정 데이터 값을 제외하고 논문에 발표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인가? ..... 17
- 질문 2. 출판된 논문에서 데이터 오류를 발견한 경우 후속 조치는? ..... 18
- 질문 3. 게재된 논문에서 위조나 변조가 의심될 때 익명제보 방법은? ..... 19
- 질문 4. 인터넷 등을 통해 제기되는 연구부정행위의 대응방법은? ..... 20

## 2. 표절

- 질문 1. 표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 22
- 질문 2. 어느 정도까지 유사해야 표절에 해당하는가? ..... 23
- 질문 3. 공개적인 세미나에서 발표된 아이디어를 사용한 경우 표절인가? ..... 24
- 질문 4. 과제결과 공개 전 과제 참여 외부전문가의 논문발표는 연구윤리 위반인가?  
..... 25
- 질문 5. 국내 법률을 영문 번역한 자료를 활용할 경우 연구윤리 문제는? ..... 26
- 질문 6. 본문에 출처를 표기한 경우 국문요약, 서론, 결론의 출처표기는? ..... 26
- 질문 7. URL 등 인터넷 자료의 올바른 인용표기 방법은? ..... 27
- 질문 8. 자기주장 없이 여러 저술에서 가져와 작성된 논문은 표절인가? ..... 28
- 질문 9. 저자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를 얻은 경우 표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29
- 질문 10.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받은 경우 학회의 조치는? ..... 30
- 질문 11. 투고된 논문이 표절로 의심될 경우 학회의 조치는? ..... 31
- 질문 12.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10% 이하면 안심하고 제출해도 되는가? ..... 32

## 3. 부당한 저자표시

- 질문 1. 강요로 인해 저자로 포함시킨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인가? ..... 33
- 질문 2.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 저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 34
- 질문 3. 연구부정행위가 저자 역할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가? ..... 35
- 질문 4. 저자가 누락되어 게재된 경우 누락된 저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36
- 질문 5. 투고 준비 중에 제1저자 사망 시 제1저자를 변경해야 하는가? ..... 37
- 질문 6. 부부간 공동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연구부정인가? ..... 38

질문 7. 학위논문을 재구성해 학술지 게재 시 저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	39
질문 8. 게재된 논문에서 주저자의 저자 변경요청에 대한 학회의 조치사항은? .....	41
질문 9. 학위논문을 제3자를 교신저자로 학술지 투고 시 학회의 조치사항은? .....	42
질문 10. 데이터 오류에 의한 논문 자진철회 요청 시 학회의 조치사항은? .....	43
질문 11. 교신저자 대신 제1저자가 교신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44
질문 12. 지도교수 역할로 제자 학위 논문의 학술지 게재는 연구윤리 위반인가? ..	45
질문 13. 연구 도중 임용 계약이 만료된 경우 연구성과의 학술지 투고는? .....	46

#### 4. 중복게재(이중게재, 부당한 중복게재) 및 출판윤리

질문 1. 학술지 게재 후 다시 학위 논문에 사용하는 경우 중복게재인가? .....	47
질문 2. 과제참여로 얻은 결과를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 가능한가? .....	48
질문 3. 하나의 설문 또는 실험으로 2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윤리위반인가? ..	49
질문 4. 해외 학술지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다시 발표할 수 있는가? .....	50
질문 5.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	51
질문 6. 학술대회 발표 후 학술지 논문에 게재하는 경우 중복게재인가? .....	52
질문 7. 중복 출판을 방지하기 위한 학회의 조치사항은? .....	53
질문 8. 길이가 긴 종설(Review) 논문은 나누어 게재가 가능한가? .....	54
질문 9. 외국의 Open Access 출판정책과 관련하여 학회의 조치사항은? .....	55
질문 10. 출판된 논문에서 규정 미준수 사항 발견 시 학회의 조치사항은? .....	56
질문 11. 원고가 접수된 후 저자가 사망한 경우 학회의 조치사항은? .....	57

#### 5. 연구노트, 데이터 관리

질문 1. 공동연구로 수집된 데이터로 각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가? .....	58
질문 2. 졸업 후 타 기관으로 연구노트를 가져가 활용할 수 있는가? .....	59
질문 3. 서면 연구노트와 달리 전자 연구노트 사용 시 주의사항은? .....	60
질문 4.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작성된 연구데이터의 적절한 활용방법은? .....	61

#### 6. IRB, IACUC

질문 1. IRB 심의는 연구 진행 과정 중 '언제' 받아야 하는가? .....	62
질문 2. 유사하게 수행되는 두 연구에 대해 심의 절차가 다를 수 있는가? .....	63
질문 3.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수행하는 연구는 IRB 심의 없이 가능한가? .....	65

질문 4. 자서전을 분석하는 연구의 IRB 심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67
질문 5. IRB에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연구를 수행해도 되는가? .....	68
질문 6. IRB가 연구자에게 벌칙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	69
질문 7. 동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70
질문 8.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 모국어로 된 동의서가 필요한가? .....	71
질문 9. 유아 대상 연구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부모도 연구대상자인가? .....	72
질문 10.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구계획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	73
질문 1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동의 획득 방법은? .....	74
질문 12. 외국 연구자가 내국인 대상 연구 시 국내 IRB 심의를 받을 수 있는가? .....	75
질문 13. 연구 종료 후 남은 인체유래물은 2차 사용해도 되는가? .....	76
질문 14. COVID-19 관련 연구 수행 시 신속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는가? .....	77
질문 15. 스마트 워치와 앱을 연구 도구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	78
질문 1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 데이터의 사용 절차는? .....	79
질문 17. 연구진이 본인의 연구에 연구 대상으로 참여 가능한가? .....	80
질문 18. 박테리아의 전장유전체분석(WGS) 연구도 IRB 심의 대상인가? .....	81
질문 19. 공동연구 기관은 모두 각 기관의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	82
질문 20. 소속이 없는 개인 연구자는 IRB 심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	83
질문 21. 동의서 없이 환자 사진을 논문에 게재하여 고발된 경우 후속 조치는? .....	84
질문 22. 유전자 조작 연구윤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85
질문 23. 다른 실험실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대처는? .....	86
질문 24.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금지된 동물이 있는가? .....	87
질문 25. 실험동물의 안락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89
질문 26. 동물실험 초심자 대상 실습 시 실험동물 사용을 감축할 방안은? .....	90
질문 27. 실험동물 남용 방지를 위한 동물실험 마릿수 산정 기준은? .....	91
질문 28. 야생동물 대상 연구에는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	91
질문 29. 실험동물을 정식 공급기관에서 구입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	93
질문 30. 법령에 따른 동물실험 시행기관 정의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은? .....	95
질문 31. 실험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RFID) 사용 시 연구윤리적 문제는? .....	96

## 7. 책임있는 연구수행(RCR), 이해상충(COI),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질문 1. 연구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정의, 유형 및 해결방안은? .....	97
질문 2. 공동연구 기업에서 미입증 특허의 사용 요청 시 대학의 조치사항은? .....	100

질문 3. 장비를 지원받은 회사의 연구자를 공저자로 논문 투고 시 이해상충은? ..	101
질문 4. 학회 학술상 선정위원이 심사 후 이해상충 문제 발견 시 조치사항은? ..	103
질문 5.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연구부정 조사 지연 시 대학의 대처방안은? ..	104
질문 6. 특수관계인의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시 연구윤리 문제는? ..	105
질문 7.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자녀를 과제 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지? ..	106
질문 8.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기업으로 양도할 수 있는가? ..	108
질문 9. 학술지 논문 투고 시 이해상충 관계를 명시해야 하는가? ..	109
질문 10.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연구를 수행한 경우 법적 책임은? ..	110

## 8. 연구부정행위 검증

질문 1. 교원의 논문 및 업적 철회 요청 시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해야 하는가? ..	111
질문 2. 학술지원사업 논문의 연구부정도 내규의 검증시효가 적용되는가? ..	112
질문 3. 제보자가 제보를 취소한 경우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종료해야 하는가? ..	113
질문 4. 소송을 제기하거나 학술지에서 검증하는 경우 대학의 조치사항은? ..	114
질문 5.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연구 분야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115
질문 6. 최종 판정 후 조사위원 명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의 조치사항은? ..	116
질문 7. 신규 채용 심사 시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검증 주체는? ..	117
질문 8. 기관 간 연구부정행위 판정이 상이한 경우 조치사항은? ..	118
질문 9. 학술지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통보 시 대학은 다시 검증해야 하는가? ..	120
질문 10.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후속조치는? ..	121
질문 11.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주체는? ..	122
질문 12. 연구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는 불이익을 받는가? ..	123

## [부록] 판례에 나타난 연구윤리의 이슈

질문 1.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해고 사건 (1): 논문교체 행위 .....	167
질문 2.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해고 사건 (2): 표절 여부의 판단 기준 .....	168
질문 3.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해고 사건 (3): 표절 여부의 판정 권한 .....	169
질문 4.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해고 사건 (4): 타인 저작물의 출처표기 방법 .....	170
질문 5.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해고 사건 (5): 피표절자의 동의 .....	171
질문 6.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해고 사건 (6): 자기 표절 .....	172
질문 7. 표절 논문을 연구 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형사 책임 .....	173
질문 8. 석사학위 논문 대작 사건: 대작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 .....	174
질문 9.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 공동저자 등재 요구 사건 .....	175
질문 10. 공동연구자의 표절 사건 (1): 연구책임자의 감독 의무 .....	176
질문 11. 공동 연구자의 표절 사건 (2): 요약 논문과 표절 .....	177
질문 12. 제자에게 자신의 논문 초고를 준 교수 사건 (1): 표절 여부 판단 .....	178
질문 13. 제자에게 자신의 논문 초고를 준 교수 사건 (2): 제자의 표절 조장 .....	179
질문 14. 의학 박사학위 논문 사건 (1): 교신저자 바꾸기와 성명표시권 .....	180
질문 15. 의학 박사학위 논문 사건 (2): 타인 논문의 번역 논문 게재 .....	181
질문 16. 논문게재 철회 사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 .....	182

## 활용상의 유의점

〈통합 안내서〉를 활용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1) 발간이후 개정되는 법령, 지침, 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활용해야 함**

- 본 자료는 '21년 4월 발간 시점의 법령, 지침, 가이드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다르게 해석되거나 활용될 수 있음

**(2) 연구윤리 문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을 전문가 시각에서 고려해야 하기에 본 안내서의 단편적 사례를 반박의 근거로 삼거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됨.**

- 〈통합 안내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연구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거나 해당인 것처럼 성급하게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음. 실무자들이 부딪히는 사례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3) 제시하는 사례는 학문(연구) 분야별 특성 등으로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

- 동일한 연구윤리 이슈에 대해 학문(연구) 분야 특성이나 연구 방법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또 지금까지 통용되어온 관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특정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가거나 고려해야 할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됨.

**(4) 연구윤리는 학술적 관점에서 판단되기에 법원의 판단기준과 상이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은 연구윤리 자체 보다는 이를 통해 처분되는 징계, 제재, 연구비 환수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등 다른 법적인 부분과 혼합되어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기에, 이를 연구윤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연구윤리 판단기준은 학술적 관점에서 학문공동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립해 나아가야 함.
- 참고로 본 안내서 부록에서 Q&A 형태로 판례를 제시하였으니 연구윤리와의 유사점, 차이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연구윤리 관련 법규 해설

1. 교육부 「학술진흥법」
2.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 I. 연구윤리 관련 법규 해설

### 1 교육부 「학술진흥법」

- 「학술진흥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 활동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임. 2020년 12월 22일 연구부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5조 (연구윤리의 확보)

〈기존〉	〈개정〉
<p>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p>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④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신설 2020. 12. 22.&gt;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 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20. 12. 22.&gt;</p> <p>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20. 12. 22.&gt;</p> <p>④ 대학등은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20. 12. 22.&gt;</p> <p>⑤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20. 12. 22.&gt;</p>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기존〉	〈개정〉
<p>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6. 2. 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li> <li>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li> </ol> <p>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li> <li>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li> <li>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6. 5. 29.&gt;</p>	<p>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6. 2. 3., 2020. 12. 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li> <li>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li> <li>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li> </ol> <p>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li> <li>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li> <li>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6. 5. 29.&gt; [시행일 : 2021. 6. 23.] 제19조</p>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존〉	〈개정〉
<p>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20. 12. 22.&gt;</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 [시행일 : 2021. 6. 23.] 제20조</p>
--	--

○ 특히 「학술진흥법」 제15조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에만 규정되었던 연구부정행위 범위를 법률 수준에서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위반 시 제재를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했다는 의의가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나타난 연구부정행위의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음.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li> <li>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li> <li>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li> <li>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li> <li>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li> <li>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li> </ul> </li> <li>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li> <li>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li> <li>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li> </ul> </li> <li>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li> <li>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li> <li>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li> </ol> <p>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p>
---

## 2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2015년 11월 3일 개정되어 적용되어 온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sup>1)</sup>은 2018년 7월 17일 교육부 훈령 제263호로 일부 개정을 하였음. 개정 이유는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제5조 9항을 신설하여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에 저자의 소속, 직위를 명확히 밝히도록 함. 즉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2)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제6조 7항을 신설하여 학술단체와 대학(대학등)이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함. 즉,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재검토 기한을 규정한 제33조에서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 즉,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번 지침 개정은 2015년 11월에 개정된 지침 중에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표기함으로써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 지침 상 ‘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이제까지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가 많았음.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자(논문 저자 등)는 논문을 발표할 때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함. 예컨대,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함. 또한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해야 하고,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함. 만약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해야 함. 아울러,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

1) 본 지침에 대한 해설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11을 참조.

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가 부여됨. 또한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논문의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아직 저자의 표기 기준, 저자의 결정 과정 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의 게재 및 교수 업적 관리 시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음.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연구윤리 관련 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고 칭함)은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43호로 제정된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혁신법의 제정 이유는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 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sup>2)</sup> 이 혁신법의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무 및 연구개발기관·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수행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등의 예고,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협약 체결 절차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6조 및 제17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7%B0%EA%B5%AC%EA%B0%9C%EB%B0%9C%ED%98%81%EC%8B%A0%EB%B2%95/\(17343,20200609\)](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7%B0%EA%B5%AC%EA%B0%9C%EB%B0%9C%ED%98%81%EC%8B%A0%EB%B2%95/(17343,20200609))

- 마.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8조).
-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2조).
- 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연구지원 체계의 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24조 및 제25조).
- 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등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내용·절차를 규정함(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 1) 특징

- 혁신법 제4조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연구윤리와 관련된 부분은 혁신법 제4장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 처분”의 제31조부터 36조이며, 혁신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은 다음 표와 같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5조(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활용 촉진)	

### 2) 부정행위

- 혁신법 제31조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 중에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제1호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위조, 변조, 표절,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정의와 다르지 않으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 등과 실질적으로 유사함.

- 표절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서는 “타인의” 것으로 그 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기존의 공동관리 규칙에서와 동일하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것에 대하여도 ‘표절’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이 점은 교육부 지침에서 자신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중복으로 사용하여도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에만 “부당한 중복게재”인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 혁신법 제31조 제2호로부터 제6호까지는 연구진실성 확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책임 있는 연구 활동’ 혹은 ‘좋은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윤리 범주와 관련된 부정행위들로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기준에 어긋나는 사용(제2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규정 위반(제3호), 보안대책 위반 및 보안사항 누설 혹은 유출(제4호), 거짓 혹은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혹은 수행(제5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등을 포함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정의하고 있는데,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혹은 위협·협박(제1호), 연구개발비 증빙자료의 위조·변조와 사용 내역의 거짓보고(제2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제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제4호) 등을 말함.

### 3) 연구개발기관의 규정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

- 시행령 제58조는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sup>3)</sup>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들 항목은 기존에 연구부적절행위 등으로 분류되던 내용 중 일부이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반영한 것들임.

## 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제재 처분

- 혁신법 제32조에는 연구윤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재 처분의 종류는 10년 이내의 연구 참여 제한과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 부과임. 특히 두 가지 처분은 병과할 수 있고(제2항),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사유와 관련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3항). 다만 참여 제한(시행령 제59조 별표 6), 제재 부가금의 부과(시행령 제59조 별표 7), 연구개발비 환수(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제6항).

## 다. 연구부정행위 조사 등

- 시행령 제57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3)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7343호, 시행 2021.1.1.]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9. 8. 27.>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제보의 요건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 연구윤리 주제별 Q&A

1. 위조와 변조
2. 표절
3. 부당한 저자표시
4. 중복게재(이중게재, 부당한 중복게재) 및 출판윤리
5. 연구노트, 데이터 관리
6. IRB, IACUC
7. 책임 있는 연구수행(RCR), 이해상충(COI),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8. 연구부정행위 검증



## II. 연구윤리 주제별 Q&A

### 1 위조와 변조

#### 특정 데이터 값을 제외하고 논문에 발표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인가?

**질문 1** 이·공학 분야 연구 과정에서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특정 실험 조건에서 10회 반복 측정하였다. 획득한 실험 데이터 10개에서 2개의 측정값이 예상에서 벗어나 그 데이터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의 실험 결과를 평균하여 논문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법은 연구윤리에 위반되는가?

#### 답변 1

실험이나 조사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 수치가 나왔을 때, 연구자가 그 일부만을 주관적으로 취사선택하여 결과를 분석한 후 나머지를 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데이터 처리 방법이 아니다. 측정 데이터 값 10개를 얻은 경우, 2개의 측정 데이터가 예상에서 벗어난다고 하여 그 2개 데이터를 배제하고 8개 데이터만 표시하는 것은 “데이터 조작(변조)”에 해당될 수 있다. 원칙대로 하려면 그 2개 데이터 값도 논문 내용에 포함시키고 왜 예상을 벗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험 결과값에서 연구 자료를 선택하는 것은 연구계획 단계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비록 예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기준에 합당한 자료는 결과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로, “변조”는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험에서 연구자가 종종 접하는 어려움은 다른 수치와 패턴이 상이한 측정값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값들은 보통 이상치(outlier)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측정 횟수를 늘려 반복 측정해야 한다. 그러면, 이 이상치가 i) 계통 오차(systematic error) 또는 실행 오류(deterministic origin)에 기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ii) 고유의 내적인 변동성에 기인한 우발 오차(random error)인지를 판정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 수치들을 제외하여 분석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측정 횟수와 이상치를 통계 분석 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논문에 이러한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기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제12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 59-61.

**출판된 논문에서 데이터 오류를 발견한 경우 후속 조치는?**

**질문 2** 이공학 분야 연구자입니다. 이전에 출판한 논문의 데이터 일부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지만 해당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데이터의 위조 및 변조 등 의도된 조작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요?

**답변 2**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논문을 출판한 이후 그 논문의 연구결과를 심화·발전시키는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구자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자신이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중대한 오류(significant error) 또는 부정확함(inaccuracy)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연구자의 의무는 즉각적으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알려서 상의한 후 수정(correction) 혹은 철회(retraction)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의 학술지 출판사(publisher)들이 취하는 정책이다. 국제적인 학술지 출판사인 Elsevier는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서 “연구자들이 이전에 자신이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 혹은 부정확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학술지의 편집인 혹은 출판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논문의 철회 혹은 수정(correction) 조치에 대해 편집인에게 협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만일 학술지의 편집인이 연구자가 이전에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제3자를 통해 인지하게 되는 경우, 연구자의 책무는 기존의 논문이 정확하다는 증빙을 편집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논문을 즉각적으로 철회 혹은 수정해야 한다. 논문에서의 오류는 다른 연구자들이 해당 논문의 연구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확한 결과와 해석을 저술의 일부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어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논문의 수정은 논문 전체의 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적인 계산, 통계 분석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실험 과정에서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자 목록에 빠져 저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논문 전체에서 일부의 문장이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서 논문을 수정하는 절차이며, 이는 단지 논문 저자의 실수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학술지에서 수정된 해당 논문은 원래 논문에 대한 링크를 첨부하여 출판되게 되며 이를 통해 독자는 논문에서 어떠한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논문 철회란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조나 변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계산이나 실험상의 실수로 인해 논문에서 제시된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연구가 비윤리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은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 논문 철회는 논문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가장 마지막으로 취해지는 행위로서 오랜 시간을 거쳐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학술지(Journal)의 편집자에게 수정 또는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논문을 간략히 소개(제목, 저자, DOI, 저널 게재 쪽)하고, 발표한 논문의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를 알리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 혹은 철회 사유를 기술하면 된다. 그러면 편집자의 판단 하에 수정 혹은 철회가 결정된다. 이전에 출판한 논문에 대한 수정은 연구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자의 진정성 있는 자세이므로 같은 분야의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비판보다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근거 및 참고 자료**

- Elsevier, “Ethics in Research and Publication”, website:  
<https://www.elsevier.com/authors/policies-and-guidelines>





## 게재된 논문에서 위조나 변조가 의심될 때 익명제보 방법은?

**질문 3**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구팀에서 우수한 학술지에 출간한 논문에 실린 그래프와 이미 지들을 상세히 검토해 보니 여러 곳에서 연구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학계에 영향력이 큰 저명한 교수의 업적에 대해 실명으로 제보하기 곤란한 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 답변 3

실명으로 제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부정행위의 제보를 연구기관이나, 연구재단 등의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정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익명으로 제보를 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내용,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을 명시해서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지적 자산이 구축되는 과정이다. 연구 활동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자료를 제시하여 논문의 형식으로 제출하면 동료 전문가들의 평가와 비판의 과정을 통해 논문으로 출간이 된다. 논문이 출간이 되면 이는 세계의 연구자 커뮤니티를 향해 공개하여 평가와 비판을 받게 된다. 전 세계의 동료 연구자들은 논문을 읽고 논문의 데이터들을 검토하며 논문에 기술된 대로 실험을 재현하기도 하면서 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동료평가가 이루어진다.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어 나가면서 인류의 지적 재산이 쌓여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핵심은 연구자들 간의 상호 평가와 비판이며, 논문 발표는 이러한 상호 비판과 검토의 체계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문작성에는 연구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일정한 형식이 존재한다. 연구문제 제기과 선행연구의 정리, 자신의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의 공개, 이에 따른 논리의 전개와 결론의 제시와 같은 논문작성법을 따라야 한다. 논문에 제시된 연구결과는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어야 함은 당연한 기본전제이다.

개별 연구자와 연구자 공동체는 인류의 지적 재산이 되는 지식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각 연구자는 논문으로 발표한 연구에 잘못이나 부정행위가 판명되면 연구자 스스로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자 커뮤니티에 알리고 즉시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의무이다. 또한 연구자 커뮤니티는 전체적으로 각 연구자로부터 공표된 연구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인류 공통의 지적 자산 축적 과정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나 부정행위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거나 제보해서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연구자 공동체는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한 자정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보는 자정작용의 필수요소이다. 곤란하고 힘들더라도 제보할 것을 권한다.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8) 제14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2021.1.4, 시행) 제3조.
- Today biomedical research fraud probe seen pointing to wider misconduct. Oct 12, 2016. The Japan Times.
- 動の不正行為への対応の 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  
研究活動の不正行為に関する特別委員会報告書 平成 18年8月8日 科学技術・学術審議会  
研究活動の不正行為に関する特別委員会



**인터넷 등을 통해 제기되는 연구부정행위의 대응방법은?**

**질문 4** 글로벌한 정보 소통이 손쉬워진 오늘날에는 익명의 독자와 연구자들이 출간된 논문에 대한 데이터 위조, 변조, 표절 혐의를 Pubpeer 등 인터넷을 통해 제기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검토와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부정 의혹이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되는 변화된 제보 환경에서 연구자 또는 연구진실성 담당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4**

연구자와 연구진실성 담당자들은 달라진 상황을 이해하고 출간 후 벌어지는 전문가 동료심사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구자들이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임팩트 높은 학술지에 출간해야 된다는 압력에 짓눌려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논문 출간 전에 동료 전문가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들을 익명의 연구자들의 지혜를 모아서 출간 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문제 제기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제가 제기된 연구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연구진실성 담당자는 온라인에서의 의혹제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익명제보로서의 요건을 가지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들어 논문의 철회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학술지의 동료심사(Peer Review)의 문제점이 비판되었다. 연구부정행위가 증가하고, 논문의 재현성 부족이 문제가 되며, 동료심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감지하고 걸러낼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로 공개 전문가 심사제도와 출판 후 전문가 검토(Post-Publication Peer Review, PPPR)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두 제도는 게시된 논문에 대해 공개 댓글을 하는 장치가 있다. 실제로 많은 학술지에서 공개 전문가 심사제도를 채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익명으로 리뷰를 하는 PubPeer는 "Pub(출판된 논문)" + "Peer(연구자 동료의 평가 · 심사 · 토론)"의 합성어로, 출판된 논문을 연구자의 동료가 평가하고 논의하는 웹사이트이다. 2012년 10월에 오픈되어 전통적인 학술지의 전문가 심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서 발견된 많은 사례가 연구부정행위의 발견으로 이어져서 논문 철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 일본의 만능줄기세포 연구의 부정행위를 제기해서 밝혀낸 사례이다. 2014

년 1월 29일 일본 이화학연구소(理化學研究所, 리켄)의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가 “STAP세포”로 불리는 새로운 다능세포를 만드는 획기적 성과를 이루어 두 편의 논문으로 네이처(Nature)에 실렸다고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불과 1주일 뒤인 2월 4일 PubPeer에 익명의 게시물로 이 논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네이처에 실린 오보카타의 두 개의 STAP 논문 중 하나에 사용된 이미지에서 다능성 세포의 DNA 분석을 보여주는 부분이 다른 이미지의 일부에서 붙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확대했을 때 다른 이미지가 삽입된 부분에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자연스러운 수직선이 있었다. 또한 발표 두 주 뒤에 오보카타가 3년 전에 쓴 논문에 있는 전기영동 이미지를 상하 반전시킨 유사한 이미지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익명의 연구자들이 논문의 문제점, 의심되는 점 등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고 그 결과 논문에 사용된 도표가 오보카타의 박사논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거나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리켄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몇 달 동안 검토하는 사이에 이러한 인터넷에서는 빠르게 검토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Didier Torny. Pubpeer: vigilante science, journal club or alarm raiser? The controversies over anonymity in post-publication peer review. PEER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er Review, PEERE COST Network, Mar 2018, Rome, Italy. ffhals-017001
- Teixeira da Silva JA, Al-Khatib A, Dobránszki J. Fortifying the Corrective Nature of Post-publication Peer Review: Identifying Weaknesses, Use of Journal Clubs, and Rewarding Conscientious Behavior. Sci Eng Ethics. 2017 Aug;23(4):1213-1226. doi: 10.1007/s11948-016-9854-2. Epub 2016 Dec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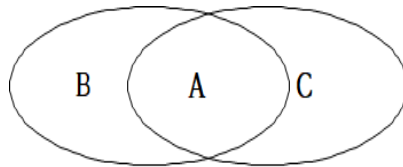
## 2 표절

### 표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질문 1** 표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1

표절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표절에는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표절이 아닌 경우도 있다.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글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면서 출처표기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한 것’을 말하고(전형적 표절),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이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관계는 다음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4)</sup>



☞ ‘A+B’로 구성된 원 안이 협의의 표절, ‘A+C’로 구성된 원 안이 저작권 침해라고 가정할 때, ‘A+B+C’ 전체는 광의의 표절이다.

- 가) 저작권 침해와 표절이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A) : 저작권자가 갖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권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침해자가 자신의 것인 양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표절이 되는 경우(B)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에 한정될 뿐 ‘사상(아이디어) 또는 감정’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지식이 아닌 독창적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면서 그 출처를 표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포기한 공유(公有, public domain) 저작물과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 참조)’을 출처표기 없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 다)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표절이 되지 않는 경우(C) : 표절은 단지 베끼는 행위, 즉 복제만 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자기 것인 양’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속이는 기만적 요소가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더라도 표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sup>5)</sup>



## 어느 정도까지 유사해야 표절에 해당하는가?

**질문 2**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표절 여부의 판단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유사해야 표절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2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학술적 창작물의 경우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함(substantial similar)’이란 이전과 이후의 학술적 창작물의 연구 방법론, 연구 구조, 내용, 결론 등에서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내용의 일부를 바꾸었거나 새롭게 추가했다고 해도 핵심적 논지가 변화되지 않고 결론도 차이가 없어 비교되는 두 저작물의 질적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표현이 종(부수적)이 되도록 양적, 질적인 관점에서 가급적 짧게 인용하되, 인용하더라도 타인의 표현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을 삼가고 자신의 해석을 통하여 독창적인 표현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적절한 인용은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사점이 양적으로 적은 경우에도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의 중요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표절로 인정될 수 있다.

- 4) 남형두, 『표절론』, 서울: 현암사, 2015, pp. 172-180, p. 406 이하.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를 분명히 한 법원 판결로는 서울행정법원 2007. 5. 10. 선고 2006구합24947 판결(회계원리 사건, 항소 취하로 확정)이 있다. 위 판결은, 공저자에게 출판 허락을 받음으로써 저작권 침해 책임은 없지만, 그것이 곧 표절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5) 예컨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화를 불법으로 복제해 블로그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면, 비록 이 영화가 자신의 저작물인 양 속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그러나 자기 것으로 속이지 않았으므로 표절은 아니다.



## 공개적인 세미나에서 발표된 아이디어를 사용한 경우 표절인가?

**질문 3** 공개적인 사회과학 세미나에서 발표된 새로운 연구방법론 또는 새로운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3

타인의 독창적 연구방법론이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한다. 세미나 발표문 또는 구두 발표에 포함된 독창적 이론이나 학설 또는 사실 정보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연구자의 의견이나 평가가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출처표기는 원저자의 업적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독자들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그것을 활용하고자 할 때 접근이 쉽도록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저자의 것이고 원저자의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문서로 작성된 발제문뿐만 아니라, 구두 발표로 알게 된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연구는 00 세미나에서 발표된 누구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것임”과 같이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원저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출처표기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sup>6)</sup>는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독창성이 없으면 일반적 지식<sup>7)</sup>에 불과하다. 일반적 지식에 대하여 특정인의 저술을 출처로 인용할 경우 일반개념이 그 특정인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는 사실 자체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실에 대하여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 노력, 기여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의 면적, 인구, 민족 구성, 종교, 주요 자원, 언어 등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알려진 사실적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기술할 경우에는 출처표기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어느 누군가가 노력을 기울여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연구자의 의견이나 평가가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 8.

6) 남형두, 『표절론』, 서울: 현암사, 2015, pp. 262~285 참조.

7) 일반적 지식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학계에서 더는 이론의 여지없이 확립된 개념이나 구성, 상식화된 이론을 말한다.

**과제결과 공개 전 과제 참여 외부전문가의 논문발표는 연구윤리 위반인가?**

**질문 4** A 연구원은 B 기관의 책임 연구원으로서 B 기관의 연구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A 연구원은 외부 전문가 C에게 원고 의뢰를 통해 받은 원고(X)를 활용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전문가 C를 외부 연구진 목록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경우, 추후 외부 전문가 C가 본인이 작성했던 원고(X)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한다면, 이 경우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4**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중에는 전문가에게 관련 주제에 대하여 원고를 의뢰하여 최종 보고서에 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때 그 전문가는 공동 연구진에 포함하지 않고 외부 연구진 또는 자문가 목록으로 기재하곤 하는데, 연구의 시작 혹은 연구 도중에 전문가의 원고 활용에 대한 기준을 안내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식적으로 최종 보고서가 출판되기 전에 그 전문가가 학술지에 자신의 원고를 활용한 논문을 먼저 발표하게 될 경우, 의도하지 않게 최종 보고서가 그 전문가가 쓴 논문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표절 의혹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한 원고는 연구책임자 또는 의뢰 기관에게 귀속되며,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전문가가 자신이 작성한 원고를 불가피하게 활용하고자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커버에 "어떤 연구의 일환으로 아직 최종 발간되지 않은 보고서의 일부를 활용하였다"는 출처표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합의를 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협약이 있었음에도 (미간행) 최종 보고서에 대한 출처표기 없이 마치 그 전문가가 처음으로 발표한 것처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근거 및 참고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2018, pp. 162-173.



## 국내 법률을 영문 번역한 자료를 활용할 경우 연구윤리 문제는?

**질문 5** A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COVID-19 입법 대응 관련 영어 논문을 작성 중입니다. A 연구원은 본문에 X법률의 특정 조항을 인용함에 있어서 국책 연구기관인 C가 번역한 영문 법령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연구윤리 문제가 없는가요?

### 답변 5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영문으로 번역한 국내 법령과 판례 및 기타 법률 자료도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자료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 ]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 설명을 간략히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 방법이다. 이는 다양한 자료들의 인용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타인의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표절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은 법률 문헌에 언급된 논거 및 해당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자료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한편 영문 번역이 아닌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 규정에서는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및 판례·법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문에서 판례번호·법조항으로 간략히 출처표기를 했더라도 참고문헌에서는 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담은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2018, pp. 162-173.
- 사법정책연구원,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2017.



## 본문에 출처를 표기한 경우 국문요약, 서론, 결론의 출처표기는?

**질문 6** 본문에 출처를 밝히는 경우 국문요약, 서론, 결론 등에서 다시 언급할 때도 출처표기가 필요한가요?

### 답변 6

요약문은 저자의 표현으로 연구논문의 성격을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용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불가피하게 본문에 인용된 타인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표현을 요약문에서 사용할 경우 본문을 통해 그 출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론이나 결론에서 본문에서 인용한 내용을 다시 쓸 때에는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

8) 법령과 판례를 인용할 때 출처표기의 구체적인 예시는 법률 문헌의 인용 방법을 제시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증보판, 2017-1),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참조.





## URL 등 인터넷 자료의 올바른 인용표기 방법은?

**질문 7** "내 것이 아님을 밝힌다."는 원칙에 따라 인용 페이지나 상세 URL까지 밝히는 대신,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임을 밝히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또 인터넷 자료(디지털 문헌)의 검색일 표기는 콘텐츠가 검색일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만 표기해도 되지 않은가요?

### 답변 7

디지털 방식으로만 생산된 자료(인터넷 자료)들은 변경 및 업데이트가 쉽고 독자들도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요구되는 연구 분야에서는 되도록이면 디지털화된 자료라 할지라도 전통적으로 출판된 적이 있는 자료들을 인용할 것이 권장된다.

인터넷상의 자료나 웹페이지 내용을 인용하려 할 때는 최대한 해당 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인터넷상의 자료들은 수시로 변경되거나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어서 자료를 열람한 일자와 URL을 잘 확인하여 투고하려는 저널의 규정에 따라 검색어, 웹페이지 명, 해당 자료의 저자 등과 함께 정해진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sup>9)</sup> 위 정보들을 확실히 명시해 주어야 이후 독자들이 해당 자료를 참고할 때와 인용할 때 다른 내용을 접하여 의도치 않은 오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전자 신문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페이지의 면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SNS 또는 블로그에 게시된 코멘트나 댓글 등을 논문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는 해당 게시물 의 제목과 게시 일자, 블로그 이름, 해당 댓글이 게시된 블로그의 주인, 댓글 작성자와 댓글이 게시된 일자 등의 정보가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하는 형식이 학술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독자가 포괄적으로 해당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가 인용된 사례를 제시한 서울대학교의 참고문헌 인용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길 권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참고문헌 작성법.  
<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9&p=6668460>.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2019.



## 자기주장 없이 여러 저술에서 가져와 작성된 논문은 표절인가?

**질문 8** A는 자신의 주장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여러 저자의 저술에서 조금씩 가져와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논문 작성 행위는 표절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8

이른바 ‘짜깁기형 저술’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장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여러 저자의 저술에서 조금씩 가져와 작성한 논문 등을 말한다.<sup>10)</sup> ‘출처표시 없는 짜깁기형 저술’의 경우 협의의 표절 내지 전형적 표절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러 저술에서 일부씩 가져오고 출처표시를 정확히 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 표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남형두, 『표절론』, 서울: 현암사, 2015,

10) 남형두, 『표절론』, 서울: 현암사, 2015, pp. 419~425 참조.



## 저자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를 얻은 경우 표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질문 9** A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부분 중 B의 저서를 인용한 부분과 관련하여, A는 B가 사전 또는 사후 동의를 한 이상 표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9

저작권 침해와 달리 표절은 피해자인 저자(B)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논문이나 저서의 인용을 동의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피해자 범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절의 경우 피해자군이 다소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 독자는 명의를 저자가 그 글을 쓴 것으로 믿고 읽게 되므로 속게 된다. 표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독자는 그 표절작 또는 표절 논문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독자이다. 경우에 따라 동일한 분야에서 경쟁하는 작가 또는 저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또 학술지 발행기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표절물인 줄 모르고 심사해서 게재 결정을 하고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해당 학술지는 표절물을 게재함으로써 오는 평판 저하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표절물에 대해 게재 유보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간 허비의 피해가 발생한다. 나아가 정직한 글쓰기를 실천하는 대다수의 학자·연구자·학생과 표절자의 소속기관도 표절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절의 피해자는 저자(B)에 한정되지 않고,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소속 기관 및 학계 역시 피해자가 되므로, 저자(B)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전부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저자(B)의 동의만으로는 표절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남형두, 『표절론』, 서울: 현암사, 2015.
- 오승중, 『저작권법 강의』, 서울: 박영사, 2016.



##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받은 경우 학회의 조치는?

**질문 10** 한 학술지에 출간된 리뷰 논문의 그림 8개 중 7개가 타 논문들을 표절하여 표절당한 학술지로부터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 답변 10

먼저 표절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제보 내용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한 후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었을 때 표절 논문 책임저자에게 연구부정행위임을 통보하고, 논문을 철회 조치한 후 표절당한 학술지 측에 해당 논문이 철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규정<sup>11)12)</sup>에 의하면 책임저자가 속한 기관에 알릴 수도 있지만(이는 필수가 아닌 선택),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해당 학술지의 출판 전/후 편집 과정에서 이를 거르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술지의 편집 과정에서 리뷰 논문의 그림이나 표 등은 원저 표기를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표절을 피하기 위한 제언

- ✓ 다루려는 주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자주적인 글쓰기는 배경지식에 대한 자신감에서 시작된다.
- ✓ 관련된 논문과 글을 평소에 많이 읽으면서 자기주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 어떤 글이 마음에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유혹/생각을 떨쳐야 한다.
- ✓ 표절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발생할 불가피한 수많은 좋지 않은 상황을 생각한다.
- ✓ 선택한 문장에서 구조와 동일 단어를 피하면서 같은 맥락의 글을 써본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1) COPE Flowchart(국문번역판), <https://www.kcse.org/resources/>
- 2) COPE Flowchart(원본),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new/translations>

11) COPE. Flowchart(국문번역판). (번역: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5).

12) COPE. Flowchart(원본).



## 투고된 논문이 표절로 의심될 경우 학회의 조치는?

**질문 11** 투고된 논문의 표절이 의심되어 편집위원회에서 내부 심의하여 Cross-Check한 결과, 이미 출판된 타 학술지의 논문들이 짜깁기되어 결과 및 고찰, 요약 부분이 복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11

기 출판된 논문들의 내용 중 많은 문장이나 자료를 출처표기 없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사용된 경우 명백한 표절이 의심되므로 책임저자에게 표절 의혹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저자의 응답 또는 미응답에 따라 학술지 측은 다른 조치가 권고된다. 만약 표절에 대한 책임저자의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경우, 모든 저자에게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통보하며, 저자가 속한 연구기관의 책임자에게 통보를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거나 투고 규정이 모호하다거나 경험이 없어서 등'과 같이 해명이 충분한 경우에도 학술지의 입장과 향후 진행할 조치에 대해서 책임저자와 가능하면 모든 저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한편, 책임저자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저자의 소속, 이메일 주소를 통해 연락하여야 하며, 다른 저자의 응답도 없을 경우 저자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이마저도 답이 없는 경우 3-6개월 간격으로 소속기관에 연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성위원회 개최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등에 제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sup>13)</sup>

만약 이미 출판된 논문의 어떤 부분이 표절되었는지 정확히 모를 때에는 해당 학술지에서 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개괄적이면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 일도 있으므로 정확히 판단되어야 한다. 위 경우처럼 표절된 부분이 결과 부분을 포함한다면, 저자 측에 원자료(raw data)를 요청하여 검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표절이 명백한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COPE Flowchart(국문번역판) <https://www.kcse.org/resources/>
- COPE Flowchart(원본)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new/translations>

13) COPE. Flowchart(국문번역판). (번역: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5).



##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10% 이하면 안심하고 제출해도 되는가?

**질문 12** ‘표절 검사 프로그램’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요? 표절 검사 결과 수치가 학회에서 정한 ‘표절 가능성 10% 이하’를 충족한다면 안심하고 원고를 제출해도 되는가요?



### 답변 12

표절 검사 프로그램의 문장 유사율(%)만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검사 결과 수치는 저작물 A의 문장들과 저작물 B의 문장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려줄 뿐, 문장의 유사성 자체가 곧바로 표절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문장 유사도 수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표절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학문 분야의 특성이나 연구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고전 텍스트를 많이 인용해야 하는 분야이거나 기존 연구 성과들을 고찰(review)하는 성격의 논문일 경우, 문장 유사도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표절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고, 유사한 부분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하고도 고유한 연구 내용인지를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단 한 문장만 유사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다른 저작물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표절에 해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표절 여부의 정확한 판정은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장 유사도 검사는 표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를 빠르게 알아보고 예방을 위한 보조 도구일 뿐, 단 한 문장에서의 표절과 같은 사례는 정확히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 수치를 절대적으로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문장 유사도 검사 결과 수치가 학회에서 정한 기준치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에서 지적된 ‘표절 의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검토하고, 원문을 대조하여 인용 및 출처 표기를 확실하게 보강하는 것이 좋다. 표절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글로 기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p. 124-125.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 3 부당한 저자표시



#### 강요로 인해 저자로 포함시킨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인가?

**질문 1** H대학교의 A교수가 직위를 이용하여 저자로서 기여하지 않은 연구 논문에 공동저자로 포함이 되었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검증을 하는 중에 책임저자인 B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저자로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B도 부당한 저자표시로 보아야 하는가요?



#### 답변 1

한 연구 논문의 저자(author)가 된다는 것은 해당 연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해당 연구 내용의 진실성은 물론 연구 전반에 대해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모든 연구자들은 해당 연구에 기여도가 없는 이를 저자로 올리려는 제안이나 강요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권리만 부여받고 책임과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정당한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책임저자나 교신저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만약 책임저자나 교신저자가 공동저자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은 100% 책임저자나 교신저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압 여부를 떠나 명예저자와 공동저자들이 해당 과정에 대해 알고 그에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면 이들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명예저자<sup>14)</sup>의 경우, 책임저자나 교신저자의 강압에 의해서 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역울하다면;

1. 명예저자 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저자 등록이 되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2. 만약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가 아닌 책임저자나 교신저자의 강압과 독단에 의한 것이라면 이 또한 소명해야 한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당사자는 면책될 수 있다. A교수가 B교수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A교수는 B교수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B교수는 A교수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말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A교수와 B교수 사이에 명백한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지, A교수가 B교수에게 특혜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 61, pp. 66-67.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14) 명예저자(honorary author)는 연구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이 저자로 등재되는 경우이며 때로는 논문을 쉽게 게재하기 위한 수단, 즉 논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자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 저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질문 2** 학위논문 작성자인 A가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 학위논문에 많은 도움을 준 B를 제1저자로 하고 학위논문 저자인 A를 공동저자, 지도교수 C를 교신저자로 하여 게재할 경우, 연구윤리의 문제가 없는가요?

### 답변 2

본 사례에서 1저자를 누구로 할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학위논문을 쓰는 과정과 그것을 발전시켜 학술지 논문을 쓰는 단계에서 누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합당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1) 해당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학위논문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새롭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 추가되고,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지도교수 또는 다른 제3자가 한 경우, 그리고 그것이 제1저자로서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에 해당된다면, 이들이 제1저자가 될 수 있다.
- 2) “B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자의 자격을 가질 만한 기여가 아닌 경우라면, 학술지 논문 저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 3) 아울러, 저자 순서는 저자 간의 합의 사항으로서 각 저자별 기여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전체 저자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 연구부정행위가 저자 역할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가?

**질문 3** 주저자 및 공동저자가 여러 명인 논문에서 특정 부분(실험 데이터)의 조작 사실로 인해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의 각자 역할에 따라 책임이 달리 적용되는가요? 공동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에 등록했으나 해당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역할을 하여 논문에 기여한 사실이 명백히 구분될 때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데이터 부분과 관련되지 않지만 공동저자라는 이유로 같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아니면 해당 부분에 대한 역할이 없으므로 면책이 되는가요?

### 답변 3

연구자에게 논문의 저자가 된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영예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대단히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동연구에서 논문을 출판할 때는 일정 부분 맡은 역할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가 되는 순간부터 해당 논문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모든 과정과 결과물 전체로 확장된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논문 저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자신이 맡은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참여한 부분에서 문제된 것이 아니라도 저자가 된 이상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역할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각자 책임을 맡은 부분에서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직접 관련된 공동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신저자라고 해서 무조건 연구부정행위자로 간주되고, 공저자라 해서 연구부정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기여한 바는 달라도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저자들이 공동으로 논문 전체를 윤독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연구자로서 저자의 영예만 취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질문에서 말한 "책임"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판단해 보건대, 소위 "책임"의 범위를 연구부정행위 판정 이후의 징계 또는 어떤 행정상의 처분까지 다분히 고려하고 말하는 것 같다. 사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 여부는 "해당 사안이 연구부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까지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후의 후속조치 및 징계는 다소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저자로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해당 건에 대한 징계 여부 또는 그것의 경중 등이 결정될 때에 질문한 내용(서로 맡은 부분이 다르거나, 데이터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저자 참여도 등이 차이가 있거나 등)이 객관적 자료로서나 정황상 분명하다면 일정 부분 참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 저자가 누락되어 게재된 경우 누락된 저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질문 4** 영어권 저널에 투고할 목적으로 3번째 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이 있었고, 투고한 논문의 심사결과가 좋지 않아 다른 저널에 투고를 고려하는 중이었는데, 제1저자가 제3저자를 빼고 제2저자의 이름만을 넣어 논문을 그대로 국내 저널에 투고해서 논문이 등재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답변 4

(1) 이 행위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부당한 저자표시” 중 “연구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부당하게 저자에서 제외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 유형이 될 수 있다. 다른 저자에게 저자에서 제외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묻고, 침해된 자신의 저자권 등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을 경우 제3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증거, 제1저자가 잘못을 인정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조사와 후속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한편 저널과도 연락을 취하여, 해당 저자권 문제를 밝히고,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 다음번 저널에서 “정오표”를 발간함으로써 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이 있다. 단지 “정오표” 발간만으로 끝날 것인지, 해당 논문 자체를 다시 인쇄, 배포할 것인지는 저널 측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3) 만약 (2)와 같은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질문한 것과 같이 제1저자 스스로 논문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고, 질의한 분이 직접 “연구부정행위 -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널 편집장에게 논문 철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제1저자가 논문 철회를 거부하여 저널 편집장에게 직접 요청해야 할 경우는 (1)에서와 같이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11. pp. 82-83.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 투고 준비 중에 제1저자 사망 시 제1저자를 변경해야 하는가?

**질문 5** 5명의 연구자가 1년 전부터 A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연구 진행 중에 제1저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였으나 제1저자의 공이 있기 때문에 논문에 제1저자로 표기 후 A학회에 논문 투고하고 싶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제1저자로 표기를 요청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답변 5

연구윤리의 측면에서,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ICMJE) 등 여러 학회들의 저자자격 기준을 보면 “연구의 설계, 실험 진행과 데이터 획득,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 결론 도출과 연구 논문(보고서) 초안 작성, 윤문과 연구보고서 최종 승인” 등의 모든 연구과정에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한 사람들만을 저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인은 이상의 연구과정 각 단계에 충분히 참여하였고 그것이 제1저자로서의 역할에 해당한다면 제1저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제1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제1저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만이 제1저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최종 보고서의 작성과 출판 최종 승인 등의 단계를 마치기 이전에 사망한 고인이 이 정도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제1저자로서의 역할은 아니지만, 공동저자로서의 저자 자격이 있다면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만약 고인이 사망 이전에 해당 연구에 저자로서의 자격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여 그 기여가 분명하다면, 또한 다른 공동 연구자들이 제1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제1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고인이라고 해서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고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저자 등재가 어려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 acknowledgement를 통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 부부간 공동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연구부정인가?

**질문 6** 부부가 하나의 논문에 공동으로 저자로 등재되는 방식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부부는 큰 영역의 전공은 같으나, 세부 영역의 전공은 달라 전혀 다른 내용의 논문을 부부가 각자 집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논문 게재 수를 늘려가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인가요?



### 답변 6

부부가 공동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동저자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부라는 특수 관계로 인하여 해당 연구 결과물에서 저자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저자로 등재될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부의 세부 전공 분야가 서로 달라 해당 공저 논문에 저자로서의 실질적 기여를 하기가 어려움에도 논문에 공동저자로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부당한 저자표시” 중 선물저자로 배우자를 등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를 해당 대학이나 학회 등 관련 기관에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증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해당 의혹 당사자들의 학위논문에서의 전공 분야, 그동안의 연구 업적 목록 등을 바탕으로 “부부가 상대방의 세부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전문 지식을 획득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이나 학회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제보 사실을 근거로 해당 논문에서 저자로서의 기여를 각각 하였는지 제보내용과 저자의 소명 및 관련 연구 자료를 조사하고, 해당 행위의 고의성, 위반 정도, 학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한 저자표기인지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이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 학위논문을 재구성해 학술지 게재 시 저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질문 7** A연구원이 4년 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을 늦게나마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B박사과정 대학원생과 같이 일부를 발췌해서 수정하고 새로운 참고 논문들을 추가하여 재구성하고,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 지도교수에게 교신저자를 요청하였으나, 지도교수는 B박사과정 대학원생은 공동저자로 올릴 경우 교신저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학술지 투고 논문을 작성하는 데 기여한 B박사과정 대학원생을 공동저자로 넣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경우 석사학위 논문을 재수정했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인지, 교신저자를 거부한다면 지도교수를 교신저자에서 제외해도 되는 것인지요?

### 답변 7

공식적으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내용을 후속 연구에서 재활용하면서도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학문 분야의 관행에 따라, 신진 연구자의 연구 내용을 학계에 소개한다는 취지로 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하여 전문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정책은 학술지별로 상이할 수 있다.

- 1) 학술지 측에 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함을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을 것,
- 2) 학술지 논문 본문에 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하였음을 명확히 표기할 것,
- 3) 동일 내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적을 활용하여 연구비를 중복 수령하거나, 연구 업적을 중복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할 것.

질문의 내용을 보면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는 후속 논문을 발표할 때, 그 저자를 본인, 공동연구자, 지도교수의 3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지도교수는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학위논문은 “대학원생의 연구수행과 지도교수의 지도”로 이루어지는 연구 성과물이므로, 학위논문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후속 학술지 논문을 발표할 때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 기여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제3의 공동 연구자가 추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일 지도교수가 이 점을 유의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면 지도교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학위논문을 단순 요약 정리한 학술지 논문”이 아니라,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새로운 가설이나 데이터의 추가, 기존 학위 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해석 등을 통해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새로운 내용”에 대해 공동 연구자가 충분히 기여했다면 공동저자로 올려야 한다.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연구자를 저자에서 제외한다면 이것 역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발표하고자 하는 학술지 논문의 성격이다. 발표하고자 하는 학술지 논문이 단순히 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한 논문이라면 제3의 공동 연구자가 추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발표하고자 하는 학술지 논문이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기는 했지만, “별도의 연구내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별도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논문”이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제3의 공동 연구자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해당 학계의 관행을 확인하고, 학회 편집진을 통해서 “학위논문의 요약 정리”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학술적 가치를 갖는 새로운 논문”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위 논문을 공식적인 출판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학문 분야 및 학술지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학위논문에 근거한 학술지 논문의 출판을 무조건 중복게재로 판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반드시 정직하게 표기하는 것이 차후에 있을 중복게재 논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회 편집진에도 이 사실을 알려, 심사과정에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 연구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저자’에 포함해야 할지, ‘감사의 글’에 포함해야 할지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 게재된 논문에서 주저자의 저자 변경요청에 대한 학회의 조치사항은?

**질문 8** 이미 저작권양도동의서가 제출되었고, 게재가 확정된 상황에서 주저자의 요청으로 제2저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요? 제2저자를 추가할 때 학술지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겠는지요?

### 답변 8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ICMJE)의 규정에 의하면, 한 번 출판된 논문을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 변경, 삭제는 어디까지나 학술지(학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술지의 출판윤리나 관련 운영 규정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논문 투고 과정이나 논문 투고 후 저자의 순서 변경이나 저자의 추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학술지에서는 저자가 추가 (또는 변경) 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 공저자에 알려 동의를 받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서명도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해당 논문에서 그 저자의 역할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논문 투고 후 게재 확정 전까지 충분히 저자에 대한 확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재 확정 후 저자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논문 출판 후 저자 변경은 출판윤리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할 위험이 있기에 자칫 학회의 '명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회는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저자 변경 시 심사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쌍방향 익명 심사'(동료 심사자가 원고 투고자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방향 익명 심사'(동료 심사자가 원고 투고자의 이름을 알고 하는 심사)라면 원고 투고자의 이름과 순서가 동료 심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학계 및 학술지의 출판 규정 등을 참고하고, 이번 기회에 해당 학술지의 출판 규정을 보완하면 학술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 학위논문을 제3자를 교신저자로 학술지 투고 시 학회의 조치사항은?

**질문 9**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면서 지도교수가 아닌 제3자를 교신저자로 등재하여 투고된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또한 학위 논문이 학술지에 투고된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 답변 9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이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학술지의 편집자가 투고 받은 논문이 연구자의 학위논문이 보완되어 작성된 논문이며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가 지도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이므로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따라 모든 저자(또는 교신저자)가 저자권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본 질문의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권 이해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편집자는 저자에게 모든 저자의 개별 기여 정보를 자세히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각 저자의 기여 정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는 학술지의 저자 규정(정책) 또는 ICMJE의 저자 규정 등을 명확히 진술해 주어야 한다.

이후 저자 목록에 대한 설명이 각각의 저자가 저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만큼 충분한 기여를 하였는지, 지도교수가 학술지 논문 투고 시 기여 여부, 저자권 부여 관련 협의를 진행했는지 등을 판단하고 논문 심사나 출판을 진행해야 한다.<sup>15)</sup>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는 것 자체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다. 단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학위논문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A dissertation submitted in a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본 질문은 저자자격(authorship)과 관련된 것으로 (1) 문학, 인문학 등의 분야(예를 들어, Modern Languages Association, Chicago Manual of Style)에서는 저자가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2)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충분한 기여도, 특정 기여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논문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3) 수학, 경제, 비즈니스 또는 고에너지물리학 등의 경우에는 저자 성명의 알파벳순으로 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4) 사회학의 경우도 의학 분야와 동일한 수준의 윤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실제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저자로서의 공헌이 있어야 함을 강조). 또한 대부분의 학위논문은 연구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 교신저자와 학위논문 저자의 지도교수가 상호 협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연구비 출처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5) 의학 분야의 경우에는 ICMJE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4가지 저자 선정 규정이 있다.<sup>16)</sup> (단, ICMJE 규정은 권고 사항)

- 연구의 구성과 디자인에 기여하고 데이터를 획득, 분석 및 해석을 한 경우
- 초안 작성 또는 비판적으로 수정에 기여하는 경우
- 출판할 논문을 최종 승인하는 경우
- 연구 전반에 걸쳐 연구의 정확성에 대한 질문들을 조사하고 해결한 경우

15) COPE. Flowchart(국문번역판). (번역: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5) [2]

16) ICMJE. Defining the Role of Authors and Contributors. [Internet]





## 데이터 오류에 의한 논문 자진철회 요청 시 학회의 조치사항은?

**질문 10** 실수에 의한 데이터 오류를 이유로 책임저자로부터 논문 자진 철회 요청 (voluntary retraction request)을 받았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 답변 10

본인의 실수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여 저자로부터 논문 철회 요청을 받은 경우,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순 실수인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해당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저자가 실수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정오표(Correction, Erratum)를 작성하거나, 학술지 측에서 철회를 고려하여 철회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 철회 기사를 게재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논문의 모든 공저자 및 교신저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수정이나 의견 표명 등의 유형과는 다르기 때문에 철회 이유를 밝히며 ‘논문 철회’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형태의 논문(인쇄본이든 전자논문이든)에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철회 서명을 발표하는 시기 또한 잘못된 출판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철회 조치 시 잠재적으로 타인을 중상하거나 비방하는 진술을 피해야 한다.

논문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자에게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1) 저자에 의한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증거를 받은 경우; (2) 발견 사실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저자가 속한 연구기관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출판 관련 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 (4)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판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1) 주장하는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중요한 오류나 실수, 문서 위조, 데이터나 이미지 조작); (2) 표절; (3) 발표하려는 결과가 이미 게재되었거나 기존의 결과나 저자들과 이해상충 관계가 있을 때, 정당한 과정이나 허락을 구하고 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4) 재료나 결과물의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허락을 구하지 않았을 경우; (5) 저작권 위반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 (6) 윤리적이지 않은 연구에 관한 결과 보고; (7) 논문 검토 과정에서 타협, 절충 또는 조작이 관여된 경우; (8) 이해상충 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sup>17)</sup>

### \* 근거 및 참고 자료

- COPE. Retraction guidelines.  
<https://publicationethics.org/retraction-guidelines>

17) COPE. Retraction guidelines. [Internet]. [10]



## 교신저자 대신 제1저자가 교신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질문 11** 교신저자가 아닌 제1저자가 학술지와 계속 서신을 주고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답변 11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반드시 교신저자가 진행해야 한다. 대체로 저자가 여러 명인 과학 분야 저널의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잦게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학술지의 편집 과정에서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자들에게 인지시키고 더는 출판 진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교신저자는 한 연구가 수행되어 논문을 출판하기까지 필수적인 여러 단계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학술지와 저자 간의 소통은 교신저자가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제1저자가 학술지와 계속 서신을 주고받는 것은 교신저자가 교신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포털([www.cre.or.kr](http://www.cre.or.kr)). 저자의 자격.



## 지도교수 역할로 제자 학위 논문의 학술지 게재는 연구윤리 위반인가?

**질문 12** A 교수는 제자 B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지도교수로서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A 교수는 아무런 출처표기 없이 제자 B의 동의하에 위 논문을 자신의 1) 단독 연구물 또는 2) 제자 B와의 공동 연구물로 학술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인가요?



### 답변 12

이공계의 경우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연구가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연구와 관련한 지도교수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문 분야별로 지도교수의 지도 내용 및 역할 정도는 차이가 있고, 교수의 지도와 연구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해당 학문 분야의 관행을 존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질문의 1) 단독연구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만일 A 교수가 제자 B가 쓴 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하되 그 박사학위 논문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논문을 작성한 경우라도 제자 B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 A의 단독 논문으로 작성·발표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자표시가 될 수 있다.

질문의 2) 공동연구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교수가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B와 공동으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제1항 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표기와 관련하여 학위 논문을 공식적인 출판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학문 분야 및 학술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급적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표기하는 것이 차후에 있을 중복게재 논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p. 72-75.
- 남형두, 『표절론』, 서울: 현암사, 2015, pp. 485-489.
- 이덕환, 「이공계 학위논문과 공동연구의 특수성」, 『동아시아언스』, 2021.05.12.



## 연구 도중 임용 계약이 만료된 경우 연구성과의 학술지 투고는?

**질문 13** A 연구원은 B 기관의 책임 연구원으로서 C 기관의 연구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D 는 위촉연구원으로서 이 연구 과제의 개발 및 연구 계획서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그 연구 과제 수행 중 B기관과의 임용 계약이 만료되어 이직 후 그 연구 과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 연구원은 이 연구성과를 논문으로 작성하여 학술지에 단독으로 투고 중에 있는데, 이 경우 연구윤리 문제가 없는가요?



### 답변 13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도 이루어진다.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 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는 행위를 말하며,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당한 저자표시'이다

- 1) 위촉 연구원 D가 C 기관의 연구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작성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았거나, A 연구원의 지휘 감독 하에 단순 작업만을 보조한 경우에는 저자가 될 수 없다.
- 2) 반면에 위촉 연구원 D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였으나 A가 D를 공저자에서 배제하는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4호)가 될 수 있다.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동 연구의 경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자로서의 역할 및 순서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한 다음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자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다.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는 해당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의 제공 및 개념 정립, 실험, 관찰, 조사 등을 통해 연구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해석), 연구논문이나 연구보고서 작성과 검토 등 연구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실질적인 업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실 제공, 단순 통계 처리, 문헌 수집 및 정리 등 연구 수행을 위해 도움을 준 경우는 연구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에 실질적인 지적 기여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acknowledgement(감사의 표시)"를 통해 그 업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남형두, 『표절 백문백답』, 서울: 청송미디어, 2017, pp. 201-204.

## 4 중복게재(이중게재, 부당한 중복게재) 및 출판윤리



### 학술지 게재 후 다시 학위 논문에 사용하는 경우 중복게재인가?

**질문 1** 이·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으며 학위 논문을 위해 연구한 내용 중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게재하려고 합니다. 학술지에 연구 내용을 게재한 후 그 내용을 다시 학위논문에 사용하는 것이 자기표절 혹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요? 그 반대로 학위 취득 후 학위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1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동료 심사자의 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므로, 여기에 발표된 중요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을 활용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중복게재가 아니다. 학위 논문에서 이전 발표된 논문을 어떤 방식으로 출처 표기를 하느냐는 해당 대학의 학위 논문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따르면 된다.

반대의 경우로 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관련 학문 분야에서 학위 논문을 공식적인 출판물로 보는가의 여부 또는 해당 학술지의 학위 논문을 활용한 논문 투고에 대한 출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나 타당한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고 이에 따라야 한다.

이·공학 분야에서는 학위과정 중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위 논문에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할 때,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는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불허되는 학술지도 있고,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학술지의 논문이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저자들은 자신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해당 학술지의 출판윤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공학 분야의 경우, 학위 논문은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와 같이 표현되듯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출판물로 보아 학술지 논문에 활용된 학위 논문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는 학위 논문도 PDF로 전환되어 과거와는 달리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출처를 밝히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 3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1.



## 과제참여로 얻은 결과를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 가능한가?

**질문 2** 이·공학 분야의 대학원생이 지도 교수가 연구 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결과를 활용하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는가요?



### 답변 2

이·공학 분야의 연구는 지도교수가 연구비를 수주하여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한 후 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즉,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와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이 나올 수 있고, 이때 연구 방법이나 데이터가 중복될 수 있다.

만일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이 먼저 제출되었다면, 여기에 있는 연구 방법이나 데이터 및 해석이나 결론 등을 활용하여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이·공계의 연구의 특성상 연구윤리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연구가 어떤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행되었고, 그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 혹은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연구과제 협약에 규정된 해당 지원 기관과의 연구 성과 발표 및 활용에 대한 범위나 조건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즉,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거나 사사표기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는 과제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주제로서 새로운 연구 성과를 제출할 것이 기대된다. 새로운 주제로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학위 논문과 연구비 지원에 대한 결과 보고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학위 논문을 통해 이미 어떤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고, 추후에 이와 비슷한 주제로 연구비를 신청하여 그 결과물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이 학위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면, 연구비 신청 때부터 새로운 주제에 대한 기획이 아니고 이미 발표된 내용이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연구 주제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연구비 지원 기관과 이를 믿는 독자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 48, p. 52, p. 54, pp. 80-81.



## 하나의 설문 또는 실험으로 2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윤리위반인가?

**질문 3** ①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 동일한 설문지로 설문은 한 번에 획득하였으나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를 초·중등 학생별로 각각 나누어 결과를 분석·정리하여 학술지에 각각 따로 게재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가요? ② 또는 하나의 실험에서 두 개의 논문이 나오는 경우나 같은 실험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을 경우 다른 논문으로 출판될 수 있는가요?

### 답변 3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의하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2) 이미 게재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3)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이다(단, 연속 논문은 제외). 만약 질문 ①처럼 동일한 설문 내용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각각 제시한 후 연구 설계, 내용, 결론 등이 유사한 두 개의 논문을 작성한다면 각각의 논문이 학술적 가치 및 연구의 독자성이 있을지가 중요하며, 고의로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논문을 분리하여 지나치게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하여 출판한다면 중복게재 유형 중 쪼개기 출판(salami publication)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설문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고 대상은 다르지만 유사한 관련 내용이 출판된 사실을 해당 학회에 정직하게 알려 이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최종 게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두 논문 간의 유사성이 있더라도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별성이 있고, 후속 논문에 재활용되는 선행 연구 내용에 대하여 출처를 정확히 밝혔다면, 단순히 동일한 시기에 수집한 설문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윤리에 위배되거나 중복게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각 논문에는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설문 등의 내용이 동일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는 사실을 서론 및 방법 등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②와 관련하여, 하나의 질병 모델에 대해서도 수많은 현상이 연구될 수 있고 같은 현상이라고 해도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실험에서 두 개 이상의 논문이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연구윤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즉, 기술적으로 같은 실험이라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의 방향성, 결과, 의미 등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논문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원래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하였을 때 분할(쪼개기) 출판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구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데이터를 나누어 일부는 A 논문에, 일부 데이터는 B 논문에 나누어 발표하였다면 분할 출판에 해당된다. 이런 분할 출판은 필연적으로 각 논문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연구 결과의 가설과 주장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 개시 전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 지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10.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 11. p. 45.



## 해외 학술지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다시 발표할 수 있는가?

**질문 4** 국내 학술지에서 발표한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해외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일을 장려하거나 번역료 및 게재료 등을 지원하기도 하는 학회 또는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것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4

중복게재란 공식적으로 이미 발표(출판)된 자신의 연구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후속 연구에서 재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후속 연구에서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글로 먼저 발표한 논문을 영어로 다시 발표하든, 영어로 먼저 발표한 논문을 한글로 다시 발표하든, 후속하는 논문에서 이전 논문을 언어를 달리하여 다시 발표한다는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모두 중복게재이다.

질문의 내용이 ‘허용될 수 있는 중복게재’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그것을 다시 발표할 때의 학술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한글로 발표한 논문은 국내 연구자들에게만 접근이 가능하며, 해외 연구자들에게는 알려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들과 해외 연구자들은 확실히 구분되는 독자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연구 성과를 해외 연구자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학회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연구자 개인에게나 국내 학회 및 기관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이다. 반면에 다수의 국내 연구자들이 이미 해당 학문 분야의 해외 학술지들을 충분히 섭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외 학술지의 독자층과 국내 학술지의 독자층이 확실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굳이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 학술지에 다시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다시 발표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번역 발표 행위에 학술적 가치가 있음을 먼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번역 발표 행위에 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둘째, 이전 발표 매체와 후속 발표 매체 양쪽으로부터 논문 중복게재를 위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후속 발표 매체의 학술지에 어떤 식으로든 이전 발표 사실과 원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 독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이전 발표물과 후속 발표물이 별개인 것처럼 연구업적을 중복으로 인정받거나, 연구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 이상의 조건들을 철저히 지킬 때 ‘부당한 중복게재’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7.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 105. p. 109.





##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질문 5** 분명히 연구자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연구 성과물인데,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학술지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일 등)이 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키나요?

### 답변 5

연구윤리상의 '부당한 중복게재'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침해'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각각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연구윤리상의 '부당한 중복게재'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중복게재<sup>18)</sup>(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후속 저작물에서 재활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를 한 후 이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연구비 수주, 업적 평가, 승진이나 임용에 활용 등)을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12조 1항 5호에 규정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이전에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 결과"라는 사실과 그 원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연구 업적의 중복인정이나 연구비 중복지원 등의 부당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는 등의 철저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때, 그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또는 출판사가 저작자인 연구자에게 저작권 양도 동의 또는 이용허락을 요구하게 되고 연구자가 이에 동의하면 저작권의 일부를 학회나 출판사가 갖게 된다.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은 여러 학술지들과 계약을 맺어 기관 소속 연구자들에게 '무료 구독'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의 눈에는 논문 구독이 무료로 보일지라도, 사실은 대학 및 연구기관은 학술지들에 많은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것은 학술지들이 논문의 출판, 배포, 전송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 논문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 자신의 논문이라도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단행본으로 묶어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 발행기관과 계약을 맺어 학술지 발행기관이 단행본 출판에 동의하도록 협의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기 출판된 자기 논문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판할 경우, 학술지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의 일부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35-239.

18)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를 '자기표절'(self-plagiarism), 또는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라고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이후 저작물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여 자신과 독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 학술대회 발표 후 학술지 논문에 게재하는 경우 중복게재인가?

**질문 6** 이·공학 분야의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하였고 초록집에 실린 바 있는데 이러한 연구내용을 추후에 정규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6

학술대회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할 당시 제시하였던 자료와 그림은 추후에 본인의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학술대회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발표해도 문제시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학문 분야의 관행이다. 왜냐하면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아직 검증받지 아니한 가설이나 미완성의 연구에 대해 여러 분야의 동료들에게 예비 보고의 형식으로 발표하여 이의 타당성을 묻는 연구 활동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록은 하나의 완성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출처표기 없이 활용해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문 분야와 학술지에 따라서는 학술대회에서 사전에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에 그대로 혹은 간추려 게재하는 경우, 논문 투고 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후속 논문에서는 출처표기를 하여 중복 사용한 사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의 학술대회 발표는 그 의미가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술대회 발표 초록집이 학술지에 견줄 만한 인정을 받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기/전자/컴퓨터 등 추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예를 들어,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의 프로시딩은 그 자체가 논문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대다수의 학회에서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초록을 정규 학술지 논문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의 2차 출판 혹은 재사용과 관련한 지침이나 학계의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후속 논문 발표 시에는 해당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이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연구윤리 위반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각종 학술대회의 포스터에서 사용한 연구 데이터를 후에 학술지 논문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에도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도록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문의하거나 출판 매뉴얼을 확인하여 이에 따르는 것이 좋다. 통상 선행 연구와 겹치는 중요한 데이터나 해석 및 논점 등을 재활용하는 논문을 게재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술 논문의 출판 환경을 고려해 보면, 인터넷이 발달하여 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의 자료를 모아놓은 프로시딩 등은 과거와는 달리 누구라도 쉽게 접근 및 인지할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후속 연구물을 출판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정당한 재사용이라는 연구윤리의 원칙을 고려할 때 가급적 이미 발표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 11. pp. 82-8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72-277.



## 중복 출판을 방지하기 위한 학회의 조치사항은?

**질문 7** 종설(Review)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 가능한지, 투고 중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brief communication 형식으로 수록할 수 있는가요?



### 답변 7

학회나 출판사에서 학술지 발행의 책임을 맡은 분들이 흔히 궁금해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경우 모두 중복출판의 위험이 있다. 중복투고가 발견되는 경우 투고 철회 요청을 받으며 중복투고를 받은 두 곳 이상의 학술지 소속 각 편집위원회는 이런 사안을 제보 받거나 인지하면 상호 소통하여 한 곳을 제외하고는 논문 투고를 철회하라는 의견을 전달한다. 단, 한 편집자가 다른 학술지의 편집자와 소통할 때는 저자의 기밀 존중을 위해서 논문 전문에 걸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sup>19)</sup> 만약 학술지 간 상호협의를 얻었더라도 논문 첫 페이지에 타 학술지에 출판 또는 출판 예정인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상호협의를 얻은 경우에도 brief communication 형식보다는 editorial 형식을 권장하며, 만약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아니고 투고 중인 논문의 경우에는 각 학술지의 투고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양측 편집위원회의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복 투고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 순서 및 교신저자를 바꾸지 않아야 하며, 만약 꼭 바꾸어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와 함께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받아 편집인에게 검토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다만, 여러 학술지나 출판사가 상호협의를 하여 가이드라인 형태의 글을 발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sup>20)</sup> 투고 받은 논문의 저자 목록에 기 출판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인이 1명 이상 있으며 가설이나 결과가 유사한 경우 중복투고를 의심해 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COPE. Multiple submissions.  
<https://publicationethics.org/taxonomy/term/831>
- 수술중신경계감시 임상진료지침 2020 개정안  
DOI: <https://doi.org/10.33523/join.2020.2.1.1>.

19) COPE. Multiple submissions. [Internet]

20) 수술중신경계감시 임상진료지침 2020 개정안. 2020.



## 길이가 긴 종설(Review) 논문은 나누어 게재가 가능한가?

**질문 8** 학술지 편집위원회 회의 결과, 투고된 종설(Review) 논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나누어 게재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8

한 개의 논문이 다른 저작물 고유번호를 갖고 출판되는 것이기에 분할 출판의 우려가 있다. 만일 분할된 서로 다른 저작물에 다른 저작물의 내용 상당 부분을 활용하며 적절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분할 출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독자로서도 분할 출판된 해당 논문들의 연구 결과 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투고된 종설 논문이 길더라도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호에 출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처럼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거나 저자 측의 요청으로 학술지 측에서 허가하고자 할 때는 저자에게 분할되는 논문의 초록을 각각 작성하고 참고문헌도 각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나누어 수록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 출판이 보편화 되면 같은 가설과 같은 결과를 얻은 논문이 해당 연구진의 연구실적을 부당하게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분할 논문을 피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 기준에 따라서도 중복게재로 판정될 수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

#### 중복게재의 판단기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

##### 5. 중복게재의 판정

2)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 ①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 ② 이미 게재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③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 논문은 제외

##### 6.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

2) 다음에 해당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에서 적절한 출처표기를 한 후속 저작물
-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대중용 책이나 잡지 등에 쉽게 풀어쓴 경우
-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 외국의 Open Access 출판정책과 관련하여 학회의 조치사항은?

**질문 9** 외국의 Open Access(OA) 출판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원고를 투고 받았을 때 학회는 저작권(copyright)과 게재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답변 9

공공기관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연구비 수주 과정에서 마지막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이 부분(저작권 및 게재료)을 정확히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계약 관계를 따져 보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비 지원 기관 중 비영리단체인 Bill and Melinda Gate Foundation, Wellcome Trust 의 경우, 완전한 Open Access(OA) 학술지가 아닌 경우 연구비 수주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21년 1월부터 스프링어-네이처(Springer-Nature)도 OA 학술지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게재료의 경우 해당 학술지가 OA로서 CC-BY license를 선언했다면 게재료는 저자가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자가 속한 기관이나 정부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기금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출판사나 학술지의 입장에서는 게재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운영하느냐의 문제이고 개인에게는 게재료를 어디서 충당하느냐가 관건이며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연구비 및 게재료 등 모두를 포함)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느냐의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어 명확한 답을 주기가 쉽지 않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1)</sup> 만약 subscription-based 학술지로서 게재료를 받지 않고 도서관에서 지불하는 경비로 운영하는 경우, 게재료를 저자에게 받아서 CC-BY license에 따른 OA 논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DOI: <https://doi.org/10.24318/cope.2019.1.12>

21) Equality, equity, and reality of open access on scholarly information. 2017.



## 출판된 논문에서 규정 미준수 사항 발견 시 학회의 조치사항은?

**질문 10**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논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답변 10

논문 규정 미준수 사항이 논문 철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 발견된 사실들이 연구부정행위나 실수로 신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2) 발견된 사실들이 적절한 상호 인용표시, 또는 중복발표 허락이나 정당화 없이 다른 곳에서 발표된 적이 있는 경우; (3) 표절의 경우; (4) 비윤리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sup>22)</sup> 이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절차대로 충분히 확인이 되어야 하며, 저자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정확히 어떤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해당 사안이 논문 철회를 해야 할 사유인지 편집인이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편집인의 귀책사유도 크므로 심각한 위반으로 과학성에 의심이 갈 수준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계속 두는 것이 저널 명성이나 과학성에 타격을 주어 철회 절차를 진행할 때 전체 저자의 동의도 필요하며 철회 내용을 논문 형태로 발행하고 발행 시 논문의 서지 정보와 사유, 주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COPE. Retraction guidelines.  
<https://publicationethics.org/retraction-guidelines>

22) COPE. Retraction guidelines. [Internet] [10]



## 원고가 접수된 후 저자가 사망한 경우 학회의 조치사항은?

**질문 11** 원고가 접수된 후 해당 논문의 저자가 저작권 이해상충에 관한 진술 및 저작권 이전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답변 11

사망한 저자가 해당 논문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사망한 저자의 공로를 저자 모두가 인정한다면 처리 절차가 간단할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를 조사하던 중 사망한 저자만이 알고 있는 기여를 한 저자 또는 기관 등이 있음이 밝혀지거나 편집자가 공저자로부터 비공식적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필요하다면 공증된 진술을 얻기 위해 사망한 연구자의 친척 또는 유언을 집행해 줄 법정 대리인에게 이해상충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투명한 이해상충 진술을 위해 이해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편집자는 해당 저자의 참여도와 사망한 날짜를 포함한 진술을 논문에 따로 기술하거나 각주를 넣어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3)</sup> 물론 새로 발견된 공로가 있어 논문의 기여 내역에 추가되는 경우 저자 및 관련 기관 변경 사유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모든 저자가 해당 내역이 추가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저자가 있는 경우 논문의 심사 및 출판이 보류될 수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COPE. Case of deceased author.  
<https://publicationethics.org/case/deceased-author>

23) COPE. Case of deceased author. [Internet]. [18]

## 5 연구노트, 데이터 관리



### 공동연구로 수집된 데이터로 각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가?

**질문 1** 연구자 A와 B가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때 공동 연구에 참여한 A와 B가 각자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공동으로 얻은 결과를 서로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가요? 만약 어느 한 연구자가 먼저 그 데이터를 포함시켜 논문을 발표하였을 경우 다른 연구원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1

공동 연구를 통해 얻은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목적과 주제가 각기 다른 논문을 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논문 각각은 그 학술적 가치와 필요성이 충분이 있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료의 중복사용 혹은 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의 의혹이 생길 수 있다.

각 논문에는 연구 대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서론 및 방법 등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만약 두 가지 논문 중 한 논문이 먼저 게재되었거나 혹은 출판을 위해 심사 중이라면 후속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 시에 해당 학회 편집인에게 선행 논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게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경우로 ①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② 이미 게재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③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단, 연속 논문은 제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표기를 한 후속 저작물 ③ 이미 발표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 21.
- 연구윤리 지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10.





## 졸업 후 타 기관으로 연구노트를 가져가 활용할 수 있는가?

**질문 2**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 동안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 아이디어, 내용, 그리고 결과 등을 연구노트에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사학위 과정 중에 작성한 자신의 연구노트를 가져가 박사과정 연구에 참고할 수 있나요?



### 답변 2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수행의 계획 단계부터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의 과정과 원자료, 결과 등을 연구노트<sup>24)</sup>에 기록한다. 즉, 연구자는 연구노트에 단순한 데이터의 기록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 시 환경적 요인과 함께 실험 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향후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므로 연구자 소속 기관이 변경될 때 자신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이직하는 기관으로 가져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연구노트 지침>에 의하면 연구노트의 소유권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연구자의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는 연구노트 원본을 가져갈 수 없으며, 사본의 경우는 연구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와 같이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연구실 책임자인 지도교수의 허가 하에 연구노트를 복사하여 반출할 수 있지만 여전히 원본은 원 소속기관에서 보관해야 한다. 특히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의해 작성된 연구노트의 경우는 그 보존기간이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정해져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4호, 2021)
- 황은성외 6인,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 매뉴얼』, 2014, p. 121.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44호에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 성과를 기록한 자료”로 정의



## 서면 연구노트와 달리 전자 연구노트 사용 시 주의사항은?

**질문 3**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연구노트를 서면으로 적는 것보다 온라인상의 편리한 노트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자 연구노트를 사용함에 따라 서면 연구노트와 달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답변 3

전자 연구노트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sup>25)</sup> 전자 연구노트는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자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 기록자와 점검자의 서명 인증 기능이 있어야 하고, 연구 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 기록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물리적 서식을 갖추어 작성 요령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첨부하여 내용을 작성할 때도 해당 자료의 정확한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면 기록도 법정에서 효력이 발생하나 변조 여부가 입증 가능하다면 시간, 날짜, 작성자 항목에 대한 내용들은 전자 기록물이 더 명백한 증거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전자 연구노트도 기록물이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을 목표로 하며, 기본적인 작성자에 대한 확인, 인증된 기록물이 이후 추가/수정/삭제 등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장, 기록물에 대한 제3자의 확인 등이 확실시된다면 전자 연구노트 사용 중 연구윤리 위반사례 발생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지침.

####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지침

##### 제1장 총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 제2장 연구노트의 작성

##### 제5조(연구노트의 요건)

②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제3장 연구노트의 관리

제9조(보관 및 관리) ①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작성일 부터 30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연구노트 작성 방식.  
<https://yure.yonsei.ac.kr/note/elecResNote.do>.
- kista 연구노트포털. 2020년도 연구노트 작성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https://www.e-note.or.kr/support/materialList.do>.



##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작성된 연구데이터의 적절한 활용방법은?

**질문 4** 일반적으로 대학교 연구실은 지도교수가 중심이 되어 연구과제 중심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연구 장비 및 특수한 연구 장비의 경우 많은 학생과 연구원들이 참여하게 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연구데이터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작성된 연구 자료를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활용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작성된 연구 자료를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에 활용할 경우, 공동 작업으로 작성된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요?

### 답변 4

연구 장비 및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구의 특성상 해당 연구실 내의 많은 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 각 연구자들은 이를 공동으로 활용해 자신의 연구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분석 현상에 대해 석·박사 논문 그리고 학술지에 사용한다. 연구윤리 위반과 연구부적절행위와 관련하여,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명료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해당 연구실 내의 많은 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데이터를 작성하였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각자의 논문의 학술적 차이점과 독창성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데이터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출처를 표시하고 공동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연구에서 획득한 원자료(raw data)를 가지고 표나 그림으로 가공하여 만드는 것도 ‘저작물’로 봐야 하며, 논문에 표, 그림 등의 순서, 형태까지도 동일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 분석 자료의 작성과 진행과정 및 변환에 관한 근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셋째, 동일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작성된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동 관리하는 데이터 및 그림 등을 자신의 논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소한 공동 연구자의 사표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가 발생한다. 특히 시기적으로 먼저 공개 및 발표된 자료와 내용을 사용 시, 공동 연구자와 지도교수와의 동의와 승인 관련 절차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연구실을 총괄하고 있는 교수는 이러한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총괄 책임을 갖는 교수는 연구실의 공동 데이터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도와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크다 하겠다. 만약 참여 연구원들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위논문 취소 등의 징계 및 행정 조치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59-175.

6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IACUC(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RB 심의는 연구 진행 과정 중 ‘언제’ 받아야 하는가?

**질문 1**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한 연구로, 논문이 이미 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당시 IRB 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리뷰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논문 게재 후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에서 IRB 심의 없이 진행된 연구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논문이 게재되었지만 지금이라도 IRB 심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 사례의 연구는 이미 수행되었고, 논문까지 게재된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IRB 심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연구를 하기 전’이란, 문헌조사부터 시작하는 연구 진행의 초기 단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IRB 심의 시 제출하는 연구 계획서는 proposal이 아닌 protocol이다. 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연구계획이 충분히 구체화된 이후에나 IRB 심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에서 말하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이란, 인간 대상 연구라면 구체적인 연구 계획서가 준비된 후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나 관찰, 특정 약물 투여 등 연구대상자에게 상호작용이나 처치가 이루어지기 전의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체유래물 연구 또한 구체적인 연구 계획서가 준비된 후 기증자에게서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의 시점을 의미한다.

IRB 심의를 받지 않았어도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해당 기관 IRB의 SOP(표준운영지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에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제재 조치와 관련된 부분은 질문 6번을 참고하기 바람).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5조, 제36조.



## 유사하게 수행되는 두 연구에 대해 심의 절차가 다를 수 있는가?

**질문 2** 대학 병원 소속 연구자 A는 혈액 20mL씩 100개의 시료를 분석하여 OO 질병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IRB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기관 소속 연구자 B는 혈액 50mL씩 100개의 시료를 분석하여 △△ 질병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IRB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IRB는 A 연구자의 연구는 심의면제로, B 연구자의 연구는 정규심의로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연구는 방법이나 절차 면에서 유사한 유형으로 보이는데 두 연구의 심의 절차가 다른 것이 맞는 것인지요?

### 답변 2

인체유래물 연구의 경우, 유사한 유형의 연구라 하더라도 인체유래물을 획득하는 경로에 따라 심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인체유래물의 획득 경로에 따라 기증자에게 미치는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체유래물 은행을 통해 인체유래물을 획득하거나 시판 중인 분리·가공된 연구 재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기증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므로 연구 내용이나 목적이 특별히 공공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면 심의면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혈액을 직접 채취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침습적인 채혈 절차가 포함되고, 해당 연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획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채혈 양이나 기증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구의 위험 정도에 따라 정규심 의 또는 신속심의로 진행된다.

위 사례에서 두 연구자의 연구에 대해 심의 절차가 달랐다면 두 연구에서 인체유래물을 획득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생명윤리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인체유래물 연구는 심의면제가 가능하다.

#### 〈 생명윤리법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는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수행하는 연구는 IRB 심의 없이 가능한가?

**질문 3** 간호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학위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IRB 심의면제 대상을 찾아보니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설문지의 경우 익명으로 진행되나 학력과 나이, 성별 등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IRB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 협조만 요청하여 IRB 심의 없이 연구를 진행해도 될까요?

### 답변 3

설문조사와 같은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단순히 개인식별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심의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생명윤리법은 인간 대상 연구에 있어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생명윤리법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들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들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 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심의면제가 가능하려면, 연구대상자나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며,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으면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여야 한다.

위 사례 연구의 경우, 개인식별정보는 수집·기록하지 않으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설문지의 내용에 따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또는 연구자가 관리자급 이상의 직위이고 설문에 응하는 간호사들이 하위 직급이라면 연구대상자는 위계에 의한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연구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연구가 심의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추가 정보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연구자가 임의로 결정하기보다는 IRB에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자서전을 분석하는 연구의 IRB 심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질문 4** 시판 중인 특정 개인의 자서전을 분석하여 해당 개인의 연령대별 심리 상태 및 사고 과정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심층 연구이다 보니 개인 식별이 가능하고, 민감한 사생활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RB 심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까요?

### 답변 4

위 사례의 연구는 개인식별정보나 민감한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된다 하더라도 생명윤리법상의 인간 대상 연구가 아닌 문헌연구이므로 IRB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위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한다면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되고, IRB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민감한 정보들은 서적이 라는 형태로 시판 중이어서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이고, 연구자가 위 정보들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해당 개인과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상호작용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의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서전뿐 아니라 신문기사, 드라마나 영화 속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 연구 등도 마찬가지로 인간 대상 연구가 아니므로 IRB 심의 대상이 아니다.

#### 〈 생명윤리법 제2조(정의) 〉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

-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IRB에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연구를 수행해도 되는가?

**질문 5** 설문조사 연구를 수행 중이며, IRB로부터 승인은 이미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을 당시에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온라인 설문조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설문지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사이트 주소를 보내어 사람들이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지요? 설문지는 당사자의 동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인터넷 설문지에도 당사자의 이름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괜찮은지요?



### 답변 5

연구자는 IRB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연구 계획서를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연구 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수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된 사항들에 대하여 사전에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심의라 한다.

변경심의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최종 승인받은 연구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사항이 변경심의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단순한 연구대상자 수 변경이나 연구진 변경, 연구 기간 변경 등 사소한 사항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이나 연구대상자 집단의 변경, 모집 방법이나 동의 획득 절차의 변경 등의 사항까지 모두 포함된다.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연구자는 IRB에 변경된 연구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 수준의 변경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IRB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된다. 변경심의도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변경된 연구계획 따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연구 방법이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동의획득 여부에도 변경을 가져오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하려는 연구대상자군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변경심의를 요청하는 연구 계획서 등에 충분히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은 동의서 작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인하여 서면 동의서 작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설문지에 당사자의 이름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동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IRB의 검토가 필요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0조.



## IRB가 연구자에게 벌칙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질문 6** 70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운동 보조기구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계획하여 IRB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연구 대상자를 20~30대로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구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연구 종료 후 IRB에 연구 종료 결과를 보고하자 IRB는 연구계획 위반이탈 및 미준수라는 통보와 함께 페널티로 윤리교육을 재이수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IRB가 연구자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나요?

### 답변 6

각 IRB는 표준운영지침(SOP)을 만들고, 그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SOP에는 IRB의 구성부터 심의 종류, 심의 절차, 회의 절차 및 방법, 연구자의 준수 사항 등 IRB의 운영에 필요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연구자가 관련 법규 및 SOP 규정을 위반했을 때 IRB가 취할 수 있는 벌칙이나 제재 조항이다.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SOP를 만들고 있어 절차나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SOP에 연구자의 준수 사항과 위반 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IRB의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벌칙이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구자의 미준수 및 위반·이탈의 수위에 따라 벌칙이나 제재 조치의 수위도 달라지게 된다. 동일한 미준수 및 위반·이탈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벌칙이나 제재 조치의 수위나 내용도 다를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미준수 및 위반·이탈의 내용은 사전에 변경심의를 받지 않고 연구대상자군을 연구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과, 1년 이상 수행되는 연구에서는 1년마다 지속심의(또는 중간보고)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지속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다. 대부분의 IRB들은 SOP에 변경심의회나 지속심의회 시점, 절차, 제출서류, 심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IRB는 위 사항들을 연구자의 미준수 및 위반·이탈로 판단한 것이고, 그 수위에 준하는 벌칙이나 제재 조치를 이행할 것을 연구자에게 요청한 것이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0조.



## 동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질문 7** IRB의 승인을 받은 후 20~60대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식이 조절을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영양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혈액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연구대상자를 모집 후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 7

동의서 작성 전에 우선 IRB의 승인을 받은 동의서 설명문을 바탕으로 연구에 대하여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 인간 대상 연구라면 연구의 목적,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과 절차 및 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인체유래물 연구라면 인체유래물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 등의 처리,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 연구 목적의 변경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의서 작성 시에는 동의서에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또는 기증자)의 성명, 서명, 동의 획득 날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경우, 법정 서식인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 인체유래물의 보존기간, 보존 기간 내 2차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 및 2차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동의서에 필수 작성 사항이 누락된 사실이 IRB가 동의서 사본을 확인하는 과정(주로 지속심의 또는 종료 결과 보고 시)에서 발견된다면 IRB는 동의 획득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런 경우 IRB는 재동의 획득이나 해당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연구 데이터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상기 내용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이 된 동의서 원본을 연구 계획서상에 기술된 문서보관 방법에 따라 잘 보관하여야 한다. 동의서는 연구 종료 후에도 생명윤리법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6조, 제19조, 제37조,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4조.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9조,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 모국어로 된 동의서가 필요한가?

**질문 8** 한국에 온 지 3년 미만의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여 한국 문화에 적응 과정을 알아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IRB의 심의 의견은 이주 여성들의 모국어로 된 동의서와 설명문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국어로 된 동의서와 설명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답변 8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언어 장벽이다. 연구대상자들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동의 획득 과정에서도 연구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연구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후에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동의서와 설명문을 IRB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모국어로 작성된 동의서 등의 제출이 어렵다면 동의 과정에 참관인이 참석하여 동의서 서식이나 설명문 관련 내용을 연구대상자에게 전달하고 동의서에도 연구자, 연구대상자와 함께 자필로 서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참관인은 연구와 무관한 사람이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언어를 구사하여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3조, 제16조, 제37조.



## 유아 대상 연구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부모도 연구대상자인가?

**질문 9** 수도권 소재 어린이집 10곳을 대상으로 놀이를 접목한 미술 수업이 유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수업 전후 아동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 양육자인 유아의 부모 1명에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아의 부모 대상으로 대리 동의를 위한 동의서와 설명문을 IRB에 제출했더니 IRB에서는 부모용 동의서와 설명문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모도 연구대상자인가요?



### 답변 9

유아의 상태나 변화 양상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실시할 경우, 주로 부모가 설문조사에 답변을 하게 된다. 이때 설문지에 응답을 한다는 행위만으로는 부모가 연구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에 따라 부모도 연구대상자인지 여부가 달라진다.

연구 목적이 유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는 것이고, 설문 내용이 전적으로 유아의 상태나 변화에 관련된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유아이다. 부모는 유아를 대신하여 설문지를 작성할 뿐 연구대상자는 아니다. 동의에 있어서도 부모는 유아의 대리동의자로서 유아가 연구에 참여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 목적은 유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기술되어 있더라도 설문지에 유아의 정서 변화에 따른 부모의 육아 방식이나 부모의 인식 변화 등 부모에 관하여 묻는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IRB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모도 연구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런 경우라면 유아를 위한 대리 동의 외에 부모용 동의서와 설명문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6조,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구계획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질문 10**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연구계획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10**

연구자가 자신의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취약한 연구 대상자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성적을 부여하는 교수와 학생이라는 위계 구조나 권위 관계로 인해 연구 참여나 동의 철회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모집부터 동의까지 자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본인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연구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연구대상자 모집에서는 연구자인 교수가 직접 연구 참여를 권유하기보다는 모집 공고문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의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과 상관없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가 계획되어야 한다.
-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 획득도 연구진이 아닌 제3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생들이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고, 연구 참여가 성적/학점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시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는 연구라면 연구 종료 후 대조군에게 시험군에 준하는 교육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3조.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지침』 2019. pp. 31~33.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동의 획득 방법은?

**질문 11**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동의는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가요?

사례 1) 건강정보이해능력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건강정보이해 능력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할 때 꼭 보호자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 2) 만 18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연구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 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자의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 현재 논문 대상자는 부모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 구성원으로 성인인 이복 언니와 친매를 앓고 계신 친할머니가 있는 경우, 이복 언니와 할머니 중에서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3. 2번 질문의 보호자 말고 현재 논문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이 청소년을 케어하고 있는 담당자가 논문 동의 보호자로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라면 위에 언급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11

생명윤리법에서는 대리동의를 필요한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동이가 아닌 본인의 동의만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위의 사례2)에서 만 18세인 사람은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생명윤리법상으로는 연구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의 대리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위 사례1)의 고등학생은 연구 참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상 반드시 대리인의 서면동 의가 필요하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연구에 참여 시 대리동의를 할 수 있는 가족은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 비속’의 순이다. 위 사례 2)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만약 만 18세가 아닌 만17세의 아동이라면 부모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원칙상으로는 ‘할머니 → 언니’의 순으로 대리동 의자가 될 것이다. 다만 위 사례에서 할머니는 치매로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언니가 대리동 의자가 된다. 청소년 쉼터 담당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법정대리인이 아니라면 만 18세 미만 아동 의 대리동 의자가 될 수 없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6조,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민법[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제932조, 제940조의3.





## 외국 연구자가 내국인 대상 연구 시 국내 IRB 심의를 받을 수 있는가?

**질문 12** 외국 대학의 연구자가 국내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국내에서 IRB 심의를 받을 수 있는가요?

사례 1)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000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연구로 학위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이미 IRB 심의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에서 한국에서도 연구가 진행되니 한국에서도 IRB 심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IRB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사례 2)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심층면접 연구로, 18-35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와 자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정 대학교나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서 연구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있는 학교의 IRB 담당자는 반드시 한국 상황을 알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연구 검토를 받고 연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를 검토해 줄 기관이 있을까요?



### 답변 12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 대부분의 미국 대학 IRB는 한국에서도 IRB 심의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한다. 한국에서도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고 연구가 수행되는 만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의 연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구자는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공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공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공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 위탁한 업무나 교육·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가 신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국내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외국 유학생이나 외국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경우, 연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공공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은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ir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의 신청은 e-IRB 시스템(public.irb.or.kr)에서 가능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45 CFR 46 Subpart A §46.10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연구 종료 후 남은 인체유래물은 2차 사용해도 되는가?

**질문 13** 00연구 종료 후 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혈액 샘플 300여개(각각 1~2mL)를 폐기하지 않고 동료 연구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폐기해야 하나요?



### 답변 13

연구 종료 후 남은 인체유래물은 연구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연구 계획서와 설명문상의 폐기 또는 제공 등 처리 계획을 준수하고, 동의서에 표시된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연구 계획서와 설명문 및 동의서상 남은 인체유래물의 제공이 가능하다면,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려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에서 제공 심의를 거쳐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정 서식인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서식에는 아래와 같이 인체유래물 보존기간, 보존 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 보존 기간 내 2차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를 기증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의 내용	연구 목적	
	인체유래물 종류 및 수량	
	인체유래물 보존기간	1. 영구보존 [    ] 2. 동의 후 [    ]년
	보존 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	1. 유사한 연구 범위 안에서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동의하지 않습니다. [    ]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1. 개인식별정보 포함 [    ] 2. 개인식별정보 불포함 [    ]

계획서 및 설명문에 '연구 종료 후 즉시 폐기,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고, 동의서에도 보존과 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연구 종료 후 남은 인체유래물은 다른 연구자가 사용할 수 없다. 남은 인체유래물의 양이 많더라도 연구 계획서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계획서 및 설명문에 '남은 인체유래물은 다른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음'으로 기술되어 있고, 동의서에도 보존과 제공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동의서에 표시된 기간과 2차 사용의 범위 내에서 연구 종료 후 남은 인체유래물을 다른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는 생명윤리법 제38조에 따라 기증자가 제공에 동의했는지의 여부와 인체유래물이 익명화되어 제공되는지, 무상으로 제공되는지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37조,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COVID-19 관련 연구 수행 시 신속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는가?

**질문 14**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수행하려는 연구자입니다. 임상시험 전에 IRB 심의를 받으려면 심의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보통 임상시험이나 다른 연구보다 먼저 심의를 받을 수는 없나요?

### 답변 14

COVID-19 팬데믹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시급한 연구이므로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IRB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므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임상시험 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이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전화로 설명을 하고 격리실에서 서명한 동의서의 원본 사진 보관 등 동의 획득과 동의서 보관 및 관리 절차도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다. 국외 WHO, 미국 FDA 등에서도 신속한 심의를 허용하는 가이드선들을 배포하였고, 전자동의를 포함한 폭넓은 동의 방안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신속한 심의의 전제는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 확보와 윤리적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반적인 임상시험 절차와 다른 예외적인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IRB들은 코로나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전담위원회를 지정하거나 임시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하는 등 타 연구보다 우선 심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관련 고려사항’, 2021. 01. 12.
- WHO, Ethical standards for research during public health emergencies: Distilling existing guidance to support COVID-19 R&D, 2020. 3.
- FDA, FDA Guidance on Conduct of Clinical Trials of Medical Products during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2020. 3.



## 스마트 위치와 앱을 연구 도구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질문 15** 3개월 동안 걷는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고 식생활 정보를 입력하는 앱과 연구 시작 전과 후의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IRB 심의를 받기 위한 연구계획서를 준비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 답변 15

연구 계획 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들 외에 앱이라는 새로운 ICT 기술이 연구에 접목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연구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보안 관련 부분이다.

3개월 동안 걷는 거리와 시간 측정을 위해 GPS 위치 정보를 이용할 경우, 연구 대상자의 방문 기록 등이 남게 되므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연구 종료 후 앱을 삭제하지 않으면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도 걷는 거리와 시간과 관련된 정보가 계속 수집될 수도 있다. 또한 연구 종료 후 앱과 서버에 저장된 걷기 운동 및 식생활 관련 raw data 들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며 관리가 안 될 수도 혹은 계속 이용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부분들은 연구 계획 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앱의 사용방법 등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생활 노출 부분이나 연구 종료 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부분 및 앱 삭제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3조, 제16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 데이터의 사용 절차는?

**질문 16** 병원에 소속된 연구자나 직원이 아니라도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구에 이용할 수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여 가명정보를 이용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과학적 연구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이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정신질환 및 처방약 정보나 감염병, 희귀질환, 낙태 관련 정보 등 정보 주체의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정보를 제외한 의무기록상의 정보, 건강보험공단 정보, 건강검진 자료 등이 대상이 되며,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기관 내 가명정보의 활용이나 기관 외부로 가명정보의 제공 여부, 방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데이터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관의 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한다.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연구에 대한 IRB 심의도 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고 결정되면 데이터 분양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의 활용 여부 결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결정이므로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0. 9.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제2조, 제28조의2~6.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6조, 제18조.



## 연구진이 본인의 연구에 연구 대상으로 참여 가능한가?

**질문 17** 로봇을 개발하는 연구팀의 연구원입니다. 저희 팀 연구에 연구원들이 연구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IRB 심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17

연구자 본인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보다 더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팀의 팀원일 경우, 연구책임자나 연구진 내에서 부당한 영향이나 강압에 의해 연구에 참여하게 될 우려가 일반인 연구대상자의 경우보다 더 높다. 연구 데이터의 진실성(integrity)에 있어서도 신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연구진의 참여로 인해 데이터의 왜곡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받기 쉽다. 연구대상자 보호와 관련된 원칙도 일반 연구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연구진이 연구대상자라고 하여 보호라는 측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연구자 본인이나 연구팀이 연구대상자로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self-experiment도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IRB 심의를 통해 책임연구원 및 연구팀원을 부당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중립적인 제3자가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진이 연구대상자로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진은 연구진이 대상으로 참여하여야만 하는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희귀질환자가 연구대상자여야 하는데 연구진이 희귀질환자이거나, 복잡하고 세밀한 기기 조작이 필요한 연구여서 일반인 연구대상자로부터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기 어렵거나, 위험 물질을 다루는 연구여서 일반인보다 연구진이 참여하는 것이 위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연구진 참여가 정당화된다. 단순히 연구대상자 모집이 어렵다거나 시간이 걸린다거나, 연구진이 참여하는 것이 손쉽고 편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연구진 참여가 정당화될 수 없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NCSU(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IRB FAQ, “When Researchers also Serve as a Participant in Their own Studies.”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3조.



## 박테리아의 전장유전체분석(WGS) 연구도 IRB 심의 대상인가?

**질문 18** 결핵균의 계통을 분류하기 위해 결핵 환자로부터 객담을 채취하여 결핵균의 전장유전체분석(WGS)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유전자가 아닌 박테리아의 유전자 분석인 연구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18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인체유래물이 아니므로 유전자 분석을 하더라도 인체유래물 연구가 아니다. 따라서 분리되어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분석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고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 사례는 분리되어 있는 결핵균에서 유전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객담을 채취한 후 객담에서 결핵균을 분리하여 균의 유전체 분석을 하는 연구이므로 IRB 심의가 필요하다. 이때 IRB가 심의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결핵균의 유전체 분석이 아니고 환자인 연구대상자로부터 객담을 채취하고 결핵균을 분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다. 위 사례의 경우, 연구자는 IRB 심의는 물론 기증자가 되는 결핵 환자로부터 동의도 획득하여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2조.



## 공동연구 기관은 모두 각 기관의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질문 19** C 회사(또는 병원)와 D 회사가 공동으로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C는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하여 IRB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D는 C에서 IRB 승인을 받은 인체유래물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D도 별도로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C에서 IRB를 받았기 때문에 IRB 심의는 필수는 아닌 것인가요?



### 답변 19

인간 대상 연구나 인체유래물 연구가 여러 명의 연구자(또는 여러 기관) 간 공동연구로 수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소속 기관 IRB에서 심의를 받으면 공동연구자들은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각 기관의 SOP 규정에 따라 많은 예외가 가능하므로 각 IRB에 문의가 필요하다.

위 사례의 경우, C 기관 연구자가 연구 책임자이고, D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내용과 D 기관 연구자의 역할까지 포함하여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D 기관 연구자는 별도의 IRB 심의 없이 C 기관에서 승인받은 인체유래물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C 기관에서 승인받은 연구 계획서에 D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C 기관에서 변경 심의를 통해 D 기관 연구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D 기관에서 별도 심의를 거치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또는 C 기관의 규정상 외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에 대한 심의는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역시 D 기관은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36조.





## 소속이 없는 개인 연구자는 IRB 심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질문 20** 저는 2019년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상태이기는 하나 아직 00교육청 소속 교사입니다. 제가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 목적의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IRB 승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IRB 승인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20

연구자의 소속 유무에 상관없이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할 경우 IRB 심의는 받아야 한다. 위 사례의 연구자의 경우 현직 교사로서 소속된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초·중·고등학교는 IRB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IRB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공용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공용위원회에 대한 설명 및 이용 관련 내용은 질문 12번을 참고하기 바람.).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동의서 없이 환자 사진을 논문에 게재하여 고발된 경우 후속 조치는?

**질문 21** 연구대상자 동의서(informed consent form) 없이 환자의 사진을 논문에 게재하여 고발된 경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답변 21

동의서 없이 논문 출판이 진행되었으면 신속히 환자 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진 및 신상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출판되었던 논문도 즉시 철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연구 과정에서 환자 동의서를 받았으나 학술지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법처리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연구 개시 전 연구 기획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여 반드시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학술지에서 출판 전/후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였을 때는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려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대상자 동의서에는 인간 대상 연구 계획에서 규정된 모든 검사 및 처치, 연구대상자가 관여하게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하고, 관련 규정 및 법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의서에 연구대상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46-157.



## 유전자 조작 연구윤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질문 22** 유전자 조작 연구윤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22

유전자 편집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자를 편집하는 실험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남용되는 경우도 잦아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연구윤리의 관점에서의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 윤리적인 생명과학의 진보를 위해서 확립되어야 하겠지만 학문의 스펙트럼이 생명과학 분야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향후 더 나은 인류 복지를 위해 유전자 편집 기술은 많은 과학자에게 중요시되고 필요한 연구이지만 그 연구의 결과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먼저 예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윤리 전문가들이 깊이 숙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유전자 편집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발견되고 시도되는 많은 과학적 접근(복제기술, 중간이식술, 인공모유, 인공고기 등)이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이에 대한 종합적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과 사회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하며 많은 경우 국가별로 이해상충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법규 확립에 대하여 미리 헤아려 보아야 하고 제도 마련과 더불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전문 연구 기관(사회 공공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 다른 실험실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대처는?

**질문 23** 본인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동물실험로 이동 중에 다른 실험실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물윤리를 위배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답변 23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과학적 절차가 아닌 실험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으나 포괄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다.

관련 법령으로 2021. 2. 12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sup>26)</sup>

동물학대 목격자(학생 또는 연구원)는 시간, 장소, 신원 등을 파악(동물실험 시설에는 출입 관리가 되는 것이 정상)하여 조직 내에서 먼저 보고를 해야 하며 실험목적이 아닌 심각한 수준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관찰/목격된다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정보마당' 페이지에서 지역별 동물보호 업무부서 연락처를 참고하여 신고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도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 동물보호법

####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3.20, 2020.2.11>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채역을 채취하거나 채역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보마당. 동물보호 업무 부서.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levant/relevantList.do?menuNo=5000000014> [23]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금지된 동물이 있는가?**

**질문 24**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금지된 동물들이 있는가요?

 **답변 24**

동물실험에 모든 동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동물들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다. 2021. 2. 12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유실·유기동물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는 이용할 수 없다.<sup>27)</sup>

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동물실험금지 적용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이나 해당 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동물보호 조례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외에도 국가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동물을 일컫는다.<sup>28)</sup>

관련 법	대통령령에 따른 실험 금지 대상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소방청 및 소방청 소속기관 모두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인명구조견 3.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각 소속기관 모두에서 수색·탐지 등을 수행하는 경찰견 4.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기관 모두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수행하는 군견 5.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및 각 소속기관 모두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수행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 근거 및 참고 자료

-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제24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 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

①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2.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되, 심의 결과 동물실험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면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 실험동물의 안락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질문 25** 실험동물의 안락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요?

### 답변 25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 등을 사용하여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며 인도적 종료시점을 잘 설정하여 안락사를 진행해야 한다. 안락사를 진행할 때는 시술자와 관찰자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 시술자의 신뢰도와 시술 안전성, 연구목적과의 일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실험동물의 안락사에 온몸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석시닐콜린이라는 약을 사용하거나, 마취 없이 심장을 멈추게 하는 염화칼륨을 사용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었는데 이처럼 실험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마취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 및 방법으로는 methoxyflurane, isoflurane, sevoflurane 등의 흡입 마취제나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가스 등의 흡입이 주로 사용된다. 비흡입 약물로는 barbiturate 유도체, chloral hydrate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이 있다면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실험자의 자격과 훈련 정도를 평가하여 실험 수행을 검토하는 방안도 권고된다.<sup>29)</sup>

사용 방법	마취제 종류	장점	단점
흡입	흡입 마취제 (methoxyflurane, isoflurane, sevoflurane) 등	소동물 안락사에 유용	마취가 유발되는 동안 동물이 흥분하고 불안해할 수 있음
	이산화탄소	안정적인 마취효과 동물 조직에 축적되지 않음	80% 이상의 고농도 사용은 동물 호흡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질소, 아르곤	안전함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고통을 야기할 수 있음
비흡입	Barbiturate 유도체	빠르게 작용하여 고통을 최소화	과잉투여 시 무호흡 유발
	마취 후 염화칼륨 사용	야외 사용이 용이하여 가축, 야생동물 안락사에 선호됨	주사 시 경련성 발작 유발 가능성이 있음

29)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



## 동물실험 초심자 대상 실습 시 실험동물 사용을 감축할 방안은?

**질문 26** 수의과대학 및 동물실험 연구기관에서 동물실험 초심자를 대상으로 실습을 할 때 실험동물 사용을 감축할 방안은 없는가요?



### 답변 26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농학 전공 등의 학부 실습수업 시 많은 실험동물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물실험 및 실습이 숙련되지 않은 초심자가 진행하는 경우 실험동물의 복지에 어긋나는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방법이 요구된다.

국외 다수 대학에서는 'Clinical Skills Center'를 운영하여 동물실험 교육 중 각종 모형을 활용한 임상 환경을 구현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한 대학에서 실습수업 시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험동물 모형을 제작하여 이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점차 증대된다면 동물실험이 더욱 개선된 윤리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보호과에서도 최근 개구리 해부 AR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실험동물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boardID06&menuNo=7000000006&seq=300018>





## 실험동물 남용 방지를 위한 동물실험 마릿수 산정 기준은?

**질문 27** 실험동물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마릿수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가요?



### 답변 27

동물실험의 일반적 원칙인 3R은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을 일컫는 용어이다.

동물실험 대체 방법으로는 조직배양기술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모의실험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가능하다면 비교적 하등한 동물(예를 들어, zebrafish; 인간 유전자와 약 90% 유사)을 실험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동물실험 감소는 통계적 분석법을 잘 활용하여 최소한의 동물 수로도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뤄낼 수 있다. 동물실험 개선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할 때 동물에게 가해지는 통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서 실험과정 동안 동물의 복지를 향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반영하여 정확한 실험동물 모델을 설립하고 합리적인 실험군의 크기를 설정하고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하며 통계 분석 역시 확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계획서상 동물사용 마릿수의 적정성 평가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학적 수치를 근거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계학적 근거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진행하려는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참고하거나 예비실험을 통하여 적정 사용 마릿수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산정된 동물사용 마릿수에 실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폐사 등으로 인한 탈락률을 고려한 마릿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 사전 실험을 통해 탈락률을 제시할 수 없는 실험의 경우에는 최소 동물사용 마릿수의 약 10%로 산정하면 된다.<sup>30)</sup>



## 야생동물 대상 연구에는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질문 28**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실험동물 외에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요?



### 답변 28

야생에서 서식하기 어려운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 동물을 인공 증식하고 복원하여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감염 질병을 관찰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고 있다.

야생동물의 감염 질병을 연구하는 경우, 야생동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전파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야생동물을 채집할 때 성급한 대처는 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위험할 수 있으므로 훈련된 전문 인력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 연구 및 야생동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긴다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30)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동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IACUC 표준운영기이드라인, 2011.

**\* 근거 및 참고 자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12.>

1.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7. 28.]



## 실험동물을 정식 공급기관에서 구입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질문 29** 실험동물을 정식 실험동물 공급기관에서 구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요?

### 답변 29

실험동물을 연구에 이용할 때 반드시 정식 실험동물 공급기관에서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 최근까 지도 한 대학에서 수년간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와 고양이 중 절반 정도의 마릿수를 식약처 실험동물 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구매하여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에 따라 정식 실험동물 공급처의 범주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sup>31)</sup> 정식 실험동물 공급처가 아닌 경우 사육되는 실험동물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는지 안전성은 확보가 되었는지 등 실험동물에게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복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정식 실험동물 공급처가 아닌 곳에서 실험동물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동물 검역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32)</sup> 이러면 정상적으로 검역을 거치지 않아 알 수 없는 병원체를 지닌 실험동물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미 실험동물 공급처로 지정된 공급처라 하더라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처로서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또는 영 업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 공급처에서 실험동물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취소 및 운영 정지 사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또는 실험동물 공급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동물실험 시설이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 실험동물 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 공급자가 아닌 경로로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 근거 및 참고 자료**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9.>

1. 다른 동물실험시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3.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한 자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전문개정 2017. 12. 19.]



**법령에 따른 동물실험 시행기관 정의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은?**

**질문 30** 동물보호법상 명시된 동물실험 시행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포함된 것인지와 동물 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30**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동물보호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법’ 등에 따른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에서는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정된다.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2) 동물보호 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sup>33)</sup>

관련 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
동물보호법 제27조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2. 동물보호 운동 및 관련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한 윤리위원회에는 상기 (1), (2)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 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 실험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RFID) 사용 시 연구윤리적 문제는?

**질문 31**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한 것처럼 실험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RFID)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동물실험 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요?



### 답변 31

동물실험 시 RFID 기술을 적용하는 이유는 동물의 식별이 용이하고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 및 해당 개체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현재에는 반려동물 등록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의 말 관리시스템, 수산자원연구소의 특수 어종관리 등에도 RFID가 적용되며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력과 안전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지만 이 기술은 아직 더 발전해야 할 여지가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한 RFID 기술은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피하에 삽입하는 것인데 이 기술이 처음 외국에서 도입될 당시 실험동물에게 종양이 발생하는 등 동물실험윤리에 어긋나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으며 이는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과학자들의 큰 우려가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2008년 반려동물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로 내장형 RFID 삽입 시술 시 전체 시술 사례 중 약 0.01%가 감염이나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로 보고되었다. 이는 상당히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불필요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반려동물과 실험동물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RFID 기술이 더욱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7 책임 있는 연구수행(RCR), 이해상충(COI),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정의, 유형 및 해결방안은?**

**질문 1** 최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COI)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상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연구자가 신경을 써야 하는 이해상충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이해상충은 쉽게 말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위나 업무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말한다.<sup>34)</sup> 2019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해상충이 연구부정행위 발생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연구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이해상충에 대한 규정 및 지침 확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자료에서 이해상충을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포함하는 법적 용어”라고 정의하고, 특히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나 연구기관의 관리가 필요한 이해상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sup>35)</sup>

**< 연구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이해상충 >**

<b>연구자</b>	금전적	연구자가 기업 등이 지원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가 기업에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연구를 수행
	비금전적	연구자가 직계가족 및 친인척 등의 사적 이익을 추구 (예: 교수 자녀, 지인 등 논문 공저자 등재 등)
<b>연구기관</b>		연구기관·병원 등이 지적 재산권이나 특정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기업으로부터 기부금·로열티 등을 받는 경우 기관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이 상충하는 경우

이해상충은 재정적(금전적), 인적, 학문적, 임상적, 역할 충돌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36)</sup>

〈 이해상충의 유형 및 해결방안 〉

유형	정의	해결방안	예
재정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소속기관 이외의 조직 또는 단체로부터 급여, 대가(사례금, 컨설팅비), 선물, 여행비, 주식(스톡옵션 포함),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	연구자가 연구의 객관성, 공정성, 정직성 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속 기관의 규칙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특정 연구자를 연구에서 배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로부터 이득을 볼 기업의 임원이거나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li> <li>- 연구자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부터 자료료 혹은 자문위원회 활동비 등 재정적 보상을 받는 경우.</li> <li>- 연구수행 중 기업으로부터 선물, 여행비, 기타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등</li> </ul>
인적 이해상충	연구의 기회 및 자원(연구비, 연구시간, 연구장비 등), 연구 업적 등의 분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예: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연구진에 포함시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구자를 연구에서 배제 또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결과와 분배(연구비 지급, 논문 저자자격 부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li> <li>- 연구자 소속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및 관리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경우.</li> <li>- 특정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에 포함시키는 경우.</li> <li>- 특정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연구진에서 배제하는 경우 등.</li> </ul>
학문적 이해상충	이해상충 연구자의 학문적 성향에 따라 연구를 편향적으로 수행하거나 편향적인 연구 결과를 작성, 발표할 경우. (예: 특정 학파의 이론에 부합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행위.)	특정 학파에 편향된 연구자는 논문 심사에서 배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의과학 연구는 급속한 상업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큼.</li> <li>-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대상자나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거나 연구 결과를 위변조하는 경우.</li> </ul>
임상적 이해상충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인간대상자의 안전과 연구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예: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인간대상자 실험결과를 위/변조함.)	인간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본인이 믿고 있는 이론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그 이론에 부합하도록 연구결과를 위변조하는 경우.</li> <li>-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신념이 연구의 수행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진화론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의 편향성, 낙태, 생명</li> </ul>



유형	정의	해결방안	예
			<p>등에 관한 신념이 즐기세포, 배아, 유전자 조작 등 관련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의 논문이나 연구계획 등을 심사하면서, 심사자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신념이나 이해를 근거로 판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아닌 개인의 주관에 따라 비이성적인 심사를 수행함</li> </ul>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연구자가 여러 역할들(교육, 연구,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경우. (예: 대학교수가 외부 연구나 외부 강연을 중시하여 소속 대학에서의 교육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연구자의 1차적 소속기관을 명확히 하고, 본연의 역할에 우선 충실하도록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나 연구원이 일차적 직무(연구와 교육) 이외에 많은 시간을 외부활동(기업, 사회단체 자문 등)에 씬으로 인해 소속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하는 경우.</li> <li>- 연구를 지원하는 기업의 사업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li> <li>- 교수가 행정실, 연구실에 소속된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개인적인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li> <li>-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나 자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연구원에게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 등.</li> </ul>

위에서 구분한 이해상충의 유형을 금전적 문제가 개입된 경우와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는가를 기준으로 돈 문제가 관련된 금전적 이해상충과 돈 문제가 관련되지 않은 비금전적 이해상충으로 크게 나누고 각각의 경우마다 실질적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도 있다. 또 실질적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는 잠재적 이해상충과 표면적 이해상충으로 세분하기도 한다. 각 경우의 예와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발간한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란다.<sup>37)</sup>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이 책자에 포함된 예 이외의 대표적인 예는 한국연구재단 웹진 2019년 4월호를 참고하기 바란다.<sup>38)</sup>

34) 엄창섭 등, 건전한 연구문화 확립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9. p. 94.

35)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2019. pp. 8-9.

36) 이효빈 등, 신진연구자를 위한 가이드북, 2019. pp. 30-33.

37) 황은성 등,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4. pp. 100-102.

38) 한국연구재단 웹진, 이해충돌, 2019년 4월호, 2019. R&D Desk 중 연구 나침반, 2019.

[https://webzine.nrf.re.kr/nwebzine/nrf\\_1904/sub2\\_3.php](https://webzine.nrf.re.kr/nwebzine/nrf_1904/sub2_3.php)



## 공동연구 기업에서 미입증 특허의 사용 요청 시 대학의 조치사항은?

**질문 2** 저는 A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B교수는 C사가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X를 C사로부터 제공받아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상시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물실험에서는 긍정적인 D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우리 대학에서는 이를 근거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러자 C사에서는 특허권 허락을 얻어 성분X를 제품으로 만들고 D효과를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허락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답변 2

이 사례에서 출원한 특허는 A대학과 C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아마 C사는 성분 X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나 인력을 제공하였을 수도 있고, C사의 연구 시설이나 연구 장비를 사용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C사가 X를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자 할 때 C사는 A대학과의 공동연구 결과 D효과가 입증된 것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광고에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A대학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는 아직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에게 사용할 때의 안정성이나 효능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허위 광고나 A대학의 신용을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는 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하여 C사에게 특허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X가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A대학의 이름을 거명하며 광고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참고문헌: 片倉啓雄 등, 利益相反, 研究公正に関するヒヤリ・ハット集, 国立研究開発法人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 2020. pp. 36-37의 내용을 변형한 것임.



## 장비를 지원받은 회사의 연구자를 공저자로 논문 투고 시 이해상충은?

**질문 3** 저는 A대학의 교수 B입니다. 저는 C사의 연구자 D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C사에서는 이 연구를 위하여 장비X를 우리 대학에 무상으로 설치하였고, 우리는 그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공동 연구의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여 같이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려고 하면서 투고 규정을 검토하다 연구자 D가 논문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C사에 고용된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와 연구원 D가 공저자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질문의 말미에 B교수는 이런 의문점을 연구자 D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공적인 연구비는 C사를 위하여 사용한 적이 없다. 또 A대학이 부담하고 있는 B교수의 인건비나 실험에 관련한 비용을 사용하여 C사의 제품을 구입한 적도 없다. C사가 부담한 것은 연구자 D의 인건비와 소모품의 일부일 뿐이다. 이번 공동연구에서 C사가 개발한 장비X를 A대학에 설치하여 사용하였지만, 연구자 D 이외의 사람은 이를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C사가 장비X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한다면 A대학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무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장비X를 제외하면 이해상충과 관련이 없으므로 논문에 우려하는 바를 밝히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대답하였다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 답변 3

공동연구의 경우 통상 대학과 기업이 서로 연구비, 시설이나 장비, 연구자 등을 제공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업 측에서 연구비나 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실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만일 B교수가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하여 연구자 D가 본인은 연구와 관련이 있는 C사에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동의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위에 첨부한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연구자 D는 공동연구와 공동연구에 의한 이해상충의 관리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구자 D는 C사가 A대학에 장비X를 무상으로 대여한 것을 공동연구의 일부로 보지 않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에 “연구자 C는 연구에 사용된 장비X를 개발한 C사에 고용되어 있음.”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이 연구에 사용된 장비X는 C사가 A대학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임.”이라는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산학협력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자 모두에게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과 밝혀야 할 정보 등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확실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의 결과물로 논문을 발표할 때는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이해상충과 관련한 기준을 잘 확인해서 기준에 적합하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 사례와 유사하게 이해상충 신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연구진실성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사례가 연구윤리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를 바란다.<sup>39)</sup>

**\* 근거 및 참고 자료**

참고문헌: 片倉啓雄 등, 利益相反, 研究公正に関するヒヤリ・ハット集,  
国立研究開発法人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 2020. pp. 38-39의 내용을 변형한 것임.

**※ (참고) 유사한 사례**

석사학생 A씨는 마약 진단 키트의 성능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였는데, A는 해당 실험을 B기업에 의뢰하여 B기업의 C연구원이 수행한 결과를 받아 논문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B회사는 해당 마약 진단 키트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경우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요?

- 문제점: 마약 진단 키트를 생산, 판매하는 B기업에게 진단 키트의 성능 평가를 요청한 자체에 의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제3자들로부터 데이터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해결책: A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해당 데이터의 생산 과정에서 C연구원이 B회사에 소속되었다는 점과 B회사가 마약 진단 키트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라는 점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9) 연구윤리정보포털, 공개되지 않은 이해상충 사례, 2020,



## 학회 학술상 선정위원이 심사 후 이해상충 문제 발견 시 조치사항은?

**질문 4** 저는 ○○학회의 학술위원회 위원인 A교수로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상 선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규정에 따르면 학술상 선정 위원은 지난 5년 동안 후보자가 소속된 연구실과 공동연구를 한 경우 자진 신고를 하고 후보자의 심사에서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시작할 때 저는 후보자 B와 공동연구를 한 기억이 없어서 후보자 B에 대한 1차 심사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후보자 B가 소속된 연구실과 공저로 출간한 논문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 논문은 후보자 B의 연구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서 심사 전에 그 사실을 미처 기억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4

학술상 심사뿐 아니라 논문의 연구 계획서나 연구비 심사, 승진과 관련한 심사, 그리고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경우에도 참여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만일 본인이 그러한 조건을 인지하고 있다면 회피하여야 하고, 운용하는 측에서는 심사위원들을 위촉하기 전에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는 심사자가 심사를 한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자는 산업체와의 공동연구에서 발생하기 쉬운 금전적인 이해상충뿐만 아니라 연구비나 논문의 심사, 수상이나 공모의 심사, 조사활동 등과 관련하여 활동할 때에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사나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공정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큰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심사에 참여한 A교수가 본인에게 회피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즉시 학회의 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회의 해당 위원회는 A교수의 평가 결과를 집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이미 1차 심사의 결과가 공표된 후 A교수의 평가 결과를 제외하였을 때 선정 결과를 수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참고문헌: 片倉啓雄 등, 利益相反, 研究公正に関するヒヤリ・ハット集, 国立研究開発法人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 2020. pp. 40-41의 내용을 참고하여 변형한 것임.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연구부정 조사 지연 시 대학의 대처방안은?

**질문 5** 저는 우리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행정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의 논문이 표절로 제보되었습니다. 위원장을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여야 하는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표절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는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데,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5

일반적으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때 이를 공정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처럼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합리적이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표절) 의혹을 받는 피조사자일 경우,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조사를 위한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례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장은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이므로 해당 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제척되는 것이 당연하다. 해당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대체로 연구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고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뿐 아니라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조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은 기관장 등이 조사대상자인 경우 등, 자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문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sup>40)</sup> 가능한 기관 자체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2000, pp. 52-53의 내용을 참고하여 변형한 것임.

40)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는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검증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의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시 연구윤리 문제는?

**질문 6** 저는 A대학교 교수이고, 제 아들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제가 근무하는 연구실에서 다른 교수의 지도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아들이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선정한 연구 주제는 제가 그동안 해 온 연구 주제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아들의 연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의 지도교수는 이런 사정을 알고 저보고 직접 아들의 연구와 논문지도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합니다. 아들의 연구를 제가 지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연구가 종료되었을 때 가능하다면 아들의 학위논문 심사에도 참여하고 싶고,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때 그 논문에 저도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답변 6

만일 가족이 동일한 전공을 하는 전공자 혹은 연구자라고 한다면 교수가 그 가족이라고 논문의 지도를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결정이나 기여도의 판단 등이 가족이라는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은 존재한다.

사회의 다양한 업종에서 가족들이 서로 도와가며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의 일관성의 유지나 실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경영을 맡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가족이라고 동일 분야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도 없고, 동일 분야에서 가족들이 연구하여 좋은 결과를 낸 예도 있어<sup>41)</sup>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일반적이라 할 수는 없고, 반대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 남들보다 불공정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가족의 연구나 논문을 직접 지도하는 지도교수가 되거나 공동 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직접 지도하거나 공동 연구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연구자와의 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논문의 지도, 연구의 수행, 저자 결정 등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하여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구기관의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연구와 관련한 모든 단계에서 가족이 독립된 연구자로 그 연구를 수행한 것이고, 기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잘 기록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아무리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해도 가족의 논문에 대한 학위논문의 심사는 가능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일 것이다.

41) 동일한 분야에서 연구를 한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 집안은 마리 퀴리 일가임. 마리 퀴리(Marie Curie, 1867~1934)는 1903년 남편인 피에르 퀴리(Pierre Curie, 1859~1906),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주제를 처음 제시한 앙리 베크렐(Antoine Henri Becquerel, 1852~1908)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함. 당시 마리 퀴리는 남편 덕에 연구 성과를 내었다고 비난을 받았다고 함. 마리 퀴리는 남편 사후인 1911년 노벨화학상도 수상함. 마리 퀴리의 딸인 이렌 졸리오 퀴리(Irène Joliot-Curie, 1897~1956)와 그녀의 남편 프레데릭 졸리오(Frédéric Joliot-Curie, 1900~1958)는 1935년 방사성 물질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함. 이들 네 명이 연구한 분야가 모두 방사능과 관련된 분야였음.



##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자녀를 과제 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지?

**질문 7** 민간위탁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소속 연구자입니다. 제 자녀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외국에서 박사후 연수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곧 귀국을 할 텐데, 제 자녀의 전공은 제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 자녀가 귀국하면 제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답변 7

질문 6과 유사한 질문인데, 연구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연구과제 참여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법령은 없다. 과학사를 살펴보면 부부, 부모-자녀 관계의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단행본을 출판하는 사례가 있으며, 가족이 함께 연구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례도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 가족이 실제로 능력을 갖춘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자기 가족을 연구과제에 참여시켜 보수를 받게 하거나, 연구업적을 쌓게 해주고 그 업적을 활용하여 상급학교 진학, 유학, 취업 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함을 유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과제를 위탁한 쪽과 관련이 깊게 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참여시켰을 때 사회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따른 참여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자녀지만 만일 연구 과제를 위탁하는 쪽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학문적 진실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연구 활동에서 인간관계의 이익을 더 앞세우는 행위는 '이해상충'(COI) 가운데 '인적 이해상충'의 유형에 해당한다. 인적 이해상충에는 연구자 직계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친인척, 선후배 등 지인의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인적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의혹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연구자 소속기관이 자체 규정으로서 가족 및 친인척의 연구과제 참여를 금지 또는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2) 만약 소속기관이 가족 및 친인척의 연구과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면 연구 계획서 제출 단계, 연구수행 단계, 연구결과 보고 단계 등에서 어떤 서류를 기록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것.
  - 특정 과제에 특정 연구원을 참여시킬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한 객관적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그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정한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특수 관계에 있는 과제 책임자의 자녀, 본인의 자녀 등이나 가족 등이 연구에 참여할 때 연구자는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연구수행기관은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제대로 연구원의 역할을 하는지를 관리하는 제도를 갖추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연구과제의 성격에 비추어, 가족 및 친인척이 연구수행 참여에 적절한 자격 및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
  - 예를 들어, 천체물리학 연구에 어류 전공자가 참여하거나, 국가 중요 연구과제에 대학생 또는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다 부적절할 것이다.



- 4) 연구에 참여한 가족 및 친·인척이 연구수행 중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기록하여 연구결과 발표 시 저자 자격이 있는지 입증할 수 있도록 할 것.
  - 최근 가족 및 친·인척, 특히 연구자의 자녀 참여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부당한 저자 표시 문제’, 즉 “연구에 별로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 자녀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 5) 대학생 또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연구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 6) 연구자 자신이 직접 주도 또는 관리하는 연구과제에 가족 및 친·인척이 함께 참여하는 일은 자칫 특혜 시비 등 인적 이해상충 의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를 원천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연구를 마친 후 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할 때도, 동료 연구자들의 오해나 주변 사람들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더 철저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기업으로 양도할 수 있는가?

**질문 8** 저는 A대학 교수인 B입니다. 최근, 평소에는 저와 전혀 교류가 없었고, 공동연구도 한 적이 없는 C사에서 제가 연구 책임자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화할 계획이 있으니 해당 연구 결과를 양도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연구는 제가 연구 책임자로 수행하였으므로 C사에 연구 결과를 양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은지요?

### 답변 8

교수나 연구원이 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연구의 결과물은 대학 등 연구기관의 소유이기 때문에 B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연구 결과물(지적재산)은 A대학의 소유이다. 따라서 B교수는 A대학의 허락 없이 그 연구 결과를 임의로 사용(본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제품화하는 것 등)하거나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본 사례에서 B교수는 A대학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직무발명 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B교수는 A대학의 지적재산 담당자로 하여금 C사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의 사용 여부, 공유 혹은 양도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참고) 유사한 사례

1. 연구자-기업 간 신뢰 확보를 통해 기업의 기술 수요를 높이고 기초 원천연구 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과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지도교수와 학생 모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논문 작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 문제점: 본인들이 생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이미 수행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은 타인(기업)의 연구 자료를 표절하는 것이며,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 해결책: 어떠한 경우라도 연구자들은 본인들의 기여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사례의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들의 뚜렷한 학술적 또는 기술적 기여가 더해지지 않는 한 논문작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학술지 논문 투고 시 이해상충 관계를 명시해야 하는가?

**질문 9** 투고 논문에 대한 이해상충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지와 이해상충 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 출판된 논문이 철회될 수 있는지요?



### 답변 9

영국에 본부를 둔 출판윤리협의회(COPE)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이해상충은 그 자체로 데이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가 없다면 논문, 특히 원본 연구 논문을 철회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논문이 출판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는 해당 연구 전반에 걸쳐 모든 저자 및 관련 기관의 입장을 모두 대변해야 하므로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논문이 철회되거나 출판 절차 시 심사과정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여러 학술지에서는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셀(Cell) 출판사에서는 연구의 결과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이해상충 문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저자는 커버레터(cover letter)에서 이해상충 문제를 명시해야 하며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서도 밝혀야 한다. 승인단계에서는 모든 저자가 또는 교신저자가 대표하여 잠재적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양식에 서약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고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sup>42)</sup>, 미국의 공중보건원과 국립과학재단의 규정에 따르면, 10,000불을 초과하는 대가나 후원금이 연관되는 경우나 5%가 넘는 회사의 소유권 또는 연구기금이 관련될 때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모든 투고 또는 검토 중인 원고 모두에 적용되며<sup>43)</sup> 어떤 상황에서도 투명하게 이해상충 문제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정보포털. 논문 투고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 Cell

42)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현금, 예금 등과 함께 주식, 출자자본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이해상충공개서(별지 제10호)에 본인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1,000만원 상당 혹은 5%가 넘는 지분이익이나 이권, 지원기관의 지분이익이나 스톡옵션, 공식/비공식적인 직함, 연구대상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는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43) 연구윤리정보포털. 논문 투고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 Cell.



##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연구를 수행한 경우 법적 책임은?

**질문 10** A교수는 'B회사'와 A가 재직 중인 C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X에 관한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입니다. A교수는 B로부터 유리한 방향의 실험과 연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년 동안 매월 300만 원씩 자문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A교수는 어떠한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 답변 10

비록 A교수는 민간 기업인 B의 의뢰를 받은 것이지만 연구에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고, 대학교수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이라는 지위에서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A의 연구수행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B회사가 A교수에게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B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의 실험과 연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으로 청탁하였고, A교수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 수 있고, 나아가 A교수가 B회사에게 유리한 의견을 기재한 행위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자료 분석 등에 기초한 합리적 결론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A교수가 B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자문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배임수뢰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 8 연구부정행위 검증



### 교원의 논문 및 업적 철회 요청 시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해야 하는가?

**질문 1** 본교 소속 교원이 어떤 해외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을 스스로 철회하고 해당 논문을 자신의 연구 업적물에서 제외해 달라고 학교 본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검증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자신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오류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타인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연구자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았다면, 연구부정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철회된 논문에 대해 해당 교원이 소속된 학과 또는 단과대학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타인에 의해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문을 철회하였다는 정황 등)를 근거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한다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설사 제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제18조 2항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라는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관련 학술지 편집인에게 해당 논문이 철회된 사유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8) 제18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04-105.



## 학술지원사업 논문의 연구부정도 내규의 검증시효가 적용되는가?

**질문 2** 본교 소속 교원이 2010년 10월과 2016년 1월에 작성된 논문에 대해 동일한 언어로 작성된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모두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물입니다. 본교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논문 모두 검증을 하여야 하는가요? 검증을 해야 한다면 정부의 어떤 규정에 의거하여 판정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2

현행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시효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는 아직도 검증 시효를 두고 있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을 제외한 학위논문, 교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 등에는 검증 시효를 두고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학술지원사업이나 교육부를 제외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검증 시효와는 무관하게 과거의 모든 연구가 검증 대상이 된다. 질문한 사항은 학술지원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상의 검증 시효에 관계없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검증을 실시하면 된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은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의 논문은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2010년에는 중복게재는 부정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대학의 자체 규정이 중복게재가 연구부정행위로 포함되어 있다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2016년 논문의 경우는 당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2015년 11월부터 “부당한 중복게재”를 부정행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기 없이 중복게재를 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정할 수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8) 제12조, 13조.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 135.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83-84.

**제보자가 제보를 취소한 경우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종료해야 하는가?**

**질문 3** 본교 교원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본조사위원회를 진행하는 도중 제보자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취소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종료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3**

현행 규정상 이에 관한 뚜렷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민사소송의 소취하 경우와 달리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취소하였다고 해서 조사의 진행을 종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조사위원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싶겠으나, 이는 오히려 피조사자와 대학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제보된 논문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하여 해당 연구물이 학술지에서 게재 철회가 될 수 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이 학술지에 그대로 게재된 상황이 유지되어 다른 연구자들이 해당 논문의 연구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확한 결과와 해석을 저술의 일부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어 궁극적으로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지속하여 최종적인 판정을 해야 한다. 만약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연구 성과물을 승진·재임용 등에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소속 기관 자체의 인사상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물의 경우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보고하여 연구비 회수 혹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제보된 논문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소속 기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최종적으로 판정하여 피조사자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의 목적은 해당 연구의 진실성을 가리는 것이므로 제보의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연구의 진실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학문의 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26조, 제29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16-126.



## 소송을 제기하거나 학술지에서 검증하는 경우 대학의 조치사항은?

**질문 4** 조사위원회가 진행되는 도중 제보자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시작된 경우 혹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대학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멈추고 해당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

### 답변 4

현행 규정상 이에 관한 뚜렷한 기준은 없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하여서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계속 진행하지만 저작권 혹은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진행을 중단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재판이 완결되거나 학술지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이 완료되면 즉시 조사위원회를 재개하여 재판 결과 또는 학술지의 판단을 참고하여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안을 두고 관련된 검증 주체가 별도로 검증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단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검증 기관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믿고 다시 할 필요 없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회의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대학의 자체 조사나 검토 없이 해당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만의 하나 학회 측의 판단에서 잘못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다. 학회의 조사 결과는 표절 혹은 중복게재에 대한 출판 자료에 기반한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은 비교적 정확할 수 있지만,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 등에 대한 검증에는 정확한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회의 조사 결과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만을 판단할 뿐, 연구자의 고의성, 부정행위 반복성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속 기관은 자체 조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또 피 조사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후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의 조사 결과는 해당 문제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으로서 판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 133.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 134.





##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연구 분야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질문 5** 교육부 훈령과 본교 규정상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연구 분야’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답변 5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가 5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인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공자 또는 과거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충분하거나 현재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즉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 4단계로 나누고 있다. 전기분석화학 분야를 예를 들면 대분류는 자연과학, 중분류는 화학, 소분류는 분석화학, 세분류는 전기분석화학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구논문을 검증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세분류의 전공자를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풀(pool)의 제한 또는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사양함으로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범위를 넓혀 소분류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분류에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사유를 본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술하는 것도 필요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 145.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2016.



## 최종 판정 후 조사위원 명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의 조치사항은?

**질문 6** 본조사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이메일로 알려주고 기피 신청의 기회를 주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정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조사위원 중 일부가 피조사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이며 공동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6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 1항에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조사위원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②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③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리고, 제보자가 위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한다.

그런데 해당 사안의 경우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명단을 알려주고 기피 신청의 기회를 주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가 최종 판정 결과가 통보된 이후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 조사위원 중 일부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조사를 요청한 경우이다. 조사의 책임이 있는 연구기관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 제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여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면 판정 이후 조사위원 중 일부가 피조사자와 막연히 친하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 재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조사위원 중 일부가 피조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된 경우이므로 교육부 훈령 제22조의 조사위원 제척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 따라서 조사 책임기관의 조사과정의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의 신청을 인용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조사의 경우는 기존의 조사위원 모두를 교체하여 다시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하여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판정을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이 합류한 위원에게 그동안 조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설명해 주어야 한다.

검증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척사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공동 연구 수행 여부는 해당 대학이 확인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반드시 조사위원이 피조사자 및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명 받아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22조.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 133.



## 신규 채용 심사 시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검증 주체는?

**질문 7** 대학의 전임교원 신규 채용 심사를 진행하는데 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에서 표절과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요?

### 답변 7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규 채용 신청자가 논문을 발표한 당시의 대학이 검증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규 채용 지원자의 연구 수행 당시 소속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대학에서는 신규 임용을 위해 지원자에게 지원자가 제출하는 모든 연구 업적에 대해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없음을 서약하게 하고, 만일 임용 심사 과정이나 임용 후이라도 제출한 연구 업적물이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각 논문 검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수 공채를 진행 중에 있는 해당 대학은 빠른 일처리를 위하여 지원자의 연구 성과물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통상적인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달리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성과를 인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채용 대학은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가 아닌 만큼 굳이 교육부 훈령이나 대학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외부인이 포함된 본조사, 판정, 통보, 사후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이 신규 채용자가 제출한 연구 성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소속 기관에서 정식 검증 절차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판정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뢰 받은 대학은 가능한 검증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신임 교원 채용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과 중복게재 사건은 위·변조 혹은 부당한 저자표시 사건에 비해 검증이 비교적 수월하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검증 대학은 예비조사 단계에서 논문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조사자의 충분한 소명에 기초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16조.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 133.



## 기관 간 연구부정행위 판정이 상이한 경우 조치사항은?

**질문 8** A대학의 현직 B교수 논문에서 위조와 변조 등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이 현직 B교수의 전임교원 신규 채용 심사 업적평가 논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A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통해 B교수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B교수의 전임교원 임용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일 논문에 대해서 B교수가 해당 연구를 수행할 당시에 소속한 C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B교수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16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A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임교원 임용 취소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A대학에서는 전임교원 임용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하고 B교수를 복직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 논문에 대한 A대학과 C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최종 검증 결과가 상반되게 도출될 수가 있는데, 각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검증한 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 답변 8

이 건과 관련하여 B교수가 A대학에서 비록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기 논문이 A대학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수행한 논문이 아니면 통상 A대학이 이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지는 않는다. 물론 일부 대학은 이런 경우에도 내규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는 경우도 있다.

실령 B교수가 A대학에서 현직에 종사하면서 발표한 또 다른 논문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함께 검증하였다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A대학에서는 행정 절차상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C대학에 의뢰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16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 제25조(이의신청)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①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제28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 학술지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통보 시 대학은 다시 검증해야 하는가?

**질문 9** 본교 소속 교원이 모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철회되었다는 통보를 학회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다시 검증하여야 하는가요? 만약 해당 논문을 다시 검증하여야 한다면 검증 과정에서 해당 학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9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들은 자신들의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연구부정행위로 결론이 나는 경우 해당 논문을 철회시키고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기도 한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대학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8) 제18조 2항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라는 근거 조항에 입각하여 해당 교원의 철회된 논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학회의 조사 결과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만을 판단할 뿐, 연구자의 고의성, 부정행위 반복성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1항에서 정한 것처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속 기관은 자체 조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판정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의 조사 결과는 해당 문제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으로서 판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학회의 논문 철회 사유를 학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확보하여 참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의 편집자 혹은 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요청하여 참조할 수도 있다. 또 피조사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후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대학의 조사위원회가 학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원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고의 여부,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심각성 정도,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승진, 재임용, 연구비 획득 등의 이익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추후 해당 교원에 대한 인사상의 징계 조치 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해당 논문이 정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물이라면 해당 대학은 연구비 지원기관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부 연구지원 사업의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16조, 제18조.



##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후속조치는?

**질문 10** 연구윤리 위반 제보가 접수되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제보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의 신청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타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통하여 예비조사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제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정을 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10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25조에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한 후,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제보자의 이의신청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의신청 내용 중에 예비조사 단계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나 증거가 있을 때는 이의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인용(수용)하여야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본 사안의 경우처럼 이의 제기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타당하여 인용이 된 경우는 가능하면 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제보된 사안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는 본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이다. 다만 예비조사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본 사안의 경우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비조사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인용하여 예비조사에 대한 재조사보다는 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연구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및 소명을 바탕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19조, 제20조, 제25조.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76-77.

##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주체는?

**질문 11** 조사 결과를 판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제보자 및 피조사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주체는 본조사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인가요?

### 답변 11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25조(이의신청)에 의하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질문에서처럼 이의신청을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상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대학마다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특별히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사안을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할 대학의 공식 기구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또는 기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본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재차 청취하거나(이때 필요하면 이의제기 사안을 다룰 전문가를 보강할 수 있음),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이때, 대학의 규정 유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조사를 거쳐 판정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것인 만큼, 이의제기 사유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인적 구성과 절차가 요청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내용이 조사과정 중에 이미 검토하여 판단한 사안이라 판정의 결과에 변화가 없다면 이의신청은 기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의신청에서 조사의 판정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할 수 있다. 이때 재조사는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의 조사위원회가 다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25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13-114.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76-79.





## 연구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는 불이익을 받는가?

**질문 12**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요?



### 답변 12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때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제보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고 또 사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쁜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피조사자는 물론 조사위원이나 해당 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많은 국가나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악의적인 제보를 방지하고 악의적인 제보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당한 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관련 조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신뢰 받는 연구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받는 연구문화를 확립하여 건전한 제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연구자 모두와 해당 기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선뜻 제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자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폐쇄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14조에 제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보자가 해당 제보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관실무자의 제보자 신원의 비밀 유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사상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를 한 경우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15조에는 피조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연구부정행위는 조사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만큼 제보자가 사전에 언론 등에 해당 혐의를 노출하여 피조사자의 명예 등을 실추하였을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소송 제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제보자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근거 및 참고 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14조, 제17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0.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10-111.



#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를 위한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1.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2. 연구부정행위 검증 표준 절차



### Ⅲ.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를 위한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 1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 가. 검증 시 적용 규정

- 우리 정부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은 「학술진흥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63호, 2016.5.29., 일부개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과 「국가과학기술혁신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이 위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적용 대상도 다름.
-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위임한 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01.1.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20201.1.4, 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은 교육부 훈령을 기준으로 기술함.
-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기와 해당 연구가 교육부 등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졌는지 혹은 연구기관의 자체 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짐.
- 학문 연구의 특성상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기는 연구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논문으로 게재하거나,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날, 또는 관련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 등이 기준일이 될 수 있음.
- 만일 해당 연구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여러 차례 논문 등으로 발표한 경우, 가장 최근의 발표일이 기준일이 될 수 있음.
-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 판단(판단 원칙 및 기준 등)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점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방법은 제보 발생 시점의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함.
- 정부 연구비가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적용해야 함. 2007년 2월 8일 이후는 과학기술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2008년 7월 28일부터 2014년 3월 23일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2014년 3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적용하면 되며,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각 훈령별 개정 및 시행일에 따라야 함.
- 학위논문 발표, 연구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등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구윤리 규정(예: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함.

-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점에 따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할 주요 내용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로서 2007년 지침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 조사 방해 행위, 과학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 6가지였으나 2015년에 개정된 지침에는 부당한 중복게재가 추가되어 현재는 7가지임.
-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2007년 지침에는 5년이었으나 이후 2011년 지침 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삭제되어 현재는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모두 검증 대상이 됨.
- 2007년 2월 정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르면 됨.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부칙 〈제263호, 2018. 7. 17.〉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 나. 검증 책임 주체<sup>44)</sup>

#### 1) 연구기관 자체 검증 원칙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연구기관의 자체 검증 원칙에 따라 검증 대상이 된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1차적으로 검증 주체가 됨.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해당 연구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계약에 의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 등)에 검증 책임이 있음. (예를 들어, A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한 정부 연구과제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피조사자가 B 기관 소속 공동 연구원이라면 피조사자 소속 기관인 B 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기관인 A 기관에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검증 책임이 있는 연구기관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검증하여야 함.

44)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32-33.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 2)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기간 중에 소속 기관을 옮겼을 경우

- 문제가 되는 연구 행위가 정확히 어디에서 수행되었는지를 밝히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부분의 연구부정행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보고서, 간행물, 단행본 등의 연구결과물이므로 이를 발표한 시점의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 검증 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임.

#### 3)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공동 연구 논문의 검증

-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공동 연구에서 연구 수행 비중이 기관마다 다른 경우,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 등 주 저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에서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저자 소속 기관은 교신저자 등 주 저자 소속 기관의 검증 과정에 필요시 협조하여야 함.
- 만약 공동 교신저자로서 둘 이상의 기관이 참여한 연구에서 연구부정행위 의심이 발생한 경우, 각 기관이 소속 연구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필요한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협의를 거쳐 공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검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참여기관 모두가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함.

#### 4) 학위 논문 등의 검증 주체

- 특정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자가 이전의 소속 기관에서 수행한 석·박사 학위 논문 혹은 교내 학술연구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없는 연구의 수행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가 수행된 시점의 소속 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음.

## 다. 검증 시효

### 1) 검증 시효 적용

- '검증 시효'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진실성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5년이었으나 2011년 개정된 지침에서는 그 시효가 삭제되었음.

- 검증 시효 5년 조항이 삭제되어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가 예상되지만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다만 예전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크게 무리가 없음.
- 원칙상 정부 지원에 의한 연구에서는 시효 없이 과거 모든 연구가 검증 대상이 되지만, 학위 논문 등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여전히 연구기관이 검증 시효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만 5년 또는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기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는 검증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음.

## 2) 검증 시효와 징계 시효의 관계

- ‘검증 시효’와 ‘징계 시효’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징계 시효’란 교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징계 의결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인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이었으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인 경우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

### 〈 교육공무원법 〉

제52조(징계사유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시행일 : 2021. 6. 23.] 제52조

### 〈 사립학교법 〉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 라. 검증 원칙

-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앞서 언급한 검증 책임주체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음.
- 피조사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 조사 권한을 가진 연구기관의 조사위원회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연구의 특성상 조사위원회가 피조사자의 협조 없이 수행 연구의 상세한 정황을 알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검증 과정에서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증거 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권고됨.<sup>45)</sup>
- ‘증거 우위의 원칙’은 영미 사법 체계의 용어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형사 사건에 비해, 민사 사건에서는 양쪽의 상반되는 주장 중 조금이라도 더 신빙성을 가지는 증거를 채택토록 하는 원칙임.
- 이 원칙은 증거에 대한 고도의 확신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조사기관의 입증 책임이 훨씬 완화된 것임.
- ‘증거 우위의 원칙’하에서 피조사자가 조사기관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는 의혹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음.
- 이와 유사하게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349조)”,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350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여야 함.
-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함.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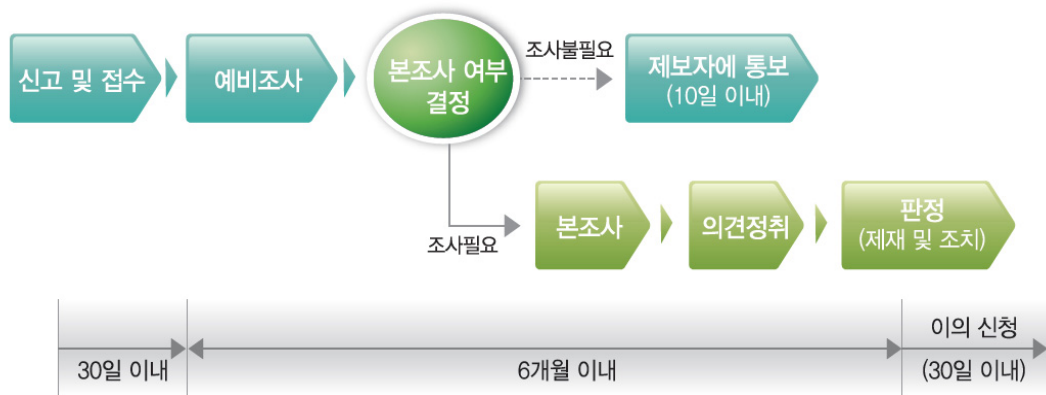
-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마. 연구부정행위 검증 기간

- 통상적으로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이의신청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조사의 완결, 조사 결과의 통보는 모두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45)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 167.

- 일반적으로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므로(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9조(예비조사)), 전체적인 검증 기간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며, 이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은 자율적으로 조사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다양한 이슈에 의해 6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사실 이관 기관, 제보자, 피조사자 등에 연장 사유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음.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간 (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07, p. 70.)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바. 연구부정행위 검증 기구<sup>46)</sup>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예비조사의 경우 별도의 구성 원칙을 정하지 않고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사위원 전체에서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학위논문 발표, 자체 예산 수행 연구 등 연구기관의 자체 연구 활동에서 발생한 연구윤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기구 및 본조사위원회 등은 해당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음
- 조사위원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와 민법상의 친인척 관계, 사제 관계, 공동 연구자 관계 등의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함.
- 조사위원의 이해관계 상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의 발언과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함.
-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공정한 조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사 과정에서 연구기관의 장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조사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조사, 관계인에 대한 출석과 의견 진술의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지니며 필요한 경우, 실험실에 대한 출입 통제와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 제보자의 권리 보호

### 1) 제보자의 정의

-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함.
- 제보자는 반드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다른 당사자나 목격자로부터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듣거나, 관련 증거를 넘겨받아 대신 제보할 수 있음. (자기 관련성 또는 직접성의 불필요)
- 그러나 제보가 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로부터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음.

### 2) 제보자의 보호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는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변론의 기회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함.
- 제보자의 보호는 일반적으로 ① 제보자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 ②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방지, ③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제보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피해 보상의 3단계로 구성되

46)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 39.

는데,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한계가 있음.

- 한편, 학회나 학술지 발행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한 경우,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인 제보자가 불명확할 경우, 위원회 등 개인이 아닌 단체가 제보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의 통보, 의견 진술 등은 '개인 제보자'를 가정한 규정들을 유연하게 적용하여도 무방함.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아.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sup>47)</sup>

### 1) 피조사자의 정의

-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기관의 인지로 조사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 자 또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함.
-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를 직접 지지하거나 이에 적극적·소극적으로 가담한 자, 해당 연구에 참여자 또는 논문저자로 등록된 자,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한 자, 연구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 등은 피조사자에 포함됨.

47)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45-46.

- 반면, 같은 연구실에 있어도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 됨.

## 2) 피조사자 보호 수단

- 피조사자는 조사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명예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조사기관에 있음.
- 조사 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동등'의 뜻은 동일한 횟수와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진술이 제시되었을 경우 어느 한쪽의 말만 참고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쪽에게도 이 내용을 알리고 충분한 대응 진술과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임.
- 또한 피조사자의 변론이 필요한 경우 미리 조사 일정을 고지하여 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 함.

## 2 연구부정행위 검증 표준 절차

### 가. 제보의 접수<sup>48)</sup>

#### 1) 제보 접수 및 처리

- 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 접수를 위한 공식적인 창구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실무 담당자는 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제보를 접수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해야 하나,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제보는 주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교육부 등 정부 기관이나 연구비 지원 기관, 언론 기관인 경우도 있음.

※ 교육부나 전문기관(연구비 지원 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검증 책임이 있는 연구기관에 제보 내용을 이관한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 교육부나 전문기관 등을 제보자로 잘못 간주하여 실제 제보자에게 조사 절차 및 일정, 조사 결과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2) 실무자 유의사항

-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를 위해 연구기관의 홈페이지 혹은 연구 관련 부서(예, 연구처, 산학협력단 등) 홈페이지에 접수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함.
- 만일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기 위한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연구부정행위 처리와 가장 근접한 부서(일반적으로 연구처 혹은 산학협력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담당 내용 등 업무 조율이 필요함.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무자는 제보가 접수되었을 때 제보가 이러한 익명제보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제보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제보자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보하도록 안내해야 함.
- 접수자가 제보를 받을 때 제보자, 제보 일시, 제보 내용, 제보 방법,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함.
- 제보자에게 추후의 연락 방법에 대해 미리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고, 제보자가 추후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48)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49-50.

- 접수자는 제보 접수 후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부서에서 이후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관련 자료를 해당 부서로 이첩해야 함.
- 제보가 개인이 아닌 정부나 언론 기관일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관 자체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나. 예비조사<sup>49)</sup>

### 1) 예비조사의 목적 및 내용

-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함.
- 예비조사가 모든 경우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아니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충분한 경우라면 생략하고 곧바로 본조사에 착수하여도 무방함.
- 통상적인 예비조사는 'inquiry', 즉 본조사 수행에 앞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의미와 'screening', 즉 본격적인 조사가 불필요한 단순 사례를 걸러내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
- 예비조사의 목적은 많은 행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본조사의 절차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실 관계의 확인이 명료하고 피조사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할 경우, 반대로 제보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의혹의 정도가 조사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사 없이 예비조사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임.

49)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52-60.

- 예비조사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사례로는 ㉞ 예비조사의 과정에서 사실상 본조사에 해당하는 조사를 대부분 수행하고 막상 본조사 단계에서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㉟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구별 없이 처음부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거나, ㊱ 예비조사의 진행 과정에서 조사위원을 확충하여 본조사로 확대 수행하거나, ㊲ 아예 자체 규정에서 예비조사의 절차를 두지 않는 등의 예를 들 수 있음.
- 따라서 예비조사는 최소한으로 수행하고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닌 경우는 모두 본조사를 통해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 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2) 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9조(예비조사)에 따르면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를 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외부인의 참여가 필수적인 본조사와는 달리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외부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예비조사를 상세히 진행하고 정작 본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3) 본조사 실시 여부의 판단

-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음.
- 연구진실성 검증은 피조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예비조사 단계로 끝나기보다는 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조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때에 아래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① 통상 기초 자료를 토대로 제보가 연구부정행위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문제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단순 실수임이 명확할 경우 본조사는 불필요함.
  - ②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음.
  - ③ 기초 자료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비조사의 범위를 넘어 고도의 전문가 평가 및 자문이 요청되는 사안일 경우,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해야 함.
- 본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관련 회의 자료와 함께 그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노트의 확인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위조 및 변조 관련 연구진실성 검증은 피조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예비조사 단계로 끝내기보다는 본조사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음.
- 표절 및 부당한 중복게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문 영역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또는 표절이나 부당한 중복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쉽게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윤리 전문가나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따라서 표절 및 부당한 중복게재 관련 연구진실성 검증은 피조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대체로 예비조사 단계로 끝나기보다는 본조사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음.
- 부당한 저자 표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저자들의 정확한 기여와 역할을 확인하는 데 연구노트의 확인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 연구진실성 검증은 대체로 예비조사 단계로 끝나기보다는 본조사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음.

###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승인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지만,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결과 ③ 본조사 실

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이외에도 조사 일시, 장소, 예비조사 위원 명단(소속 및 전공 포함)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조사 대상 논문과 예비조사 시 검토한 중요 증거자료는 별첨해야 함.
- 예비조사에서 사실 관계의 확인이 명료하고 피조사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예비조사에서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본조사 결과보고서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함.
- 예비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조사기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5) 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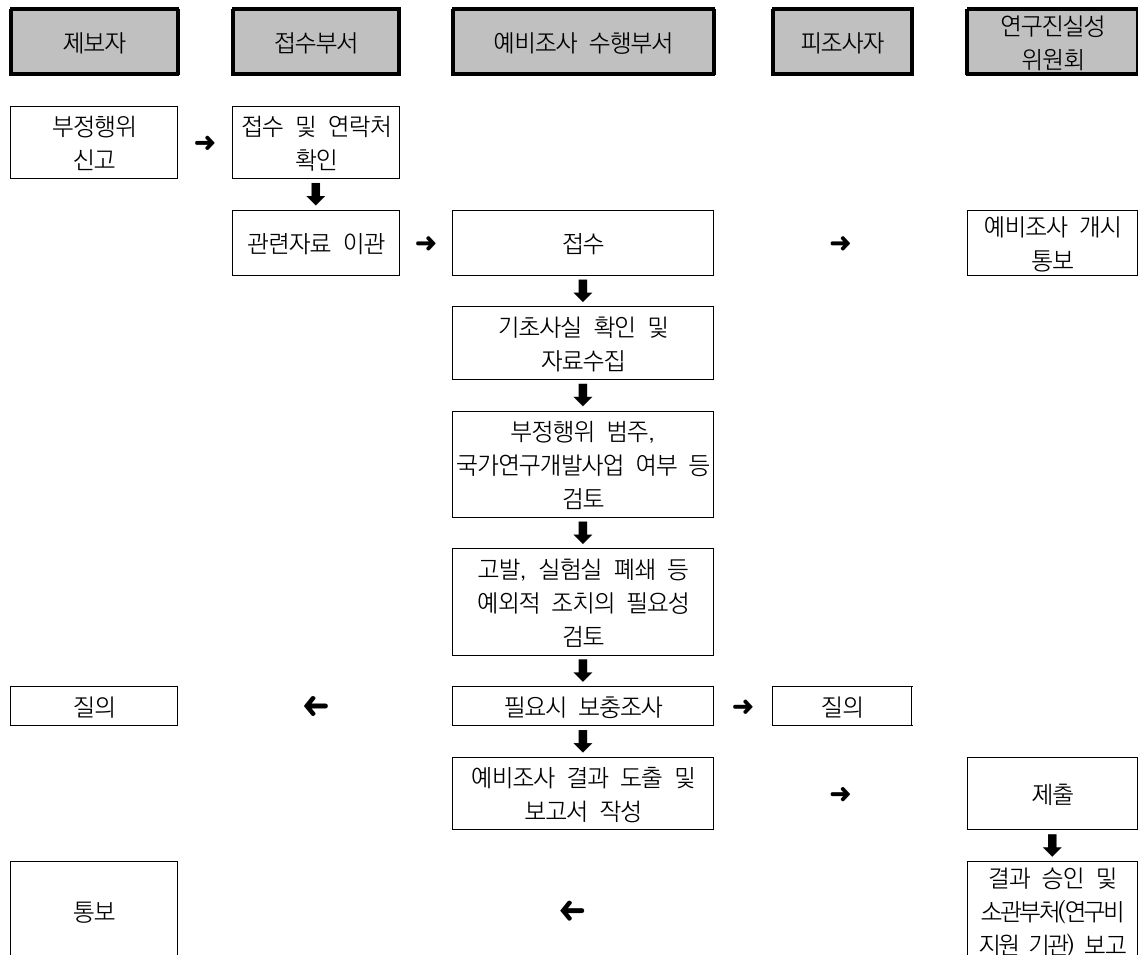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고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함.
-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를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6) 실무자 유의사항

- 제보 접수 후 예비조사 단계에서 실무자들이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제보자의 이름, 제보 일시, 제보 내용(제보자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피조사자의 이름과 소속 및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을 확인해야 함.
- ② 제보된 논문, 보고서 등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입수하여 제보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음.
- ③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연구비 지원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 ④ 제보된 사항이 고발이나 연구 중단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도 확인함. 대체로 표절 등 단순 사례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조치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예비조사 절차도<sup>50)</sup> 〉



50)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61.

- 예비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피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예비조사 단계에서 필요시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할 수도 있고, 제보자에게 추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①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연구노트, 실험 자료(컴퓨터 파일, 사진, 실험 결과물 등)를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② 표절의 경우, 제보의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표절 의심 대상 저작물의 출판 일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저 단행본이나 논문일 경우, 각각의 역할 정도 등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전자우편 혹은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음.
  - ③ 아울러 제보자에게도 제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설명을 공문을 통해(간단하다면 전화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실무자들은 질의 일시와 내용, 질의 전달 방법, 그에 대한 답변, 제보자나 피조사자로부터 받은 설명이나 관련된 자료(공문, 전자우편, 구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보관해야 함.
- 예비조사 결과를 작성하거나 본조사를 해야 할 경우, 모두 중요한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작성 및 분류한 후 서류철에 보관해야 하며, 이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기초 사실 조사 서류철,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대한 질의응답에 관한 서류철 등을 각각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편리함.

## 다. 본조사<sup>51)</sup>

### 1) 본조사의 목적

- 본조사의 목적은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의도,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여부, 경위, 공동 연구자들의 역할 등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임.
- 연구부정행위는 단순히 '있었다/없었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에 어느 정도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성격과 정도가 중요함.
- 표면적으로 동일한 분량의 동일한 정도의 표절 행위라 하더라도 그 의도와 경위, 유사 연구에서의 반복성 등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이 본조사의 1차적 목적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의성 여부, 의도, 반복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 미국 ORI(Office of Research Integrity)는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으로서 1) 알고 있었는지(knowingly), 2) 의도가 있었는지(intentionally), 그리고 3) 얼마나 무모하게(recklessly) 저질러졌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반복성에 관한 검증은 국내의 조사 과정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5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61-74.

- 선진국의 연구부정행위 사례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번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이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연구에 국한하지 말고 피조사자의 과거 연구에서의 유사한 연구부정행위 의혹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 의혹이 있을 경우 피조사자의 관련 연구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미국 NSF의 경우 표절의 의혹이 제기되면 예비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1차 서면 질의를 보내는데 표절 의혹이 제기된 연구뿐 아니라 과거 다른 연구에서의 사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있음.

## 2)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실무자 유의사항

-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관련 부서)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본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시행해야 함.
-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사위원 전체에서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조사위원은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 사제 관계, 공동연구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되므로 제외하여야 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판정을 위해 연구윤리 전문가로서 연구진실성 검증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이나 각 기관에서는 조사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지만, 동료 교수의 문제를 평가해야 하는 부담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참여를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함. 이를테면, 연구윤리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교내 외 인사를 2-3년 주기로 상설 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이에 대한 수업 감면이나 적절한 수당 지급, 혹은 교수 업적 평가 시 봉사 점수에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함.
-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확정되면, 그 명단을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만일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조사위원을 교체하고 다시 통보해야 함. 만일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최종 보고서에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함. 한편,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조사위원 명단 통보 및 기피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 제척, 회피 등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조사가 언제 시작되고,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함.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각 조사위원에게도 통보하면서 조사위원의 역할과 권한, 의무, 향후 일정 등을 같이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 통상 첫 본조사위원회 모임을 가질 때 본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조사위원들은 본조사 기간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조사 도중 또는 종료 후에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어떤 내용도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외부에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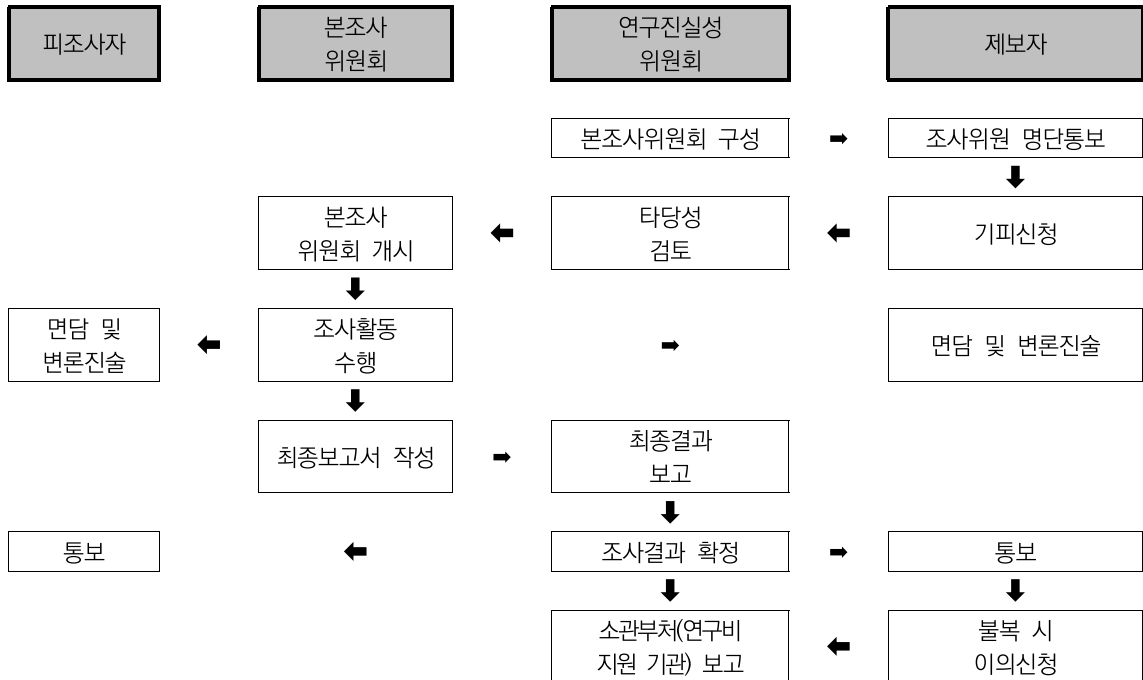
### 3) 본조사위원회의 권한

-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4) 본조사 절차 및 실무자 유의사항

-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등 본조사 준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본조사 활동에 들어가며, 본조사의 목적은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뿐 아니라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의도,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여부, 경위, 공동 연구자들의 역할까지를 모두 파악하는 것으로 단순히 위조나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의 확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의도나 경위, 엇갈리는 증언 사이에서 연구자 간의 역할 관계까지도 파악하여야 함.
- 본조사의 과정은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특히 복잡한 사안의 경우 수차례의 회의와 면담, 질의, 변론 등이 반복될 수도 있어 표준적인 절차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으나 본조사 과정을 보다 자세히 구분하자면, ①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과의 면담 및 자료검토 등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조사 단계 ② 조사내용 및 중간 조사결과에 대한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및 변론단계 ③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검토하여 판정을 위한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본조사위원회에서는 규정의 해석, 절차의 진행 등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차례 회의를 통해 각 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을 해야 함. 특히, 연구진실성 검증의 경험이 없는 경우, 유사한 연구부정행위 사례에 대해 연구진실성 검증을 한 대학이나 기관이 있는지를 찾아 처리 절차나 쟁점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을 위해 유익함.
- 본조사 활동은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주재 하에 본조사 기간 중에 무리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무자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사 기간 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어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본조사위원회의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대비하여 의결 기준으로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 등을 미리 정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본격적인 본조사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주요 활동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본조사 표준 절차도<sup>52)</sup> 〉



〈 본조사 주요 활동 및 실무자 유의 사항<sup>53)</sup> 〉

조사 활동의 순서(절차)	주요 조사 및 검토 활동	실무자 유의 사항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제보 내용의 검토 (제보자, 제보 내용,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요구 사항)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 조사위원에게 제시 -예비조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본조사에 서의 요구 사항 등
관련된 자료의 검토	-제보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내 용을 토대로 집중 검토(총 00개의 조사 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 간 역할을 분담하여 자료 검토) -조사위원별로 각 사안에 대한 의견 및 근거 제시 -각 사안에 대하여 위원 간 이견이나 쟁점의 파악 및 조율 -제보자나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확인 해야 할 내용 정리	-각 조사위원들이 조사 활동 중 요구하는 제반 내용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정보 제공 -각 위원들 간 검토 의견서 수합 및 정리(회의 가 불가능할 경우,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수 렴한 후 종합하여 위원 전원에게 피드백 받음) -주요 쟁점에 대하여 위원들 간 논의되었던 내 용을 회의록에 기록함 -피조사자가 소명해야 할 내용 정리 및 공문 으로 서면 소명서 제출 의뢰

5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 164.

53)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 71.



조사 활동의 순서(절차)	주요 조사 및 검토 활동	실무자 유의 사항
피조사자 면담 및 변론 진술(필요시 서면 소명서로 대체)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위원별 검토 의견을 조사위원장에게 제출 -조사위원장의 주재 하에 각 위원별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채택	-조사위원에게 서면 소명 자료 조사를 위한 일 시, 장소 공지 및 회의록 작성 -피조사자와의 면담이 요청될 경우, 질문 내용 을 확정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이를 녹 음함. 면담 시,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서로 만 나지 않도록 면담 시간과 동선을 계획하고, 동등하게 발언의 기회를 줌
본조사 결론(안) 도출	-피조사자 서면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 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나 온 쟁점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본조사 결과 종합 판정(안)과 그 근거 작성	-회의록 작성 * 조사위원 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미리 규 정된 의결 원칙에 따라 결론을 도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결론(안) 송부 및 이의 신청 받음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이를 송부하 고, 이의 신청과 변론 내용을 받음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결론(안)을 공 문으로 송부하고, 이의 신청을 받음(이의 신청 기간, 방법 등을 명시하여 함)
본조사 결과 보고서 최종안 확정	예시) 교재 <0000과 xxxxx>은 타인 저서들을 활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인용 표시나 참고 문헌을 밝히지 않고 있고, 아무리 수험서의 성격을 띠다고 해도 특정인의 책을 너무 많이 인용하면서도 참고 문헌에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에 해당됨. 재적 위원 7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출석 위원 중 5명이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정함.	

### 5) 최종보고서 작성

- 본조사 활동이 끝나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은 ㉠ 제보 내용 ㉡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목록 ㉢ 조사 진행 경과 ㉣ 예비조사의 결과 ㉤ 관련 증거나 증인 진술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변론 또는 의견 진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과 각 당사자의 해당 행위에서의 역할 ㉧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이나 반복성, 의도성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 ㉨ 후속조치의 적절한 수위에 대한 건의 ㉩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한계, 또는 건의 사항 ㉪ 조사위원의 명단 등임.
-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는 학교의 관련 규정 및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 따라 검증이 진행된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특히 조사위원회 구성(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 참여 필수)과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피조사자의 소명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내용(조사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증빙자료 첨부)을 반드시 기술하여야 함.
-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이 타당함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피조사자의 소명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한 노력과 조사위원회 판단(판단 근거 포함)을 기술하여 함.
- 최종 판단은 조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한 내용과 확인하지 못한 내용(추정은 인정하지 못함)을 검토하여 보다 타당한 증거 우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기술함.

## 라. 판정<sup>54)</sup>

- 판정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 과정을 거쳐 연구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 등 조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함.
- 조사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림으로써 검증 절차가 완료됨.
-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연구진실성위원회, 기관장 등 다른 주체가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바뀌어서는 안 됨.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 제24조(판정)

-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마. 이의신청<sup>55)</sup>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이후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조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 관한 규정은 기관마다 조금씩 달리하고 있음.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54)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 75.

55)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 76.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교육부 또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학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 제25조(이의신청)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 제28조(재조사)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 바. 연구부정행위 검증 후속조치

### 1) 조사결과의 보고<sup>56)</sup>

-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보의 내용 ㉡ 조사결과 ㉢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 검증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56)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84-85.

- 연구기관 등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으로 ㉞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㉟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㊱ 기타 전문 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 장관 및 전문 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최종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사기록의 보관 및 정보의 공개<sup>57)</sup>

-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예비조사·본조사·판정에서의 각종 회의 내용 ㉡ 피조사자·참고인·증인의 서면 혹은 출석 진술 내용 ㉢ 제보자·피조사자·참고인·증인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증거물 ㉣ 제보자·피조사자의 변론 및 이의신청 내용 ㉤ 전문가 검토·자문의견 ㉥ 예비조사·본조사 결과보고서 등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1조 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고서는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 시에는 신원정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등)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등의 신원 정보는 조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와 피해를 입은 측이 보복 등을 목적으로 알고자 할 경우가 높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그러나 타 연구기관에서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해당 사안의 전문가 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수 있음.
-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반드시 비공개 사항임.

57)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86-89.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징계 등의 후속 조치<sup>58)</sup>

- 판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절차는 마무리되며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기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같이 연구비 지원기관이 명확할 경우 조사 결과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보고하는 절차까지가 연구부정행위 처리의 과정에 포함됨.
-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목적은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에 있으므로 조사위원회가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해당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 결론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징계의 수위를 건의하는 것은 무방함.
-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피조사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정직, 해임, 파면 등 인사상의 조치 뿐 아니라, 해당 논문의 수정이나 철회, 향후 연구에서의 진실성 서약, 추가 연구의 제약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8)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90-91.

## 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2007년 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된 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 6가지로 정하였음.
- 이후 2015년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부당한 중복게재”가 새롭게 연구부정행위로 추가되어 현재의 연구부정행위는 모두 7가지 종류임.
- 2020년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는 연구부정행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일부로서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변조, 표절,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령 제51조 2항에는 표절을 “일반적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령 제51조 1항에는 또한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상의 불이익 조치, 위협·협박 등 검증 및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어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

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2021.01.01.시행)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01.시행) 〉

제51조(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상의 불이익 조치, 위협·협박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및 법 제31



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3.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 자료 및 연구개발성적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적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적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아.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1)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원칙

-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때는 연구자의 행위가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행위자의 고의 여부,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2007년의 연구논문에 대해 검증을 하는 경우는 2007년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2) 위조 및 변조에 대한 판단

### ① 위조 및 변조의 정의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이며,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음.
- 위조와 변조는 주로 이공계 및 생명과학, 의학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 규정<sup>59)</sup>에는 위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㉞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㉟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㊱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㊲ 연구 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변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㊳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㊴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㊵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㊶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② 검증 시 유의사항

- 위조 및 변조 사건의 경우 검증의 핵심은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발표된 연구 데이터가 연구자들이 작성한 연구노트, 데이터 파일, 사진, 설문지 등의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 데이터의 확인 과정은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이 수행하여야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노트의 보존 기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시행 202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4호, 2021. 1. 1., 일부개정)에 의하면 30년으로 정해져 있음.
- 피조사자가 연구노트 및 연구 자료를 분실 혹은 미보관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연구에 참여한 논문의 저자인 피조사자들의 서면 소명 및 출석 소명, 그리고 참고인 혹은 증인 등의 진술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검증 과정에서 특정 연구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조사에 참고할 수 있음. 이때 해당 전문가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5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2016년),

## 3) 표절에 대한 판단

## ① 표절의 정의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는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로 ㉠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사용한 경우 ㉡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 연구 계획서, 제안서, 강연 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사용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표기를 한 편집저작물의 경우 ㉢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평가 규정에는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로 ㉠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은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 규정에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

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㉞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② 검증 시 유의사항

- 표절을 검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보의 내용에 기술된 피조사자의 조사 대상 논문 어느 부분이 비교 대상 논문의 어느 부분을 표절하였는지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및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임.
-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더불어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 대상 논문에 대해 국문의 경우 Copy Killer®, 영문의 경우 Turnitin® 혹은 Ithenticate®를 활용하여 문장의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여 제보 내용 이외의 표절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문장의 유사도는 표절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유사도율의 높고 낮음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함.

## 4)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한 판단

### ① 부당한 중복게재의 정의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하는 개념임.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는 중복게재를 한 후 부당한 이익(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을 얻은 경우에만 해당함.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경우로 ㉠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 이미 게재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 논문은 제외로 제시하고 있음.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연구 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 표기를 한 후속 저작물 ㉔ 이미 발표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 규정에는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로서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 규정에는 중복게재에 해당 하는 경우로 ㉕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활용한 경우 ㉔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㉔ 출처 표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즉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혹은 거의 유사하게 활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했지만, 이후의 저작물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 등에 맞게 이전 저작물을 분석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맥락에 맞게 재해석, 재구성, 비판적 해석 등)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아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 규정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㉕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㉔ 용역 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㉔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㉔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 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㉔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뀌쓰기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 ㉔ 협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 보고서-세부 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 ㉔ 연차 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 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② 검증 시 유의사항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는 중복게재를 한 후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조사위원회에서는 피조사자가 중복게재를 한 후 그 성과물을 연구업적 혹은 연구과제 신청 시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만약 중복게재는 있었으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인 “부당한 중복게재”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 소속 기관에 중복게재 혹은 자료의 중복 사용을 연구부정행위로 정해 놓고 있지 않다면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출판된 학술지의 출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5)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판단

### ① 정의 및 저자 자격 기준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논문의 조사 대상 저자(들)가 저자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학술적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저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학문 분야, 학술지, 혹은 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 과학편집자협회(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에서는 저자란 “저작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자신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다른 공동 저자가 각각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여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하며,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검토하고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의학계에서는 많은 학술지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권고 기준을 따르고 있음.
- 2008년 개정된 ICMJE의 기존 저자 자격 기준에서는 연구에 참여하거나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경우, 그리고 논문 최종본에 승인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저자 자격으로 인정해 왔지만, 논문 부정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자가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사례가 많아 ICMJE에서는 2013년 개정판을 발행하여, 이전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논문의 진실성을 책임지는 데까지 저자의 자격 기준을 확장하였음.
- ICMJE에서는 저자의 자격 요건을 아래 열거하는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초고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㉔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보증하며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

- 이·공학 분야 대표적인 학술지인 Nature지의 경우는 ICMJE의 기준 항목 중 ㉗와 ㉘를 통합하여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저자의 자격이 있다고 권고하고 있음. ㉗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데이터의 해석, 또는 연구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제작,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초고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㉘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㉔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보증하며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
- 인문·사회·경제 분야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 비해 부당한 저자 표시 사건이 현저히 적지만 이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 규정에는 부당한 저자 표시를 예방하기 위해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히도록 권장하고 있음.
- 동 규정에는 특정 연구보고서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재위탁)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보고서에 포함할 때, 즉 연구보고서의 일부 장, 절에서 타인이 쓴 내용을 거의 그대로 포함시킬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㉙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용역 받은 내용에 대한 글을 쓸 때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 계약서 명기, 교육 및 감독을 해야 함 ㉚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킬 때, 공동 연구자로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해당 부분은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름 명기)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함. 만약 이와 같은 표기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보고서가 최종 발표되기 전에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먼저 관련 내용을 전문 학술지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할 경우,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먼저 출판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

## ② 검증 시 유의사항

- 조사 대상 저자의 학술적 기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는 피조사자의 소명과 함께 조사 대상 저자의 학술적 기여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연구노트, 연구진들 간에 주고받은 전자우편, 연구자료, 사진 등)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함.
- 조사 대상 저자가 데이터의 획득 및 해석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원자료(raw data)가 연구노트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노트에 기록되지 못한 원자료라면, 이것이 피조사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되었던 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연구노트가 있으니 조사 대상 저자가 학술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안 되며, 연구노트는 누가 작성한 것이고, 연구노트에 기술된 표나 그림 및 내용 중 논문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파일 등의 증빙은 작성자, 수정자, 작성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제출 받아야 함.
- 피조사자가 조사 대상 저자의 학술적 기여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공저자 등 참고인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흔히 연구자들 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모든 연구 과정에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 저자가 여럿인 경우 각 공저자들 간의 기여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함.
- 조사 대상 저자가 투고 논문 초안에 대하여 중요한 지적인 기여(코멘트, 수정 및 보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공동 저자로서 연구 전체는 아니어도 본인이 관여한 부분의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등은 직접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과 증거(컴퓨터 파일, 날짜 확인)들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함.
- 조사 대상 저자가 직접 초안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에 관여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공저자 혹은 같은 연구실 연구원 등의 진술을 받아 확인하여야 함.

## 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각 연구기관의 책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각 연구개발기관은 ① 연구진실성 보호를 위한 노력 및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에 대한 정확한 출처 표기 기준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 교류에 대한 윤리 ③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 ④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⑤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는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이미 각 연구기관은 자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 규정, 그리고 연구노트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구윤리 규정 외에 하위의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① 연구진실성 보호를 위한 노력 및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에 대한 정확한 출처 표기 기준 ②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 교류에 대한 윤리 ③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④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01.시행) 〉

#### 제3조(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운영할 때에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진실성 보호를 위한 노력 및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에 대한 정확한 출처표기 기준
2. 학술지 투고, 학회참석 등 학문교류에 대한 윤리



3.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
4.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5.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제60조(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활용촉진)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차.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실무자의 역할<sup>60)</sup>

-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대학의 교수나 일반 연구자들처럼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어 연구윤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음.
- 책임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자신의 높은 연구윤리 의식과 탁월한 연구 수행 능력 이외에도 그 연구와 관련된 제반 규정(지침)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자들은 연구의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 주제를 정해 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의 결과를 학회에서 또는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각종 연구 모임에 참여하여 토론하는 등 매우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와 관련되어 어떤 지침의 어느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인지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바로 연구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을 하지 못할 때 관련 규정 혹은 타당한 관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 결과 보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비 정산은 맞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
-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 지침과 그것의 상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침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각 지침의 내용은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 처리 절차,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의 실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이 규정의 근본정신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맥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의 선행 사례에 대한 치밀한 탐구 및 고도의 통찰력이 요구됨.
- 따라서 자신이 속한 기관 이외의 연구윤리 지침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의 신설 및 보완, 연구윤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연구윤리 담당 실무자로서 적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 함.

60)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94-104.

- 이를 위해 국내외 타 기관의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책과 관련 규정을 탐구하고 연구윤리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여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손쉽게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윤리정보포털([www.cre.or.kr](http://www.cre.or.kr))을 활용하는 것임.
- 각 기관의 연구자들은 보통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연구윤리 실무자가 ‘연구에 방해가 된다.’는 의미는 관련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알았어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규정을 이용하여 간섭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괴롭히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옴.
- 따라서 연구윤리 실무자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타당한 적용, 적절한 사전 및 사후 관리 등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PART

# 부록

## 판례에 나타난 연구윤리의 이슈



## [부록] 판례에 나타난 연구윤리의 이슈

### 〈주의사항〉

- 부록에 소개된 사항들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판례를 질문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참고로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판단기준과 학계의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는 연구윤리 이슈의 진위를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닌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각종 처분(소속기관의 인적 징계, 소관 부처의 행정상 제재 등)의 적절성이나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 경우가 대부분임



###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해고 사건 (1): 논문교체 행위

**질문 1** 2009년 6월 A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B는 박사 자격으로 2010년 3월 C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B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B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기를 추가한 후, A대학교 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박사학위 논문을 교체하였고, 이때 박사학위 논문의 인준지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B의 박사학위 논문은 2009년에 제출된 논문으로 보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2012년에 교체된 논문으로 보아야 하는가요?

### 답변 1

B의 박사학위 논문은 2009년에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인용출처만 추가한 수정 논문이라도 그것으로 기존 박사학위 논문을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B의 논문 교체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B의 박사학위 논문은 여전히 2009년에 제출된 논문일 뿐이고, 2012년에 교체된 논문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일단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면 즉시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기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 “논문 교체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수정 전의 원 논문이고 수정 논문은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산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61)</sup>

#### 〈사안의 판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3. 28. 선고 2013가합3915 판결; 서울고법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파기환송 전 항소심);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2016나209872 판결(파기환송 후 항소심).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해고 사건 (2): 표절 여부의 판단 기준**

**질문 2** 앞의 사례에서 2012년 B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박사학위 수여기관인 A대학이 B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A대학은 조사결과 B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자신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와 일본 저자의 저서를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한 것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가 위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당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연구윤리 기준에 의할 경우 B의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있지만, A대학이 2006년에 제정하여 시행 중인 연구윤리 규정은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라고만 정의하고 있습니다.<sup>62)</sup> A대학은 B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당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B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 논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대학 연구윤리 규정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한 것을 표절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B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논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야 할까요? 즉,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쪽인가요?

**답변 2**

A대학은 B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 당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B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 논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의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그 연구윤리는 “사회 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글로 만들어진 연구윤리 규정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63)</sup> 따라서 A대학은 B의 박사학위 논문을 A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에만 비추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B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당시의 사회 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한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 A대학은 A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에만 근거하여 B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문의 연구윤리 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A대학의 판단과 달리 B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 논문이라고 판단하였다.<sup>64)</sup>

6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62) 참고로 A대학은 2013년 연구윤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표절”의 정의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6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6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해고 사건 (3): 표절 여부의 판정 권한

**질문 3** 앞의 사례에서 B의 박사학위 수여 기관인 A대학 외에도 학술단체협의회와 C연구기관의 특별조사위원회도 B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학술단체협의회와 C연구기관의 특별조사위원회는 A대학과 달리 표절 판정을 내렸습니다. C연구기관은 위 세 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B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B는 C연구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B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 책임은 학위수여기관인 A대학에 있고 학술단체협의회와 C연구기관의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증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B의 주장대로 B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할 권한은 학위를 수여한 A대학에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법원은 A대학의 판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은 A대학의 판정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나요?

#### 답변 3

B의 주장은 옳지 않다. B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가 원인이 되어 C연구기관이 B를 해고하고, B와 C연구기관 사이에 그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으므로 법원은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B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B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게 있다. 즉, 법원은 A대학의 판정뿐 아니라 학술단체협의회, C연구기관의 특별조사위원회의 판정에도 구속되지 않고 (앞서 언급한) 표절 판단 기준에 따라 표절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그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65)</sup>

6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해고 사건 (4): 타인 저작물의 출처표기 방법

**질문 4** 앞의 사례에서 B의 박사학위 논문은 B의 지도교수의 저서와 일본 저자들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앞부분의 ‘연구의 방법’ 부분과 뒷부분의 ‘참고문헌’ 부분에서 인용한 저서들을 기재하였으나, 본문에서는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의 박사학위 논문은 지도교수의 저서와 일본 저자들의 저서를 표절한 것인가요? 즉, 서론과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서 인용문헌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것만으로는 표절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에 불충분한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표절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출처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4

B의 박사학위 논문은 지도교수의 저서와 일본 저자들의 저서를 표절한 것이다. B와 같이 본문이 아닌 서론과 참고문헌에서 인용문헌을 포괄적·개괄적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표절로부터 벗어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다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sup>66)</sup>

자신의 저서에서 인용하는 타인 저서에 대한 출처표기 의무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기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예시한 바 있다. <sup>67)</sup>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그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기 의무를 부담하고, 그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기 의무를 부담한다.

6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6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해고 사건 (5): 피표절자의 동의**

**질문 5** 앞의 사례에서 B가 지도교수의 저서를 출처표기 없이 인용하는 것에 지도교수가 동의했다면 B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지도교수 논문 표절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을까요? 즉, 피표절자의 동의가 표절 판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5**

피표절자의 동의는 표절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B의 지도교수의 동의가 있었다라도 B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지도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표절의 피해자는 피표절자 외에도 독자, 논문 심사기관, 저자의 소속기관, 학계 전체가 포함되고, 따라서 피표절자가 동의하거나 용서하더라도 표절로 인한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sup>68)</sup> 법원은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그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sup>69)</sup>

68) 남형두, 『표절론』, 서울: 현암사, 2015, p. 176.

6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학위논문 표절로 인한 해고 사건 (6): 자기 표절

**질문 6** 앞의 사례에서 B는 박사학위 논문에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어디에도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B의 박사학위 논문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인가요? 즉 자신의 선행 논문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않고 후행 논문에 인용하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6

B의 박사학위 논문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이다. 법원은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 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서, B의 박사학위 논문에는 B의 석사학위 논문의 존재가 아예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sup>70)</sup>

또한 법원은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기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라면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되어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sup>71)</sup> 즉 후행 저술에서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는 경우, 자기표절로부터 벗어나려면 후행 저술에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밝혀야 하고, 또한 후행 저술은 새롭게 가미된 부분에 독창성이 있어서 해당 학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7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표절 논문을 연구 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형사 책임

**질문 7** A교수는 여러 개의 표절 논문을 이용하여 소속 대학으로부터 논문 게재비와 성과급 연구 보조비를 지급받고, 교원 재임용 신청을 하면서 표절 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속 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 내지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 이외에 A교수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 답변 7

A교수는 부당하게 소속 대학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받은 금원을 모두 소속 대학에 반환하여야 할뿐 아니라, 사기죄<sup>72)</sup>와 업무방해죄(소속 대학이 사립대학인 경우)<sup>73)</sup>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소속 대학이 국립대학인 경우)<sup>74)</sup>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 학회에 발표된 타인의 논문을 번역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대학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검찰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교수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논문 게재비와 성과급 연구 보조비를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인정하고, 또한 위계(타인이 모르거나 착오한 것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소속 대학의 연구비 심사 및 교원 업적평가 업무와 교원 재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 방해죄를 인정하였다.<sup>75)</sup>

〈사안의 판례〉

- 광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1104 판결.

72)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3)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4)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5) 광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1104 판결.

**석사학위 논문 대작 사건: 대작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

**질문 8** A는 석사과정 학생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의 작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A는 석사학위 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번역 및 통계처리 등 일부는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그럴 경우 본인이 작성한 논문으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제출한 자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또는 타인이 대작한 것인지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즉, A는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9**

석사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타인의 조력을 받고도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정받으려면 타인의 조력은 외국 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에 그쳐야 한다. 타인이 대작한 석사학위 논문을 자신의 것처럼 논문 심사 교수에게 제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위계로서 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단순히 통계처리와 분석, 또는 외국자료의 번역과 타자 입력과 같은 작업만을 타인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논문의 초안 작성을 타인에게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을 약간만 수정하여 지도교수에게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 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 방법 등 논문 작성 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논문 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논문 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당 논문을 타인이 대작한 논문이라고 판단하였다.<sup>76)</sup>

**〈사안의 판례〉**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9. 7. 선고 93노7841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7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 공동저자 등재 요구 사건

**질문 9** B연구원(이공계 대학의 석·박사 통합 과정생)은 A교수의 지도하에 〇〇 〇〇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A교수는 미세 〇〇이 성장하는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을 발견하고 〇〇 성장에 필요한 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을 마친 후 기존 연구 결과를 기초로 〇〇 〇〇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의 전 과정을 총괄하였습니다. 이때 B연구원은 A교수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와 실험 조건을 전달받은 후 관련 장비를 이용한 실험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A교수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A교수는 위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을 과학 분야의 국제 저명 저널에 게재하였는데, B연구원을 공동저자로 등재하지 않고 '사사(acknowledgement)' 대상으로만 지정하였습니다. B연구원은 자신도 위 논문의 공동저자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수와 함께 논문의 기초가 된 실험에 참여한 학생도 항상 저자로 등재하여야 할까요?



### 답변 10

위 사례에서 B연구원은 공동저자가 아니며, 교수와 함께 논문의 기초가 된 실험에 참여한 학생이 항상 저자로 등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공계 대학에서 지도교수와 함께 실험에 참여한 학생이 저자로 등재되려면 단순히 논문의 기초가 된 실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학생의 지적인 기여가 있어야만 한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B연구원은 논문에 대해 지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A교수가 B연구원을 공동저자로 등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B연구원이 A교수가 자신을 공동저자로 등재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창의적인 실험을 통해 중요 결과를 발견·발명하고 A교수가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올린 것에 있었다. B연구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sup>77)</sup>로 2백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sup>78)</sup> 민사적으로는 A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A교수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손해배상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sup>79)</sup> 형사 1심법원은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실험만을 수행한 학생을 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반하고, 실험논문이든, 연구논문이든 과학논문에 저자로 등재될 자격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 참여자 고유의 ‘전문성’ 내지 ‘창의성’을 가미한 ‘지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sup>80)</sup>

#### 〈사안의 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고정48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노1487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1249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4가단53315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나90386 판결.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동연구자의 표절 사건 (1): 연구책임자의 감독 의무

**질문 10** A교수와 B교수는 A교수가 연구책임자, B교수가 공동연구자로서 함께 연구 논문을 작성하기로 하고, 협의로 나누어 맡은 부분을 각자 집필하여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논문 집필 과정에서 B교수는 A교수에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논문완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A교수가 건네준 C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 써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A교수는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논문에서 B교수가 집필한 부분은 C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이었습니다. A교수는 C의 논문을 표절한 바가 없고 A교수가 집필한 부분은 완성된 전체 논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교수도 B의 표절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가요?

### 답변 10

A교수는 B교수의 표절 행위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표절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A교수가 C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기로 공모하였거나 B교수의 표절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논문 공동 작성에 있어 공동 집필자는 각각 맡은 부분만을 따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집필 부분을 검토하여 논문 전체가 모순이 없고 일관되도록 할 의무가 있고, A교수가 B교수의 집필 부분에 대하여 공동 집필자이자 연구책임자로서 하여야 할 검토 및 의견 교환 등을 일체 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교수는 위 논문 작성의 책임자로서 공동연구자인 B교수의 표절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sup>81)</sup>

〈사안의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1. 2. 9 선고 2000구247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9. 20. 선고 2001누3800 판결.

7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고정487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노1487 판결(항소심);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12494 판결(상고심).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4가단533155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나90386 판결(항소심, 확정).

8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고정487 판결.

81) 서울고등법원 2001. 9. 20. 선고 2001누3800 판결.

**공동 연구자의 표절 사건 (2): 요약 논문과 표절**

**질문 11** 앞의 사례에서 위 논문을 학술발표대회 발표용 논문으로 요약하면서 A교수의 집필 부분은 빠지고 B교수의 집필 부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A교수는 C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요약 논문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C측의 항의를 통해 A교수가 학술발표대회에서 C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요약 논문을 발표한 사실을 알게 된 A교수의 소속 대학은 A교수를 해임하였습니다. A교수는 요약 논문은 임시논문으로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식 논문과는 다른 차원에서 표절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교수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답변 11**

표절 여부 판단에 있어 요약 논문과 정식 논문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A교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례에서 법원은 요약 논문이라 하여 표절 여부를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며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로 법원은 해당 요약 논문이 학회발표 논문집에 수록되어 500부 정도가 배포되고 정식으로 발표된 사정을 들었다. 다만 법원은 A교수가 B교수와 공모하여 표절 행위를 하였다거나 B교수의 표절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속 대학이 A교수를 해임한 것은 A교수의 비행의 정도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다.<sup>82)</sup>

82) 서울고등법원 2001. 9. 20. 선고 2001누3800 판결.



## 제자에게 자신의 논문 초고를 준 교수 사건 (1): 표절 여부 판단

**질문 12** A교수는 자신이 곧 게재할 논문의 초고를 제자 B에게 주었고, B는 초고에 각주 3개만 추가하는 정도로 수정하여 A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C학회의 학술대회보에 B를 저자로 제출하여 게재하였습니다. C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제자 B는 이 논문을 발표하고 교수는 이 논문에 대해 논평하였습니다. 이후 A교수는 제자 B에게 주었던 논문의 초고를 일부 수정하여 D학회지에 게재하였습니다. A교수의 소속 대학은 제자 B의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과 사실상 동일한 논문을 교수가 D학회지에 게재한 행위는 '표절'에 해당하고, 학회지에 교수 단독저자로 표시한 것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속 대학의 주장대로 A교수 단독 이름으로 D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표절 논문인가요? 그리고 부당하게 저자를 표시한 경우에도 해당되는가요?



### 답변 12

A교수 단독 이름으로 D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표절 논문이 아니고, A 단독저자로 표시한 것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A교수는 제자 B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A교수를 단독저자로 기재하여 D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B를 표절한 논문이 될 수 없고, 또한 제자 B는 이 논문의 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논문은 A와 B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므로 A교수가 B를 공동저자 등으로 기재하지 않고 자신을 단독저자로 기재한 것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sup>83)</sup>

〈사안의 판례〉

- 청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10290 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8. 26 선고 2014누5522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45 판결.

83)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8. 26 선고 2014누5522 판결.



**제자에게 자신의 논문 초고를 준 교수 사건 (2): 제자의 표절 조작**

**질문 13** "앞의 사례에서 소속 대학의 판단과 달리 A교수는 B를 표절한 적도 없고, 논문 게재 시 부당하게 저자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속 대학이 A교수를 징계 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A교수에 대한 소속 대학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연구부정행위가 있는가요?"

**답변 13**

A교수의 논문 게재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표절 또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A교수가 아무런 연구부정행위도 범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 사안에서 제자 B의 연구부정행위(A교수의 저작물을 제자 B의 이름으로 학술대회보에 게재하고 발표하여 표절한 행위)와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저자 식별에 혼란을 주게 된 원인은 A교수의 행위에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A교수의 일련의 행위, 즉 A교수가 제자에게 자신이 곧 게재할 논문의 초고를 넘겨주었고, 이후 제자가 자신이 저자인 것처럼 그 논문을 학술대회보에 게재하였는데도 제자의 발표 및 학술대회보 배포를 그대로 진행시킨 것과 동시에 마치 제자의 논문인 것처럼 논평함으로써 제자의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및 그로 인한 저자 식별에 대한 혼동을 조장하였고, 이후 제자가 이미 학술대회보에 게재한 적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채 별도로 교수 자신의 논문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A교수의 행위는, 제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조장함과 동시에 교수의 논문과 제자 논문의 저자 식별에 중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법원은 소속 대학의 A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sup>84)</sup>

84)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8. 26 선고 2014누5522 판결.



## 의학 박사학위 논문 사건 (1): 교신저자 바꾸기와 성명표시권

**질문 14** A는 자신의 의학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신기로 하고 A를 제1저자와 주관 책임저자(교신저자)로, B 등을 공동저자로 기재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B가 마음대로 논문의 주관 책임저자를 A에서 B로 바꾸었고 이와 같이 수정된 논문이 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B가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B는 A의 저작인격권 중 어떤 권리를 침해하였을까요?



### 답변 14

위의 사례에서 법원은 A가 국내 학술지에 게재를 의뢰한 논문의 주관 책임저자를 B가 A에서 B로 변경한 것은 A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다.<sup>85)</sup> 저작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을 인정하고 있다. 공표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일성유지권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sup>86)</sup>

〈사안의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6고단73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344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합114203 판결.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34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합114203 판결.

86)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이란,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what-the-copyright/definition/index03.do>.



## 의학 박사학위 논문 사건 (2): 타인 논문의 번역 논문 게재

**질문 15** 앞의 사례에서 B가 A에게 A의 박사학위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 학술지에 게재하자고 하였는데 A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의 동의 없이 A의 박사학위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A를 논문 저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외국 학술지에 기고하였고, 이로 인해 A의 박사학위 논문이 위 외국 학술지에 타인(B)의 저작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B는 A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가요?

### 답변 15

위 사례에서도 법원은 B에 의한 A의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B가 작성한 번역 논문은 A가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의 2차적 저작물이고,<sup>87)</sup> “성명표시권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12조는 제2항 본문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므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은 2차적 저작물에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sup>88)</sup>

특히 의학 박사학위 논문 사건(사례 17, 18번)은, 사실 B가 A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B의 표절 논문이 더 영향력이 있는 외국 학술지에 등재되는 바람에 오히려 국내외 의학계 관계자들로부터 A의 박사학위 논문이 B의 논문을 표절한 논문이라고 오해를 받게 되는, 이른바 역혼동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sup>89)</sup> 법원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A의 논문에서 교신저자를 A에서 B로 교체하고 A의 논문을 번역하여 B의 이름으로 외국 학술지에 게재한 B의 행위에 대하여 A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형벌의 정도와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다. B는 형사법원으로부터 저작인격권침해의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고,<sup>90)</sup> 민사법원으로부터는 저작인격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A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sup>91)</sup>

87)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의 하나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인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2조).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B는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A의 박사학위 논문의 번역논문(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으므로 A의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침해한 것이 된다.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3445 판결.

89) 남형두,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II), 저작권위원회 용역보고서 (2008), p. 131.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6고단7358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3445 판결(항소심, 확정).

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합114203 판결(1심, 확정).



## 논문게재 철회 사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

**질문 16** A는 B학회가 발간하는 미생물 및 생명과학 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이후 A의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B학회의 연구윤리 심의 시행세칙 제10조 제2항은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인 ‘본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과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학회 윤리위원회는 A에 대한 제보를 검토한 결과 A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고, 논문에서 발표한 모든 실험들의 방법과 데이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노트 혹은 전자 자료를 제출할 것을 A에게 요청하였습니다. A는 일부 소명자료만 제출하면서 연구노트는 분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A와 B학회 중 누구에게 있는가요? 즉 A가 자신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B학회가 A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16

연구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기관에게 있지만, 위 사례와 같이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인 연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학술단체인 B학회가 스스로 발행하는 학술지를 통해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한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학문 자유의 보호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B학회가 이 사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을 두고 있다면, 그 기준이 강행 법규를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함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나아가, A가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학회에게 이 사건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A의 의사에는 B학회의 위와 같은 기준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한 후,<sup>92)</sup> B학회의 연구윤리 심의 시행세칙의 근거가 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시행) 등에 비추어 볼 때<sup>93)</sup> “연구부정행위의 증명 책임에 대한 B학회의 기준은 ‘피조사자가 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연구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가 없다는 증명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은 연구라는 행위의 특성상 연구자 측의 협조 없이 윤리위원회가 해당 연구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합리성이 있으며, 강행 법규를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sup>94)</sup>

〈사안의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합5718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7나2065914 판결; 대법원 2019다207493 판결.

92)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7나2065914 판결.

93) 구체적으로 법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시행) 제17조 제1항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발간한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연구라는 행위의 특성상 피조사자의 협조가 없으면 조사위원회가 해당 연구의 상세한 정황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료의 위조 의혹이 있는 경우에 피조사자가 원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사위원회는 사실상 원자료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들었습니다.

94)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7나2065914 판결.



##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

집필진

-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엄창섭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윤철희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 이원용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
- 이주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획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발행/인쇄일자 : 2021년 5월 17일

발행처 : 한국연구재단

편집/제작 : 에코디자인(044-868-0054)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042-869-6641

ISBN : 979-11-86956-18-2

---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대전청사]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042-869-6114 / Fax. 042-869-6777  
[서울청사]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Tel. 042-869-6114 / Fax. 02-3460-5519